

제438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8월24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38)
4.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32)
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49)
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38)
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51)
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56)
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11)
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40)
11.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65)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4)
1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00)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8)
1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47)
16.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40)
17.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8)
18.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13)
19.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0)
2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74)
2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1)
2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32)

2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2)
2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83)
2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1)
2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4)
2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60)
28.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6)
29.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69)
30.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94)
3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8)
3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52)
3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04)
3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30)
3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5)
3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39)
37.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5)
3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3)
3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5)
4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8)
4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42)
4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22)
4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8)
4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73)
4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8)
4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08)
4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16)
4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78)
4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8)
5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59)

5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0)
5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4)
5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32)
5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3)
55.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0)
56.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59)
57.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7)
58.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74)
59.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12)
6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2)
6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7)
6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00)
6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32)
6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49)
6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05)
6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1)
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8)
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7)
6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08)
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0)
7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6)
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29)
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30)
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91)
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05)
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56)
7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1)
7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05)
7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87)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28)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9)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78)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80)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7)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4)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9)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02)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9)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99)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00)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76)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5)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84)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86)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92)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93)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03)
98.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63)
9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5)
10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37)
10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9)
10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72)
10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6)
10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31)
10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94)
10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1)
10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5)
10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4)
10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2)
1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5)
1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2)

1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0)
1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90)
1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3)
1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54)
11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8)
11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6)
118.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01)
119.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6)
12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0)
121.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7)
122.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4)
123.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23)
124.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15)
125.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39)
126.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6)
127.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6)
12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2)
12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9)
13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85)
1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3)
1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3)
1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4)
1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98)
1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12)
136.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7)
13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70)
1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8)
1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6)
1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1)
1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8)
1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2)
1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1)

1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7)
1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0)
1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3)
1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9)
1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5)
1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4)
1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1)
1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1)
1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4)
1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6)
1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61)
1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3)
1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8)
1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8)
1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8)
1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7)
1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0)
1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2)
1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8)
1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5)
1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9)
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4)
1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4)
1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4)
1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7)
1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9)
1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2)
1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4)
1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5)
1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6)
1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2)
1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8)
1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4)
1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1)
1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1)
1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1)
1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7)
1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6)

1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3)
1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5)
1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7)
1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3)
1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8)
1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2)
1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6)
1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2)
1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5)
1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0)
1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2)
1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4)
1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2)
1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0)
1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3)
1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3)
1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0)
1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56)
2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3)
2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42)
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14)
2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82)
2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64)
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30)
2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32)
207. 선거교육지원법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5)
20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7)
2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3)
2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5)
2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0)
2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8)
2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1)
2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8)
2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8)
2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4)
2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3)
2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5)
2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9)

2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6)
2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9)
22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5)
2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9)
2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9)
2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9)
2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9)
2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2)
22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6)
2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8)
2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25)
23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93)
232.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6)
233.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38)
2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2)
23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8)
23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51)
23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43)
238.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2)
23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07)
24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96)
24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8)
24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6)
24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5)
24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83)
245.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92)
24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97)
247.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77)
24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673)
249.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12)
2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7)
2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9)
2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99)
2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66)

2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6)
2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23)
2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33)
2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96)
25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2)
25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9)
26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77)
26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0)
26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88)
26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82)
26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56)
265.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7)
26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7)
26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45)
26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3)
26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35)
27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7)
27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45)
27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4)
27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1)
27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46)
27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24)
27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04)
27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40)
27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6)
27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44)
28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07)

28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다.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 라. 인사혁신처 소관
- 마. 경찰청 소관
- 바. 소방청 소관

28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다.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라. 경찰청 소관

283. 업무보고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다.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 라.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마. 인사혁신처 소관
- 바. 경찰청 소관
- 사. 소방청 소관

상정된 안건

-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22
- o 소위원장(이해식·강명구·박주민) 인사 22
-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3
- 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38) 23
- 4.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32) 23
- 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49) 23
- 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38) 23
- 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51) 23
- 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56) 23
- 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11)

.....	24
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640)	24
11.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65)	24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4)	24
1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00)	24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8)	24
1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47)	24
16.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40)	24
17.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8) ...	24
18.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13)	24
19.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0)	24
2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74)	24
2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1)	24
2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32) ...	24
2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2) ...	24
2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83) ...	24
2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1)	24
2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4)	24
2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60)	24
28.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6) ...	24
29.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69) ...	24
30.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94)	24
3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8)	24
3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52)	24
3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04)	24

3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30)	24
3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5)	24
3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39)	24
37.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5)	25
3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3)	25
3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5)	25
4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8)	25
4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42)	25
4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22)	25
4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8)	25
4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73)	25
4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8)	25
4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08)	25
4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16)	25
4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78)	25
4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8)	25
5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59)	25
5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0)	25
5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4)	25
5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32)	25
5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3)	25
55.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0)	25

.....	25
56.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59)	25
.....	25
57.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7)	25
58.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74)	25
59.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12)	25
6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2)	25
6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7)	25
6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00)	25
6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32)	25
6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49)	25
6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05)	25
6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1)	25
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8)	26
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7)	26
6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08)	26
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0)	26
7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6)	26
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29)	26
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30)	26
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91)	26
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05)	26
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56)	26
7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1)	26
7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05)	26
7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87)	26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28)	26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9)	26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78)	26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80)	26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7)	26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4)	26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9)	26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02)	26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9)	26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99)	26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00)	26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76)	26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5)	26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84)	26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86)	26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92)	26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93)	26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03)	26
98.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63)	26
9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5)	26
10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37)	26
10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9)	26
10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72)	27
10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426)	27
10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231)	27
10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94)	27
10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1)	27
10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5)	27
10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284)	27
10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222)	27
1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5)	27
1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2)	27
1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0)	27
1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90)	27
1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3)	27
1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54)	27

11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8)	27
11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6)	27
118.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01)	27
119.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7276)	27
12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830)	27
121.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7)	27
122.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4)	27
123.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23)	27
124.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8915)	27
125.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039)	27
126.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6)	27
127.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6)	27
12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2)	28
12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9)	28
13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85)	28
1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3)	28
1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3)	28
1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4)	28
1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98)	28
1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12)	28
136.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7)	28
13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70)	28
1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8)	28
1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6)	28
1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1)	28
1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8)	28

1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2)	28
1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1)	28
1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7)	28
1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0)	28
1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3)	28
1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9)	28
1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5)	28
1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4)	28
1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1)	28
1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1)	28
1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4)	28
1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6)	28
1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61)	28
1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3)	28
1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8)	28
1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8)	28
1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8)	28
1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7)	28
1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0)	28
1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2)	28
1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8)	28
1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5)	28
1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9)	28
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4)	29
1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4)	29
1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4)	29
1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7)	29
1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9)	29
1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2)	29
1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4)	29
1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5)	29
1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6)	29
1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2)	29
1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8)	29
1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4)	29
1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1)	29
1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1)	29

1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1)	29
1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7)	29
1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6)	29
1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3)	29
1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5)	29
1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7)	29
1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3)	29
1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8)	29
1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2)	29
1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6)	29
1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2)	29
1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5)	29
1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0)	29
1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2)	29
1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4)	29
1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2)	29
1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0)	29
1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3)	29
1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3)	29
1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0)	29
1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56)	29
2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3)	29
2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42)	29
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14)	29
2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82)	29
2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64)	30
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30)	30
2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32)	30
207. 선거교육지원법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5)	30
20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7)	30
2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3)	30
2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5)	30
2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0)	30
2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8)	30
2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1)	30
2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8)	30
2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8)	30
2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4)	30

2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3)	30
2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5)	30
2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9)	30
2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6)	30
2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9)	30
22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5)	30
2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9)	30
2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9)	30
2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9)	30
2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9)	30
2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2)	30
22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6)	30
2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8)	30
2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25)	30
23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93)	30
232.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6)	30
233.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38)	30
2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2)	30
23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8)	30
23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51)	30
23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43)	30
238.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2)	30
23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07)	30
24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96)	30
24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8)	31
24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6)	31
24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5)	31
24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83)	31
245.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92)	31
24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97)	31
247.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77)	31
24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673)	31
249.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12)	31
2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7)	31

2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9)	31
2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99)	31
2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66)	31
2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6)	31
2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23)	31
2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33)	31
2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96)	31
25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2)	31
25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9)	31
26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77)	31
26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0)	31
26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88)	31
26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82)	31
26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56)	31
265.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7)	31
26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7)	31
26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45)	31
26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3)	31
26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35)	31
27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7)	31
27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45)	31
27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4)	31
27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1)	31
27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46)	32

27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24)	32
27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04)	32
27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40)	32
27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6)	32
27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44)	32
28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07)	32
28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32
가. 행정안전부 소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다.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라. 인사혁신처 소관	
마. 경찰청 소관	
바. 소방청 소관	
28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32
가. 행정안전부 소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다.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라. 경찰청 소관	
283. 업무보고	49
가. 행정안전부 소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다.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라.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마. 인사혁신처 소관	
바. 경찰청 소관	
사. 소방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사보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께서 8월 18일 자로 사임되셨고 박정현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새로 보임되신 박정현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가 지역구인 박정현 위원입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주호영 위원님.

제가 원래 행안위에 구성이 됐다가 김영호 위원님께서 조금 사정이 있으서 가지고 잠깐 외통위로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바람을 쐬고 와서 행안위 활동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 제 행안위 목표는 어쨌든 지방정부를 더 강화시켜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지방주도성장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 가는 게 역할일 것 같고요. 마을공동체지원법 등을 통과해서 지역의 마을공동체를 더 강화하는 일이 제 역할일 것 같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잘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담당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장을 선출한 후에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남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경남 거제와 통영에 큰 피해가 발생했고 갑작스러운 산사태로 인해 소중한 국민 한 분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를 대표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재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더라도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재난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관기관 공직자분들께서는 신속한 피해 수습과 추가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와 결산심사를 시작으로 제22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올 하반기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분야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수청 출범에 따른 새로운 수사체계의 안착, 중앙선관위 개혁을 비롯한 선거관리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정착 등 주요한 변화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국민께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관기관의 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과제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소상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국민들께 새로운 변화가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인 토론으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신뢰를 받는 상임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배치되거나 직위가 변경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차 회의에서 소개드렸는데 국회 인사로 인해서 많은 인사 변화가 있어서 새롭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승기 전문위원입니다.

김세현 전문위원입니다.

김민지 입법조사관, 전아름 입법조사관, 서려 입법조사관 그리고 홍선기 행정실장입니다.

(인사)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9분)

○위원장 김영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대 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차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29이태원참사특조위 및 경찰청과 소방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예산과 결산·기금심사를 담당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할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 4개의 소위원회로 구성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서 이해식 간사님,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으로 강명구 간사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 박주민 위원님,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박덕흠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고자 합니다.

각 소위원회별 위원 구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 소위원장(이해식·강명구·박주민) 인사

(10시11분)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식 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해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소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소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명구 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강명구 위원 법안2소위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본부, 중앙선관위, 이태원특조위, 경찰청, 소방청이 우리 법안심사2소위에 속해 있는데요. 민생과 안전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이고 또 국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소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박주민 위원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오늘 박덕흠 소위원장님은 바쁘신 관계로 못 오셔서 출석하시는 대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12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건의 청원이 심사기간을 경과하였거나 경과될 예정이며 이러한 경우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의결로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5건의 심사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38)

4.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32)

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49)

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38)

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51)

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56)

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11)
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640)
11.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65)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4)
1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00)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8)
1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47)
16.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40)
17.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8)
18.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13)
19.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0)
2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74)
2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1)
2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32)
2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2)
2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83)
2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1)
2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4)
2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60)
28.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6)
29.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69)
30.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94)
3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8)
3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52)
3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04)
3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30)
3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5)
3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39)

37.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5)
3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3)
3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5)
4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8)
4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42)
4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22)
4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8)
4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73)
4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8)
4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08)
4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16)
4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78)
4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8)
5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59)
5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0)
5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4)
5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32)
5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3)
55.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0)
56.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59)
57.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7)
58.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74)
59.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12)
6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2)
6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7)
6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00)
6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32)
6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49)
6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05)
6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1)

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8)
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7)
6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08)
7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0)
7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6)
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29)
7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30)
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91)
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05)
7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56)
7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1)
7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05)
7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87)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28)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9)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78)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80)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7)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4)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9)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02)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9)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99)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00)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76)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5)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84)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86)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92)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93)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03)
98.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63)
9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5)
10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37)
10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9)

10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72)
10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6)
10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31)
10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94)
10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1)
10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5)
10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4)
10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2)
1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5)
1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2)
1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0)
1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90)
1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3)
1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54)
11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8)
11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6)
118.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01)
119.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6)
12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0)
121.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227)
122.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4)
123.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23)
124.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15)
125.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39)
126.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6)
127.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6)

12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2)
12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9)
13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85)
1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3)
1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3)
1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4)
1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98)
1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12)
136.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7)
13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70)
1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8)
1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6)
1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1)
1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8)
1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2)
1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1)
1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7)
1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0)
1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3)
1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9)
1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5)
1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4)
1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1)
1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1)
1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4)
1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6)
1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61)
1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3)
1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8)
1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8)
1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8)
1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7)
1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0)
1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2)
1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8)
1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5)
1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9)

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4)
1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4)
1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4)
1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7)
1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9)
1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2)
1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4)
1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5)
1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6)
1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2)
1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8)
1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4)
1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1)
1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1)
1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1)
1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7)
1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6)
1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3)
1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5)
1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7)
1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3)
1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8)
1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2)
1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6)
1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2)
1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5)
1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0)
1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2)
1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4)
1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2)
1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50)
1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3)
1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3)
1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50)
1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56)
2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3)
2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42)
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14)
2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82)

2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64)
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30)
2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32)
207. 선거교육지원법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5)
20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7)
2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3)
2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5)
2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0)
2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8)
2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1)
2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8)
2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8)
2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4)
2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3)
2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5)
2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9)
2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6)
2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9)
22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5)
2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9)
22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9)
2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9)
2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9)
2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2)
22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6)
2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8)
2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25)
23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93)
232.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96)
233.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38)
2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2)
23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8)
23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51)
23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43)
238.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2)
23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07)
24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96)

24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8)
24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6)
24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35)
24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83)
245.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92)
24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97)
247.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77)
24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673)
249.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12)
2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7)
2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9)
2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99)
2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66)
2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6)
2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23)
2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33)
2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96)
25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2)
25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9)
26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77)
26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0)
26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88)
26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82)
26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56)
265.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47)
26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037)
26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345)
26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3)
26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35)
27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47)
27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45)
27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4)
27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1)

27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46)

27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24)

27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04)

27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40)

27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6)

27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44)

28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07)

28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행정안전부 소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다.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라. 인사혁신처 소관

마. 경찰청 소관

바. 소방청 소관

28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가. 행정안전부 소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다.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라. 경찰청 소관

(10시13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으로 법률안 그리고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80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278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81항 및 제282항의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 결산심사와 관련해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세부적인 결산보고는 서면으

로 대체하고 각 기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업무 수행 중에도 행정안전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세입 결산액은 총 1298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771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528억 원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이자액 반납금입니다.

2025년도 세출 결산액은 총 86조 934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67조 385억 원 등에 총 82조 6777억 원을 지출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등에 총 3조 415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등에 206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선관위 강동완 사무총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국정 심의와 바쁘신 의정활동 수행 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총 25억 4500만 원으로 선거보전비용 반환금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23억 9700만 원과 과태료 1억 1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5년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궐위선거로 실시한 해로서 당초 예산 3634억 700만 원과 대통령선거관리를 위한 예비비 4804억 4800만 원 등 예산현액은 총 8438억 81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96.6%인 8155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 등을 위해 10억 3600만 원을 이용하고 공공요금 및 청사이전 관련 부족재원 마련 등을 위해 16억 100만 원을 전용했으며 다음 연도 이월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총 282억 9700만 원으로 대통령선거관리를 위한 예비비 중 267억 9400만 원과 각 관서의 집행잔액 15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대통령선거관리경비 3987억 원, 인건비 2293억 원, 정당보조금 1048억 원, 기관운영지원 48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

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실·화해위 송상교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송상교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실·화해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은 세출예산 규모 167억 6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 결산액은 1억 10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52억 42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등 총 1억 1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내역 및 불납결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총지출액 152억 4200만 원 중 진화위 운영사업으로 24억 8600만 원, 인건비 67억 3400만 원, 기본경비로 60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5년 이·전용 내역은 없으며 2기 진화위 활동기간이 25년 11월 26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47조에 의거 잔여예산 18억 3000만 원을 행안부로 이체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예산 대비 집행률은 90.9%이나 예산현액 대비 100% 집행하여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원특조위 송두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에서 하세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 송두환 존경하는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업무 수행 중에도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세입 결산액은 없습니다.

2025년도 세출 결산액은 예비비로 배정받은 예산현액 124억 원 중 86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등 주요 사업비로 10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27억 2300만 원, 기본경비로 49억 2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공무원연금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시험응시 수수료와 수입대체경비수입 등 총 620억 원이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6조 4085억 원 대비 99.9%인 총 6조 4058억 원이었으며 예비비는 없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인재채용, 인사혁신확산 등 7개 프로그램으로 총 2329억 원이며 공무원연금기금 전출액 6조 1728억 원이었습니다.

공무원연금기금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33조 131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찰청 유재성 직무대행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업무 중에도 항상 경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경찰병원 운영 관련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제주자치경찰 지원 관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세입 결산액은 총 1조 5030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13조 3558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3조 2674억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834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억 원입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조언과 고견은 향후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청 최용철 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최용철** 존경하는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업무 중에도 소방청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세입결산액은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수입대체경비 등 49억 원입니다. 2025년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3777억 원이며 이 중 3434억 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지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수석전문위원 장지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1630억 원 중 79.6%가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86조 2431억 원 중 99.8%가 집행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세입 관련 징수결정액의 20.4%가 수납되지 않았으므로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연례적으로 이용·전용 등이 실시된 사업의 경우 예산 규모 산정에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재난대책비 등 4개 사업이 매년 이·전용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였고 반대로 최근 5년간 이·전용으로 예산을 매년 감액한 것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 등 3개 사업입니다.

또한 연초에 이·전용 등이 실시된 사업은 당초 예산안 편성이 신중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데 2025년도 기준 총 9개 사업이 2월 이전에 이용·전용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례적인 이·전용 등이 되고 있는 이들 사업에 대한 검토와 시정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출 결산상 나타난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추천포상 운영과 관련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동 사업의 홍보 및 수여식 행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행안부는 일반수용비 1억 3800만 원을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하였으며 이는 당초 일반수용비 예산액의 59.7%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세목조정은 최근 5년간 반복되어 온 것으로 행사 규모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과 별개로 기본적인 용역 수요는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정례적인 행사의 수요와 규모를 예산편성 단계부터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세목조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사업은 13억 9700만 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이 약 69.1%에 그쳤으며, 특히 위원회 폐지에 따라 집행이 어려워진 예산 중 42억 1900만 원을 재난대책비로 이용하였습니다.

제1기 위원의 임기가 2024년 8월 종료되었음에도 제2기 위원회 구성이 2025년까지 지연되면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였고 이후 2025년 11월 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당초 계획한 4대 중점 추진과제 등 일부가 축소되거나 타 부처로 이관된 것입니다.

이에 향후 유사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그 구성 및 사업 추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내역사업인 화재피해복구 사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 320억 원을 배정받았으나 이를 포함한 예산현액 361억 중 74억 원을 이월하고 128억 원을 불용하는 등 상당한 예산을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화재 건물 등의 복구공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은 예비비 배정 당시에도 예상 가능하였고 공사비 대부분이 이월 또는 불용되어 실제 복구공사는 사실상 예비비가 아닌 이·전용 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향후 예비비 배정 시 사업 내용, 소요액 및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규모 이월·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공직선거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도 대통령선거를 위한 예비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비비 편성액 중 14억 3300만 원이 불용되어 약 15.9%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른 조기 선거로 일반적인 대통령선거에 비해 선거관리 기간이 짧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대한민국 헌법상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등 선거관리 기간의 단축은 예비비 편성 당시에도 이미 고려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소요액을 추계하고 이를 미리 반영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과 관련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취지를 준수하여 예산이 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내역사업인 K-주소 해외진출 추진과 관련하여 4개 사업에 3억 원을 위탁받았으나 기존 계획된 2개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집행한 외에 당초 계획되지 않은 주소 혁신 국제 컨퍼런스에 약 2억 원을 집행하는 등 K-주소 해외진출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시 계획과 달리 5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안부는 사업의 내용과 예산이 국회의 예산심의 취지에 부합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입니다.

마을기업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행안부는 마을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수탁 거부로 인해 직접 수행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그 운영이 지연되었고 관리용역 계약 시 별도의 입찰 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민주성이 저해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안부는 향후 사업 추진 시 그 방식과 예산 규모, 수의계약 필요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승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승기 전문위원 황승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과거사 부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관 2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요약입니다.

제1페이지입니다.

중앙선관위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의 60.8%인 25억 45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의 96.6%인 8155억 8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 배정액은 총 4804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4536억 5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비비 신청 시 재정 소요에 대한 면밀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전체 불용액 중 예비비 배정 사업에서 발생한 불용률이 94.7%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관리 사업의 당내경선관리에 9억 4800만 원이 배정되었으나 2800만 원만 집행되어 불용률이 97%에 이르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집행되는 예외적인 재원인 만큼 향후 예비비 신청 시 보다 정확한 소요 추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직책수행경비의 지급대상과 지급단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도선관위 사무처 과장을 4·5급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법과 달리 하위 훈령에서는 3급도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책수행경비가 과다 지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구시군선관위 담당관에게 5급 보조 기관 단가로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담당관에 대한 지급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시군선관위 사무처 과장 직위에 대한 하위규정을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구시군선관위 담당관의 직제상 지위와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안부 소관 과거사 관련 부분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주화운동지원 사업은 5·18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을 위해 170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당초 예산액 대비 43.4%인 74억 2000만 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남에 따라 관련 자료의 증빙이 어렵고 신청자의 80%가 광주 외 지역에 거주하여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한편 지급 결정 이후에도 보상금액에 대한 재심신청 및 소송 제기 등이 이어짐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연도별 실제 지급 가능 규모 추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의 99.5%인 620억 90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의 99.9%인 6조 4057억 7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기금의 조달액 및 운용액은 각각 33조 1312억 56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인사혁신처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운영은 예산현액 49억 89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10억 6100만 원 규모의 유사 사업을 집행하고 있어 사업 간 기능이 일부 중첩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퇴직 예정 또는 퇴직공무원 지원 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역할 분담 및 사업 간 연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김세현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경찰청, 소방청 및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결산상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안전의식선진화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성과를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025년 등록된 175건의 안전교육 콘텐츠의 92%인 161건이 조회수 500회 미만에 해당하여 국민의 이용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교육 콘텐츠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안전교육플랫폼 고도화 및 안전교육 콘텐츠에 대한 홍보 강화를 추진하는 등 사업 성과 확산에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면밀한 사업 추진 계획 수립을 통한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5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100억 원의 예산 중 실집행된 예산은 14억 9000만 원에 불과하여 실집행률이 14.9%에 그쳤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함에 있어서 각 사업지구별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속한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결산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부진 사업과 관련하여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2025년 5개의 세부사업에 편성된 총 7개의 내역사업 단위에서 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등 다수의 집행 부진 사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는 2026년 본예산 집행에 있어 예산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청 과태료 미수납액 증가 및 수납률 정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청 세입예산의 약 90.4%를 차지하는 과태료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53.4%에 그쳤습니다. 특히 과태료 수납률은 최근 4년간 53~55% 수준에 머무르는 가운데 미수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 발생 원인과 장기 체납 누적 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체납 발생 초기 단계부터 징수 조치를 적시에 실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를 강화하는 등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의 사업방식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청은 경찰 바디캠 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편성 당시에는 비통신형 바디캠을 도입하여 촬영 영상을 외장하드에 저장·관리하는 방식으로 계획하였으나 예산이 편성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통신용 바디캠 및 영상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을 전용하고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등이 변경되는 등 사업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방식과 사업규모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충분히 실시하여 예산 편성 이후 단기간 내 사업방식이 변경되거나 이에 따라 예산 전용 및 사업기간·총사업비 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요구 단계의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 소관 결산상 주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사업은 예산 집행이 부진한 문제가 있고 119 항공정비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 확충과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방청은 전국의 소방헬기를 한 곳에서 정비하기 위하여 119항공정비실을 건립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부지 계약과 설계 변경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2025년도 예산 집행률이

34.6%에 불과합니다.

한편 27년 7월에 준공 예정인 항공정비실의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전문 정비인력의 적기 충원, 지자체 소유 헬기를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 정비조직인증 취득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향후 소방청은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준공 시점에 맞춰 인력 확충과 제도 정비를 적기에 추진하여 통합정비 체계가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도입 사업 일정의 추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소방청은 2025년에 22억 원 추경 편성을 통해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환율 상승에 따른 입찰금액 초과로 관련 예산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향후 소방청은 대형 재난 대응과 직결되는 장비 보강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 공급 시장 구조 등 사업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법률안 및 결산에 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분에 한해서 실시하고 시간은 정부 측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법률안과 결산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질의는 업무보고 이후 별도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강명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간사님.

○강명구 위원 자료제출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중수청 임용 신청이 지난 20일 6시에 마감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임용 신청 관련돼 있는 세부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라고 요구했는데 깜깜하다가 어젯밤 늦게서야 한 장을 보내 오셨어요. 그냥 ‘2376명 지원했다’ 이 한 문장 기재밖에 없고, 검사 지원자 104명인데 104명에 대한 얘기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시면, 업무보고 자료를 봐도 마찬가지로 중수청 관련된 내용은 고작 한 페이지 뿐이고요. 접수한 전체 인원 숫자만 아주 적게 이렇게 그냥 표기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중수청 개청 앞두고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우려도 높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에 이런 식으로 보고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직급별·계급별 그리고 정원 대비 충원율이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고 실제 현장에서 수사할 수 있는 검사가 얼마만큼 지원했는지, 그리고 또 검사가 지원했다가 지원 철회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최종 인력이 확보된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 주셔야 10월 개청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 저희가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행정안전부에 방금 얘기한 중수청 세부 현황 자료 오늘 업무보고 하기 전까지 세세하게 해서 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경찰청장 자리가 오랫동안 공석인데, 보완수사권도 폐지된 마당에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작 조직을 이끌 리더십이 부족한 상황이고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안위 차원에서, 경찰의 수사 능력과 통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큰 만큼 빨리 행안위 차원에서 경찰청장 임명을 촉구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진 해당 부처 책임자는 자료 관련해서 관련한 사안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결산과 법률안에 관한 토론이기 때문에 법률안과 결산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 분, 이진 먼저 원하시는 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현안질의 및 보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현안은 현안 때 하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선관위 강동완 사무총장직무대행님, 지금 결산 자료로 의원실로 보내 온 2025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관리인식 지표의 목표치가 얼마였지요? 65점이었는데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62.2점이 나왔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원인이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권영진 위원 모르시지요? 그러니까 의원실에 보내 온 결산 자료인 성과보고서를 지금 사무총장대행이 읽어 보지도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기가 막힙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선거관리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위원회의 노력과 별개로 외부 환경요인이 성과지표에 반영된 측면이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는 시험공부 열심히 했는데 날씨가 궂어 가지고 시험지가 이상이 생겨서 망쳤다, 이거하고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고서 보면 ‘공정성·투명성 확보 및 선거 불신 해소를 위해서 향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성과보고서에 적시를 해 놨어요. 그런데 2026년 6·3 지방선거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 투표 당일 날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대기표를 받아 가 줄 서는 그런 진풍경이 일어나고 결국은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국민들, 유권자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걸 보면 실시간으로 투표자 수와 투표율을 임의로 입력하거나 초과분을 다른 투표에서 나눠 넣는 등 통계 조작·은폐 정황까지 드러나서 지금 검정수사를 받고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그렇습니다.

○권영진 위원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이런 일은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선관위의 해명이에요. ‘실시간 투표율은 잠정 자료이고 개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어차피 최종 통장 잔고만 맞으면 되는데 왜 과정의 오류를 그렇게 따지느냐 이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제 말이 너무 심합니까, 권한대행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투표자 수 입력 부분만큼은 현재 저희들이 읍·면·동위원회에서 입력하는 거와 구·시·군선관위에서 입력해서 국민 여러분께 공개되는 자료가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투표관리에 대한, 선관위 내에서 유권자 의식 조사를 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그렇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것 조사해서 지금 1년 사이에 선관위의 선거관리 믿을 수 없다,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라는 게 몇 프로 늘었어요? 1년 사이에 22.8%나 폭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설명을 자꾸 하시고 변명하고 하니깐, 국민들이 그럴수록 선관위에 대한 불신만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간에는 선관위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헌법이 선관위에 독립성을 부여한 것은, 오늘 전문위원의 결산보고 심사 평가에서 지금 선관위 4급·5급으로 보임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위 훈령으로 3급으로 보임하고 그렇게 해서 수당 더 받고, 이렇게 하라고 선관위에 독립성을 부여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흔들리지 말고 공정하게 선거 관리하라는 뜻인데 지금 마치 선관위는 치외법권의 성역처럼 만들어 준 걸로 착각하고 있다, 또 그리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정말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 이런 것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명하고 이렇게 하면 선관위가 방패로 삼고 있는 그 헌법적 권능이라는 건 결국 국민의 준엄한 불신과 심판의 창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강동완 사무총장권한대행님, 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이 자리에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근본적인 쇄신책을 찾겠다는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선거관리위원회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 저희들 국조특위 과정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개편연구반도 준비를 하고 있고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 해 주세요.

○**김예지 위원** 제 질의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위원장 김영진** 질의하시면서 하시지요.

○**김예지 위원** 아니요, 따로 해 주세요, 시간이 드니까요. 이견 시간 테이크 하지 말아 주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간 넣지 말아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강명구 간사님께서도 요청하셨는데요. 같은 자료, 중수청 지원 인원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이런 답변은 또 처음 들어 보는데, ‘자료 요구가 너무 많이 들어와 바쁘고 인사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답변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답이, 제출 당연히 이것은 했어야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언론에는 이미 흘러진 것도 있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보안 유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언론에는 공개하고 국회의원, 당연히 이런 것을 검증해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바쁘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답변 다시는 안 나오도록, 이제 국정감사도 있고 계속해서 예산도 있고 지속적으로 많을 겁니다. 바쁜 게 당연한 거고요. 저희는 자료 요구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중히 좀 타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사,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있습니다. 여기 사무실로 자료 요구하려고 전화 계속 했는데 내선도 연결 안 되고 계속 담당자 개별 연락처도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청에 저희 의원실에서 또 결산이나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고요 회피를 하고 있어요. 답변 회피하고 지연하고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실에서 경찰청에 요청한 자료 그리고 준비단에 요청한 자료 오후 제 질의 전까지 다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엄중히 타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넣어 주세요.

○**위원장 김영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지 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예지 위원** 감사합니다, 확인해 주셔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예지 위원** 국가와 지자체가 공무원과 비공무원 정원을 채워야 되지요. 의무고용률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몇 프로인지 아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프로 수치까지는……

○**김예지 위원** 3.8%. 공무원 잘 지키고 계셔서 자랑스러울 것 같기는 한데요, 비공무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고용부담금 내시고 계신 것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예지 위원 2025년에도 내셨고 지속적으로 안 낸 해가 없더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예지 위원 이 점도 자랑스럽지는 않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내셨느냐, PPT 좀 보여 주시면 좋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기존 사업예산을 이·전용한 것은 ‘다들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부처도 안 지키면 이렇게 합니다’라고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예산에서 이렇게 하고 청사시설 여기저기서 뜯어다 쓰시는데 이것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죄송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법정 의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요.

○김예지 위원 그러니까 지키셔야지, 이렇게 부담금 여기저기서 뜯어다 쓰시면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미처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 부담금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저희가……

그거를 이해해 드리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것 지키라고, 국가와 지자체 의무입니다. 이해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5년 자료만 봤을 때도 5년 동안 거의 20억 넘게 내셨습니다. 이 점은 반성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중수청 열리잖아요, 중수청 오는 10월 신설되는데 거기 약 109명가량의 장애인 채용 의무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것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안 되실 것 같아서 부담금 또 내실 건데 내년에 또 뭐에서 갖다 쓰실 건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이해해 달라, 노력하겠다’ 말고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비공무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앞으로……

○김예지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이행부담금을 물지 않도록 철저히 인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철저히 인사관리 어떻게 하실지를 좀 정해서 저희…… 지금 당장은 못 하시겠지만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거의 상위, 그러니까 제일 못 하고 있는 부처가 있어요. 다섯 개 부처 중의 하나예요. 기재부도 있고 많은데 ‘다른 부처보다 좀 나야요’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이번에……

왜냐하면 사실 이런 인사관리를 하시고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하시고 타 부처도 이런 인사관리에 대한 규정도 세우시고 하는 게 행안부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김예지 위원 정부 인사·조직·운영. 그 책임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는데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입니다.

이게 계속 불용 지속되고 있고 이런 내용은 당연한데 이번에 보통 보면 ‘누락되는 국민 없도록’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예지 위원 누락되는 국민이 없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한 2% 정도의……

○김예지 위원 165만 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상자분들 중의 2% 정도가 신청을 안 하셔서……

○김예지 위원 신청 안 하셔서? 지급받지 못한 것이 신청 안 하셔서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전부 지급이 됐습니다.

○김예지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해 본 결과 신청했는데 못 받은 분도 계신 걸로 나왔는데요. 혹시 이것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청자분들에게는 전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예지 위원 한 번만 다시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분명히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확인해서 오후에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신청을 하셨습니다만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지급이 안 됐다라는……

○김예지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모두가 누락 없이 받으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신 경우에. 그래서 98%가 신청을 하셨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됐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리고 그 관련해서 말씀인데요 접근성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신청 방법 그리고 신청을 언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에 대한 정보 접근에 취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민원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서울시 카드사와 협업해서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이게 선불카드인지 아니면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카드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요청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민원을 하셔서 서울시가 해결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마만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분들한테 정보 접근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것, 이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에 대한 것도 필요한데요. 이런 것에 대한 계획도 있으실까요? 이게 지자체에만 맡기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시작하실 때, 지금 2026년에도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예지 위원 이것 잘 사용되고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게 장애인분들에 대한 안내도 별도의 홍보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어떤 안내 계획이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신청창구에 점자 스티커를 붙여서 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리고 지금 다음에, 지금 후에 예를 들어 카드의 구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어느 카드의…… 이게 카드 구분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것도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지자체마다 사실 지급되는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은 75%고 타 지역은 90%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자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런 세세한 것들도 잘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금융권 카드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점자 카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리고 시작점이나 신청 내용 관련해서도 수어 관련한…… 수어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예지 위원** 관련한 소통 문제라든가 민원 문제라든가 해결에 있어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꼭 챙겨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명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위원장님, 인사혁신처장입니다.

김예지 위원님 행안부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정부가 장애인 고용 비율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 전체로 보면 낮지는……

○**위원장 김영진** 처장님, 인사혁신처에 질의한 게 아니니까요 이따가 업무보고할 때 그것 포함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 강명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위원** 경북 구미시을 출신의 행안위 간사 강명구 위원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님께 질의할게요.

처장님, 인사혁신처가 2023년도에 청년 인턴들 채용하고 있지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강명구 위원 그런데 결산 내역을 보니까 청년 인턴 운영비에서 5300만 원이나 불용됐네요. 그렇지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강명구 위원 이게 전체 운영비가 3억 58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15%에서 한 16%, 17% 되네요. 그렇지요? 처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알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이유가 뭔가요? 도중에 그만두는 이유 있나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중도 포기한 인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22명을 우리가 모집해서 인턴 활동을 6개월간 하도록 했는데 그중에 5명이 중도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이 조금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실제로 올해 채용한 청년 인턴이 28명인데 벌써 4명이나 그만뒀네요. 그렇지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실제 어떤 업무를 맡기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이게 저희가 사이트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세종에 있고 그다음에 진천에 인재원이 있고 과천에 고시원이 있습니다. 고시센터가 있거든요. 세 군데로 나눠서 하는데 아마 여기를 다니기가 어려운 인턴들이 중도에 그만두는 사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명구 위원 구체적으로 왜 그만뒀는지, 왜 다른 곳으로 취업해서 나간 것인지, 근무 환경이 나빠서 그런 건지 확인해 보셨나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아마 출퇴근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보니까 인사혁신처만 그런 것 아니고요 2025년도 소방청에도 청년 인턴들 불용액이 6600만 원이고요, 경찰청 청년 인턴 불용액도 무려 1억 300만 원에 달하네요.

최용철 소방청장님 그리고 유재성 차장님, 두 기관에서도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소방청장 최용철 예.

○강명구 위원 알고 계세요? 왜 불용액이 발생했지요? 소방청부터 말씀해 보시지요.

○소방청장 최용철 소방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32명을 채용하기로 돼 있는데 26명만 채용이 되었습니다. 6명이 미달이 되었고요. 그리고 26명을 채용하고 난 후에 6분이 중도에 퇴사를 했습니다. 주로 퇴사한 이유를 알아보니 다른 데 취업이 확정됐거나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런 이유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을 뽑아 놓고 정작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업무 환경이 안 됐다라는 이유라고 대다수 청년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서실 인턴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두 분 들어 보셨나요?

○소방청장 최용철 처음 들어 봤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처음 듣습니다.

○강명구 위원 이게 인턴으로 채용됐지만 막상 맞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독서실에 앉아서 취업 준비나 시키고 공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향후에 청년 인턴 확대해서 청년의 국정 경험이나 이런 것을 단순히 청년 인턴의 숫자만 늘리면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근무 환경은 괜찮은지, 중도에 사퇴하는 이유가 뭔지는 살펴봐 주셔야 된다. 그래서 청년 인턴들이 단순한 보조인력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험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관에서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청장 최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렇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률심사소위원회에 각 소관별로 회부하도록 하고 오늘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결산소위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서면질의를 가급적 오늘 18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3. 업무보고

가. 행정안전부 소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다.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라.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마. 인사혁신처 소관

바. 경찰청 소관

사. 소방청 소관

(11시07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기관별로 건재순으로 기관장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후반기 상임위원회 첫 번째 업무보고 장이라서 모든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존경하는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해식·강명구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2대 국회 하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영진 위원장님과 행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함께해 주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께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는 폭염과 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 대응하였으며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등 민생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AI 대전환과 지방소멸 대응, 비정상의 정상화 등 시대적 과제 해결에도 힘써 왔습니다. 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개시하여 AI 민주정부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뎠으며 하천·계곡 불법시설 9만여 건을 적발·정비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 왔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에는 역사상 최초의 광역 시·도 통합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며 지역 주도 균형성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국민민주권정부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로서 국민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과 함께 만드는 친절하고 유능한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대국민 행정서비스는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고 온·오프라인 정책 참여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업무 플랫폼 확대와 전략적인 정부조직 관리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수도권 1극 극복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주권에 기반한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분야별 정책 추진으로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자생력 있는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분권과 자치재정권 강화로 지역주도발전을 뒷받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여 민생경제에 활기가 돌도록 하겠습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균형성장과 지방소멸 극복의 새로운 계기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법체계 정비와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 육성, 촘촘한 현장 밀착형 대응체계 강화로 국민의 일상을 빈틈없이 지키겠습니다. 또한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방재 성능 목표와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안전관리로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겠습니다.

넷째, 공정한 국가질서를 회복하고 사회통합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적절한 정부포상 서훈을 취소하고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희생자 명예회복으로 과거를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아울러 일상 속 반칙과 편법이 부당한 이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우리 사회에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한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히 대응하였으며 재난특교세 긴급 지원, 복구대책지원본부 운영 등을 통해 피해 수습과 복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 청사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준비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여러분의 신뢰 속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가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든든한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노홍석 참여혁신조직실장입니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입니다.

진명기 자치혁신실장입니다.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입니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입니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입니다.

조덕진 사회재난실장입니다.

김중열 재난복구지원국장입니다.

장한 비상대비정책국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 현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이 기조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행정안전부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6년 업무 추진 실적, 주요 정책과제, 당면 현황, 입법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1차관, 1본부, 118개 과, 10개 소속기관으로 구성되고 정원은 총 3915명입니다.

4쪽, 5쪽의 주요 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올해 예산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하여 86조 3935억 원이며 이 중 지방으로 이전된 교부세가 74조 343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총 11조 9282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은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총 192

개입니다.

8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은 총 13개 기관입니다.

이어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과 11쪽입니다.

먼저 고유가피해지원금 6조 1000억 원을 신속히 지급해서 중동전쟁이 유발한 비상경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최초의 광역시도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지원했습니다.

다음으로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발표하고 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AI 민주정부로의 전환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대설, 산불,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를 달성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안전사회 구현을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계곡 불법 시설을 적발·정비하고 부적절한 정부포상 219점을 취소하는 등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어서 14쪽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친절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복합민원 절차를 재설계하고 지방정부의 전담조직·인력을 보강해 복잡한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혜택을 신청해 주는 서비스를 시범 개통해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두의 토론회, 모두의 광장 등 국민주도 정책참여 생태계를 구축하고 정보공개 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능형 업무플랫폼 온AI를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기관 간 데이터 공유·개방을 촉진해 정부의 AI 활용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AI 전환을 이끌 AI챔피언을 2030년까지 2만 명 양성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일 잘하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관합동 조직진단을 거쳐 쇄퇴·비효율 분야 기능을 재조정하고 핵심 국정 현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기구와 인력을 적극 보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수도권 1극 극복과 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 대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재정·조직 등 분야별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해 주민참여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 역량 제고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 종합계획 수립과 주민조례 입안을 지원하고 주민참여예산 확대로 주민주도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연대경제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기본사회 실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맞춰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4대 분야 정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위탁 확대를 유도하고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하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사업으로 청년층의 참여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기업과 청년마을을 육성해서 지역에 활력이 생기도록 하고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기본사회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균형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지방재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한 재정특례 발굴로 지역의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역의 활력을 고려하여 재지정하고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지방세 비율 7 대 3을 목표로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지역 내 소비와 투자가 선순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AI와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서 과학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재난대응기록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재난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기후변화를 반영한 방재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풍수해, 폭염, 산불, 화재 등 재난과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풍수해대책기간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고 폭염 취약계층과 사업장은 미리 관리·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확대하고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안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불감증 공사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공정한 국가질서를 회복하고 사회통합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관계부처 사과와 국가폭력 가해자 등에 대한 정부포상 취소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참사·재난 피해자분들의 권리 보장과 일상 회복을 위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원 전담기구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과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으로 지방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을 정비해서 공공성을 회복하고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혐오·비방 현수막을 근절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면 현안 4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 현황입니다.

지난 3월 제정된 중수청법의 후속 법령 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검찰청 인력 이전과 외부 인력 경력채용 등을 통해서 우수한 수사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청사의 경우 본청과 지방청사의 입지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수사·행정기능 중심으로 필수사무공간을 우선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조속히 준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 2일에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를 근절하기 위해서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 한도를 제한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폭염 및 가뭄 상황관리입니다.

먼저 폭염 심각단계에 따라서 중대본을 가동하고 취약 노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무더위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가뭄에 대응해서 남부지역 가뭄 대응단을 가동하는 한편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특교세 교부를 통한 취약지역의 수자원 관련 인프라 정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범정부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폭염과 가뭄에 대해 철저하게 상황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풍수해 대응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경남 거제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며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포함 총 5명, 피해 신고는 2216건입니다.

해당 기간 중에 위기경보를 주의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을 가동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하였으며 위험지역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 조치하였습니다.

일시대피자 등 이재민분들께는 임시주거시설과 구호물품을 제공하고 심리상담을 통해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수습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특교세와 재난구호사업비를 긴급 지원하였으며 향후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부터 입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완 선관위사무총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사무차장 강동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해박한 식견으로 우리 위원회의 업무를 살펴 주시고 선거관리제도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에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자

수 오염력으로 인해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권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고 매시간 제공되는 투표율 정보의 처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여러 실책에 대해 저를 포함한 선거관리위원회 전 구성원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투·개표 관리 절차는 물론 주요 의사결정 시스템과 현장 대응체계 등 업무 전반을 엄중히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투표용지의 인쇄·검수·배부·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시 점검하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선거일 투표용지는 선거인수 대비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축소 조정 시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 기준과 배부 절차도 법제화하겠습니다.

선거인 본인확인이나 취약 선거인 지원 등 국민 참정권과 직결된 중요사항은 법률 또는 규칙으로 격상하는 한편 본연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폐지하겠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직무전념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장 상근제와 복수 상임위원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각급 위원회 간 역할을 재정립하여 구·시·군 위원회는 투·개표 관리 등 현장 실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국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총동원되어야 하는 국가적 대사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국민 중심의 선거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 인력 양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복잡한 선거제도와 아직은 충분치 않은 인력풀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의 힘과 노력만으로 선거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지방공무원 인력과 시설, 장비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사무 지원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중요한 정책과 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좀 더 정확한 선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알권리가 축소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율 조사 방식을 표본조사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투표율 공개 주기를 2시간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가칭 투표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활용하여 투표율 집계·보고 체계를 개선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선거정보의 보고 절차와 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선관위 규칙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감사위원회를 법률기구로 격상하는 한편 국회에 가칭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선거관리 전반을 사후평가한 후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등 외부감독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잘못된 부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선거관리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한 부분과 국회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여러 지적과 제안을 염두에 두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개선하고 업무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선거관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혹과 우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검증 가능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조직·운영체계와 선거관리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의 논의에도 열린 자세로 임하고 필요한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협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지금의 상황을 선거관리의 기본을 다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권자 모두가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현장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고 주어진 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언을 경청하여 실질적인 업무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옥미선 기획조정실장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먼저 임정수 감사관입니다.

최관용 대변인입니다.

유혜원 미래조직기획단장입니다.

김인수 기획국장입니다.

유훈옥 정보관리국장입니다.

박세진 법제국장입니다.

조봉기 조사국장 겸 선거1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숙 기획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국장 김인수 기획국장 김인수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상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현안사항, 마지막으로 하반기 주요 현안사항 순입니다.

3쪽을 보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상황부터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을 보시겠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 3일에 실시됐으며 선거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14일간이었습니다.

선거인수는 인구수 대비 87.1%인 4465만여 명입니다.

후보자는 광역단체장 등 7개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포함하여 7767명이 등록했으며 선거벽보는 59만 7000여 매를 첩부했습니다.

10쪽입니다.

선거공보는 2440만여 세대에 발송했습니다.

투표소는 1만 4288개소, 사전투표소는 3571개소가 설치됐고 최종 투표율은 61%였습니다.

11쪽입니다.

투표가 종료된 후에는 전국 258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되어 4240명의 당선인이 결정되었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8회 지방선거 대비 26.8%p 증가한 2641건을 조치했습니다.

12쪽입니다.

선거소청은 총 709건이 제기됐으며 심의 결과 기각 404건, 각하 222건으로 결정했고 취하는 78건입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진행 중인 5건은 최근 기각 1건, 각하 4건으로 모두 종료됐습니다.

충주시장 외 3개 선거에 대한 재검표 결과 후보자 간 혼표 2건과 유·무효표 간 표의 이동이 일부 있었으나 당락이 바뀐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투표용지 부족 관련 진행경과 및 개선방안입니다.

서울 송파·강남·광진구 등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고 일부 선거인이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상황은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발생했고 그중 선거인이 대기하는 상황은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등 26개 투표소에서 발생했습니다.

18쪽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송파구의 경우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비율은 선거인수의 50%였으나 사전투표율을 고려한 전체 투표용지 확보 물량은 최종 투표율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투표소별 투표율 편차를 고려하지 못해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외에 세부 처리 경과 등 주요 내용은 18쪽과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 진행 상황입니다.

6월 8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의 위원 지명 해제와 사무총장 면직이 있었고 이후 선거정 책실장 등 9명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 감사관실의 특정 감사를 통해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 외부의 객관적 시각에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자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했고 그 결과 선거관리 절차와 위원회 운영 개선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제시됐습니다.

22쪽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위원회별·투표구별 선거일 투표율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못한 투표용지 축소인쇄 비율 결정에 있었습니다. 특히 송파구 선관위는 2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동의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50%로 결정하여 다른 선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쇄비율을 적용했습니다.

23쪽입니다.

또한 지역별 사전투표율 편차가 있음에도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 실패와 투표소별 잔여수량 파악 및 재분배 과정에서 상황 판단의 미흡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부재, 신속한 상황 전파 미이행과 이로 인한 위기대응체계 작동 미흡 등도 나타났습니다.

24쪽입니다.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총 8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수의 100%를 원칙으로 하되 축소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는 등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재검토하여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으로 투·개표 절차를 재정비하여 참정권 행사 등 중요사항은 법률 또는 규칙 등으로 구분 규정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사안의 위원회 보고·심의 확대와 의결사항 구체화를 통해 의사결정시스템을 강화하고 투표관리상황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대응을 위한 투표관리종합시스템 구축을 비롯하여 각종 비상상황을 담은 매뉴얼 제작과 정기 대응훈련으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선관위 조직 재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직무전념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 상근제와 복수의 상임위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으로 각급 선관위 간 기능과 책임 범위를 재정립하겠습니다.

법규 해석 등 통일성과 중립성을 요하는 사무는 시·도와 중앙선관위에서 수행하고 구·시·군선관위는 투·개표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휘와 지원·집행 체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4단계 조직구조와 각급 선관위 간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외부감독과 통제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행 규칙상 심의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독립된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국회 소관 상임위 산하에 독립적인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법정부적 선거사무 지원 의무화 추진입니다.

안정적 선거관리를 위해 인력·시설 등 기초자원 확보에 대한 사무 위임과 지원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선거 지원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투·개표 제도 및 선거운동 방법 검토입니다.

선거일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 익일 개표, 투표소 현장 개표 등 투·개표 관리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인력·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선거운동 방법 도입을 검토하는 등 변화된 선거환경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1쪽을 보시겠습니다.

제9회 지방선거 주요 현안의 두 번째로 시간대별 투표자수 오입력 관련 경과 및 개선 방안입니다.

이 사안은 각 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수 집계 과정에서 오입력된 투표자수를 이후 시간대에 같은 숫자로 입력하거나 같은 읍·면·동 내 다른 투표소로 분산하여 임의 조정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시간대별 투표자수 공개는 법률상 근거 규정은 없으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1996년부터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매시간대 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시간대별 투표자수는 입력과 집계·보고 시점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투표 진행 중 투표용지 교부매수를 집계·보고한 잠정 자료입니다. 따라서 최종 투표자수는 개표 종료 후 유·무효 투표지를 집계하여 확정된 자료이므로 잠정 집계된 투표자수와는 불가피하게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표 결과는 실물 투표지를 심사·계수한 결과를 개표상황표에 기록하여 공개하고 있으므로 투표 진행 중 공개된 투표자수는 실제 개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오류가 개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33쪽입니다.

발생 유형 및 원인으로는 투표자 수를 과다하게 입력·보고한 경우 시간이 지나면 자연 해소되도록 일정 시간 동안 투표자 수 증가치를 미입력 또는 적은 수만 입력하거나 다른 투표소로 분산하여 입력한 사례가 있었으며 과소 또는 누락의 경우 정정하여 공개하거나 다음 시간대에 일괄 반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를 착오 계산하거나 읍·면·동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 입력 오류, 구·시·군선관위의 검증 미흡 등 집계 입력 오류를 비롯하여 투표자 수 수정허가 처리에 대한 기준의 부존재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34쪽입니다.

개선방안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축소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 참여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표본투표소 선정 투표율 조사 방식 도입, 두 시간 단위 공개 주기 조정 및 정각 기준 집계 30분 후 공개 등 여러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투표 상황 관리를 위해 투표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활용하여 집계 및 보고 체계를 개

선하겠습니다.

또한 전산시스템 처리 정보의 보고 기준을 정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반기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첫째, 제23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운영입니다.

제23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9명을 국회의원획정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둘째, 2026년 지방체육회장선거 위탁 관리입니다.

시·도체육회장선거는 올해 12월 16일에, 시·군·구체육회장선거는 12월 23일에 실시 예정입니다.

체육계 특성과 관리 여건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선거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관할 선관위의 주도와 상급 위원회의 지원 강화를 통해 차질 없이 선거를 관리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셋째,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리기반 구축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내년 3월 3일에 실시되며 지난 제3회 조합장선거 기준 1300여 개 규모의 조합장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선거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각 조합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인력·시설·장비를 적기에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탁선거 법규에 따른 선거관리와 실무교육 강화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절차사무를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교 진화위원장 나와 주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축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송상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6일 출범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약 6개월간 조직 구성, 인력 채용, 관련 제도 정비 등 조사활동 기반을 구축하여 왔습니다.

지난 1·2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완결 과제를 신속히 완수하고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치유와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과거사의 진실을 올바르게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화해와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올해 아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 절차를 통해 3기 진실규명 업무를 본격화하겠습니다.

둘째, 조사3국 설치를 통해,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집단수용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의 인권침해 사건을 집중 조사하겠습니다.

셋째, 신청주의 한계를 보완하여 중요 사건에 대해 선제적인 직권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희생자 유해발굴과 신원확인 사업을 차질 없이 이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여섯째, 조사 기록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여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과거사 정리 사업에 늘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및 전 직원은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실규명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진실·화해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귀옥 상임위원입니다.

김준희 기획운영관입니다.

박은성 조사1국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양이 길지 않으므로 배부된 업무보고 자료를 기초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이어서 짧게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올해 2월 26일 날 출범했고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3년 동안 활동하고 2회에 걸쳐서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실규명 범위는 법 2조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특히 이번 개정법을 통해서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조직 현황 및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실규명 신청·접수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출범 이후 5개월 동안 6994건이 신규 신청되었습니다. 재외공관을 통한 접수도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규명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기 위원회에서 조사중지된 사건 2111건을 지난 7월 21일 날 조사개시 결정하였고 이어서 3기 위원회에 신규 접수된 사건도 현재 633건을 조사개시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개시 및 조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조사3국 설치를 통한 집단수용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진실규명에 매진하겠습니다.

조사3국 설치를 통해서 전담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 이를 위해서 조사3국을 설치함과 아울러서 인력을 확보하여 3과 체제를 현재 구성 중이며 10월까지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역사적 중요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추진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차원에서 직권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예를 들어서 남북어부 사건 그리고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한 6·25 처형자 명단에 대한 직권조사 등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8쪽입니다.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사업을 충실히 이어 가겠습니다.

2기 위원회에서 이미 유해발굴 및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 작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을 통한 유해발굴사업 등을 해 왔습니다.

3기 위원회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 유해발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좀 더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섯째, 피해자 중심의 명예회복 후속조치를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에 726개 사건 중에서 현재 약 53.5% 정도가 이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사정리법 개정에 따라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관리 주체가 기존의 행안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됨에 따라서 저희 위원회는 향후 국무조정실 이행관리단 및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조하여 권고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아울러서 과거사정리법 50조에 배·보상법에 대한 국가의 법 제정 의무가 이번에 도입되었습니다. 향후에 이에 따른 배·보상법이 충실히 국회에서 심의되어서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섯째, 진실규명 자료 수집 및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방대한 자료를 입수하고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실하게 진실규명 자료를 확보·수집하고 아울러서 확보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며 향후 위원회 기록물이 우리 사회에 유의미하게 활용·공유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록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앞으로 이 부분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두환 이태원특조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 송두환 존경하는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염원을 담아서 출범하였습니다.

위원회는 2025년 6월 17일 조사를 개시한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조사과제 선정, 자료 조사, 진술·면담조사, 청문회 개최 등 다각적인 조사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국가 및 관계기관의 대응 과정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보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규명하고 그 결과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리고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당초 예정된 기간 내에 주어진 과업을 완결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위원회는 오는 9월 16일 조사활동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진행해 온 조사를 충실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법률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펴 주시고 원활히 논의·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주어지는 시간을 최대한 내실 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특별법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고 유가족, 피해자 및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 사무처장입니다.

우필호 안전사회국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 사무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박진입니다.

조사활동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조사활동 내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5년 6월 17일 위원회 의결로 조사개시 결정을 하여 조사개시 329건 중 신청 사건 166건, 직권 사건 157건 등 총 323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6쪽입니다.

진상규명조사국에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직권조사와 국내 외 희생자와 피해자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진행 중이며 2026년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경찰, 소방, 지자체, 정보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안전사회국에서는 재난 예방, 대비, 대응, 관리 등 4개 과제와 피해자 권리침해 실태, 구제 지원 등 4개 과제, 총 8개 과제를 직권조사 중입니다. 과제와 관련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안전사회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1쪽, 현안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청문회와 조사활동을 통해 새롭게 확인된 핵심 과제를 본격적으로 규명해야 하는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정기간 내에 조사를 완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오전 회의는 인사혁신처까지 하고 정회 후 오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존경하는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혁신처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인사혁신처 전 직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에게 충직한 일 잘하는 공무원, 청렴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인사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에게 충직하고 책임을 다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 대해 제대로 보호하며 고위공직자들의 바람직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리더십 모델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는 강화하고 공직 내 마약 유입을 방지하는 한편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 가상자산 등 재산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전문 인재의 영입을 활성화하며 역량 있는 공무원이 조기에 승진할 수 있는 경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식 또는 암기 위주의 9급 시험과목을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 PSAT라고도 합니다. 그것으로 전환하고 개인의 자율적인 직무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습비 계좌를 도입하는 등 문제해결능력 중심의 인재선발 기반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력 있게 일하고 싶은 공직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지역의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와 복리후생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들이 공직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부터 재할·직무복귀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고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포용적인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 혁신은 제도 하나를 고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와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국회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향후 정책 추진에도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국민께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력과 책임으로 성과를 내는 정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주 기획조정관입니다.

손무조 인재채용국장입니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입니다.

오영렬 인사관리국장입니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입니다.

이은영 인재정보기획관입니다.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관으로부터 인사혁신처 업무를 조금 더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주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 유승주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유승주입니다.

인사혁신처의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사혁신처는 4국, 4관의 본부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3개의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기관으로 공무원연금공단 이 있습니다.

정원은 총 617명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인재채용·혁신, 인사관리, 윤리복무, 재해보상 등 공무원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인사 분야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관 법령은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법률 9개를 포함한 총 56개이고 국가부담금을 포함한 2026년 예산은 6조 8420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민에게 충직하고 책임을 다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공무원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에 대한 보상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헌법과 국민주권 원칙에 기반한 공직 리더십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소극행정과 혐오 표현,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공직 내 마약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의 재산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둘째, 공직역량 강화를 통한 실력 있는 공직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공무원을 확대하고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겠습니다.

핵심 직위의 부처 간 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우수 민간 인재를 적극 영입하는 한편 역량 있는 공직자가 조기에 승진할 수 있는 승진 경로도 신설하여 범정부적인 우수 인재로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직적격성평가를 국가직 9급, 공공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학습비 계좌 제도를 도입해 자율적인 직무학습을 지원하는 한편 AI 학습을 전 공무원에 의무화하는 등 공직자의 역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사업무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개인 맞춤형 AI 인사 상담도 도입하는 등 인사업무 전반에 인공지능 전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셋째, 공직사회에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역 구분모집을 확대하고 지역가산점을 신설하는 한편 개인 창업 등까지 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청년과 지역 인재들의 공직 진입의 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도 지속 개선하여 2027년까지 9급 초임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높이고 신규 공무원의 기본교육과 공직 적응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마음건강센터 확대, 공상공무원의 보상·예우 강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 고위공무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육아친화적인 제도의 정착을 통해 보다 포용적인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돼서 예고했던 대로 잠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22대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지금 경찰에 주어진 책임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께서 경찰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수사권이 공정하고 절제되어 행사되는지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제도 변화를 권한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이 더 커졌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범죄의 양상은 온·오프라인과 국내외의 경계를 가리지 않고 국민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으며 범인을 검거하는 것을 넘어 위기에 놓인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정부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피해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켰으며 초국가 범죄, 온라인 마약 등 대응이 어렵던 영역에서도 국내외 기관과 공조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지원과 국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 생각합니다. 위원님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경찰의 업

무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와 반칙을 엄단하여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매점매석 등 서민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민생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로 얻은 이익은 반드시 박탈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마약과 스캠 등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는 국제공조와 전문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까지 척결하겠습니다.

사회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는 허위정보와 혐오표현을 상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같은 반인권적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비위와 편법, 기초질서 위반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나 하나 바로잡아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반칙과 편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든 경찰활동의 중심을 국민 생명 존중에 두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단 1명의 목숨이라도 더 살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위험에 처한 국민을 더 일찍 발견하고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범죄 양상 등 각종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순찰과 예방 활동을 더욱 정교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신고 접수부터 가해자 격리, 피해자 보호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기관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여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발생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시설 개선 등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 가겠습니다.

아울러 위기에 놓인 약자에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상 회복과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공감받는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를 만들겠습니다.

내부 비리를 상시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리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와 부실·불공정 행위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등 외부의 시선으로 경찰 수사를 살펴보고 사건 압장, 부실·편파 수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수사·공소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간 견제와 협력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고 역량 있는 수사관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치안행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 확대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현장을 중심에 둔 활력 있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작은 민원 하나하나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현장 경찰관이 불필요한 업무와 관행에서 벗어나 오로지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대와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과 갑질을 바로잡고 소신 있게 일한 경찰관이 보호받으며 합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찰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경찰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께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때까지 경찰 활동 전반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국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경찰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철 기획조정관직무대리입니다.

이승엽 범죄예방대응국장입니다.

김병기 경비국장입니다.

유승렬 수사기획조정관입니다.

박우현 수사국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업무 내용은 기획조정관직무대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기획조정관직무대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기획조정관직무대리 이영철 경찰청 기획조정관직무대리입니다.

지금부터 경찰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서 역점 추진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민생범죄를 근절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경제범죄 척결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악성사기, 불법사금융 등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해 집중 단속하는 한편 범죄 수익에 대한 추적·보전과 대포폰·대포차 수사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약 공급·유통망을 차단하고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수사체계를 확대 개편하고 위장수사 도입, 국제공조 작전 등 국내외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전건 접수와 즉일조사를 원칙으로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해 강력범죄를 차단하겠습니다.

법무부와 고위험 가해자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시스템 연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세대 스마트워치 도입, 민간경호 확대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침해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하겠습니다.

범정부 대응 TF를 중심으로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캄보디아 발 스캠범죄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국외도피사범도 집중 검거해 나가겠습니다. 양자·다자 협력 등 치안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재외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국민에게 공감받는 법 집행으로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범죄는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자진신고자는 선처하고 재활과 치유를 지원하겠습니다. 경미범죄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형사절차로부터 조기에 해방하겠습니다. 조직폭력 전담팀을 중심으로 생활주변 조직성 범죄와 서민 대상 주취폭력 범죄를 엄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범죄예방과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재범우려자 데이터 기반 대응과 드론 순찰 등 예방치안을 고도화하고 이상동기 범죄 전조증후사건은 신속히 제압하여 강력범죄를 예방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정신응급 합동대응팀,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등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여성 소상공인·1인 가구를 대상으로 비상벨·CCTV 등 방범 인프라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통해 감소해 나가겠습니다. 보행자 보호 인프라를 개선하고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은 범정부 합동으로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에도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해·재난 현장에서의 긴급구조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집중호우 등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고현장 통제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재난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관계기관과 적극 공유하는 한편 인파관리 장비 확충, 합동훈련 등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일터와 생활 속의 안전 위해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일·반복사고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구조적 원인까지 밝혀내겠습니다. 자살 감소를 위해 현장 보호부터 사건 처리까지 전 과정의 예방활동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아동학대 점검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은 적극 분리하는 등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은 지난해 수립한 범정부 종합대책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선도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혐오·허위정보 등에 엄정 대응하여 공동체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는 허위정보 등 유포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허위정보유포행위는 삭제·차단 요청하고 엄정 수사하는 한편 사회적 참사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는 전담수사팀

을 통해 적극 수사하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집회·시위 대응과 경력운용 패러다임을 전환 중입니다. 경찰의 역할을 사후적·보충적 역할로 전환하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혐오 집회·시위는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비리·비위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부동산 범죄, 토착비리 등 부패비리와 보험사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유출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규칙을 지키면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사회 곳곳에 반칙을 해소하겠습니다. 보복대행 범죄는 상선과 의뢰자까지 모두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악성·장기 체납과태료는 징수를 강화하고 국세청과 협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 무질서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함께 기초질서 위반행위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단기 공소시효를 고려해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 중이며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 정체성 수호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이버 침해 공격에도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개정 간첩법 시행에 맞춰 방첩조직·인력 협력체계 정비 등 철저히 준비를 하고 국내 일반테러 주무기관으로서 빈틈없는 대테러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를 쇄신하겠습니다. 8월 초부터 경찰청장직무대행을 팀장으로 TF를 구성해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등 형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출범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를 통해 외부의 시각에서 경찰 수사 전반을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권고사항은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과제를 중심으로 경찰 수사 쇄신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공소기관 간 견제와 통제를 통해 수사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이행상황을 감독하고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사건관계인의 권리보장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는 전건을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통보하는 등 제도적 견제장치를 강화해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국민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법제화를 통해 권한을 실질화하고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변호사회의 사법경찰평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설문조사도 실질화하겠습니다.

경찰 수사 비위에 대한 상시 감시를 위해 경찰관 가족사건 상피제와 순환인사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청의 내부비리를 수사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신설하는 한편 수사·감찰을 일원화하고 시도청 감찰부서장의 상피제 등을 통해 수사·감찰의 객관성과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건 문의와 사적 접촉은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주요

수사비위 징계기준 상향과 수사부서 영구 배제 등 수사부서 인적 쇄신도 추진하겠습니다.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 형소법 시행 전 업무량에 상응하는 수사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과·팀장 평가 확대, 경력채용 확대 등을 통해 전문가를 확충하는 한편 경찰 수사 교육의 양적·질적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수사지원 AI를 고도화하여 수사경찰의 효율적 업무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과 현장 중심으로 경찰조직과 문화를 쇄신하겠습니다. 헌법과 인권 중심의 경찰활동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필수적으로 시행하여 헌법 가치를 내재화하고 법집행 과정에서의 행동기준을 제시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경찰청인권위의 활성화 등 인권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법 집행 과정에서의 면책, 법률 지원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우수 성과자는 상응하는 보상을 부여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관행과 갑질을 근절하여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공정한 평가와 합당한 보상체계를 위해 인사·조직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경찰 활동에 국민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상담부터 법률 안내까지 24시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AI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력을 낭비하는 반복 민원은 시민청문상담관 등 전문가를 통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여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한 14개 국민체감과제는 신속히 추진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주요 정책은 수요자 중심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확대를 통해 치안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치안활동의 주체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자치경찰제의 개선을 위해 범정부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시범운영을 거친 후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복공무원의 헌신에 상응하도록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찰관의 근무 특성을 고려한 육체적 건강지원과 함께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토대로 경찰관의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직무에 걸맞은 처우 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경찰관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법안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찰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철 소방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최용철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난과 첨단기술 발전이 가져온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라는 복합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난의 양상은 갈수록 예측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반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또한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발생한 대형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은 물론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극단적 기후재난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는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소방청은 이러한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진단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어떠한 재난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명예·신뢰·헌신이라는 변함없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방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방청의 주요 정책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떠한 재난에도 흔들림 없는 정교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전문교육을 통해 역량을 갖춘 지휘관을 육성하고 전국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현장의 지휘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겠습니다. 소방 출동로 확보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국 단위 구급 이송체계 확립을 통해 위험에 처한 국민 곁에 한발 더 빠르게 다가가겠습니다.

기후위기 재난에는 예측 단계부터 소방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전국 소방력을 총동원하여 재난 확산을 억제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선제적 예방 중심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장, 창고, 위험물 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일터에서의 피해를 줄이고 중앙 차원의 특별사법경찰 역할을 확대하여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자체 소방안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체소방대 교육·훈련도 내실화하여 재난 초기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국민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첨단과학 소방으로 도약하여 대한민국 소방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신고, 출동, 대응, 예방까지 전 분야에 AI와 빅데이터를 접목하여 소방시스템을 과학적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올해 8월 소방인공지능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으며 피지컬 AI 등 민간의 앞선 기술이 소방 현장에 빠르게 유입되는 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과학기술이 재난 현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대원의 역량과 안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첨단장비 개발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나아가 소방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해외 진출 및 수출 활성화 지원에도 소방청이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국민 안전에 전념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사기는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소방대원의 마음 건강관리부터 공상·순직 대원에 대한 예우, 유가족 지원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청렴과 공정을 바탕으로 조직의 신뢰와 기강을 확립하고 효율적인 조직과 재정 운영을 통해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소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6만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명 앞에 단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한 소방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홍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상현 장비기술국장입니다.

이인중 혁신행정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계획은 기획조정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홍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기획조정관 김재홍 소방청 기획조정관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성과, 26년 중점 추진과제, 주요 추진 법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와 정원입니다.

중앙은 1관 3국, 25과, 3개의 소속기관으로 정원은 총 933명이며 시·도는 17개 소방본부, 242개의 소방서에 6만 7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9만 1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법률 및 예산입니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 화재예방법 등 20개 법률을 관장하고 있으며 올해 소방의 예산은 총 8조 9898억 원으로 이 중 중앙의 소방청 예산은 4.3%인 3931억 원입니다.

4쪽, 소속 산하기관 현황입니다.

소방청에는 중앙소방학교 등 3개 소속기관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립소방병원 등 6개의 산하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5쪽,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지난해 소방은 총 510만여 건을 출동하여 하루 평균 1만 40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의 주요 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2026년 소방청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소방청은 국민안전 최우선이라는 목표와 명예, 신뢰, 헌신의 변치 않는 핵심 가치 아래 소방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교한 대응체계 확립, 선제적 예방, 첨단과학 소방으로 도약 그리고 국민안전에 전념하는 조직문화 조성의 4대 전략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첫째, 정교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먼저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입니다.

전문교육을 통해 역량과 자격을 갖춘 지휘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전국 단위 인사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대형·복합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소방본부의 지휘체계도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체적 신속출동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참여하는 소방차 길 터주기 문화를 만들어 가는 한편 고위험 산모와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전국 단위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위급 상황에서는 헬기를 통해 신속히 이송하겠습니다.

아울러 점차 심화되는 기후위기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반복사고발생 장소를 분석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대규모 피해예상지역에는 특수구조대 등 전문인력과 장비를 선제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폭염 취약계층은 의용소방대와 함께 세심하게 살피고 가뭄 시에는 전국의 소방력을 총동원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급수를 지원하는 등 복합적인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둘째, 선제적 예방으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현장 등 일터에서의 화재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공장, 창고, 데이터센터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소방관서 차원의 점검·관리와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차원의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활성화하여 화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의 자율 소방안전관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자체점검과 훈련 과정의 부실관행을 개선하고 화재 초기진압의 핵심 주체인 자체소방대와 관계인에 대한 교육훈련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대피로 폐쇄 등 소방 관련 불법행위를 국민과 함께 근절해 나가고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확대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교육체계를 확립하고 어르신 등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역량도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셋째, 첨단과학 소방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먼저 AI·데이터 기반 소방으로 대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신고, 출동, 대응, 예방 등 소방 전 분야에 AI와 빅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접목하는 한편 민간의 첨단기술이 소방현장에 신속하게 도입·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첨단과학기술로 현장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붕괴, 폭발 등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로봇이나 드론을 우선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개인보호장비의 성능도 강화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대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산업 육성과 수출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영세한 소방산업체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자립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넷째, 국민안전에 전념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을 국가가 지키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현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신건강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순직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실질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소방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소방 본연의 책무인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직급별로 필요한 핵심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재난 사례를 기반으로 팀 전술훈련을 반복 실시하는 상시 학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현장인력의 단계적 충원과 지방소방재정의 신규재원 확보를 통해 소방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 조직문화를 투명하게 진단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역 없는 감찰 활동으로 비위를 예방하고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 추진 법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주질의시간은 간사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이번에 행안위로 다시 왔는데요. 오래간만에 오니까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중수청 개청도 있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13년 만에 통과되기도 한 역사적 사건도 있었고 해서 우리 행안부장관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잘 해 나가실 것으로 믿고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제가 선관위국조위원이었기도 해서 하반기에는 특히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고 또 국민 안심이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청장님, 장미란 씨 시신 찾았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금일 발견이 됐습니다.

○김영배 위원 발견됐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김영배 위원 그리고 그 이외에도 기존에 부 경장인가 하는 그분, 그러니까 가족들이

실종신고하니까 ‘무사하다, 본인이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 이러면서 가족들한테는 전화를 해 놓고 실제로는 실종 기록을 처리시스템에서 다 삭제해 버린 그분 말이지요. 그분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구속영장을 금일 신청을 했습니다, 경찰이.

○**김영배 위원**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7월 22일 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직위해제 상태였다는데 맞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감찰조사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국민들이 궁금한 게, 어떻게 해서 한 경찰서에서 한 담당자가 실종신고되는 분들에 대해서 가족들한테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데도 전혀 경찰이 이것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장기간 방치했다, 도대체 몇 건 이랬는지를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경찰에서 시스템상 이 부분을, 한 달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책임 있게 준비해 주시고 이 문제는 이후에도 국민들 관심이 높으니까 그때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행안부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영배 위원** 지금 중수청이 10월 2일 날 개청하는 것으로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2874명의 중수청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중에 이번에 검찰에서 넘어오겠다고 신청한 인력이 82.6%에 해당하는 2375명이다 이렇게 밝히셨더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영배 위원** 그중에 검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가 검사의 신청인원수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개략적인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앞으로든 혹시 지금 신청 못 한 검사들도 다시 신청해서 중수청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중수청법에 따르면 내년 4월 30일까지 검사 또 검찰 출신의 직원들이 중수청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제가 바라건대, 국민들도 바라는 바일 텐데 이왕 만드는 것 중수청으로 넘어오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검사, 검찰 수사관이 많은 그런 상황이 내년 초에 국민들께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저도 검찰에는 현재 수사역량을 아주 잘 갖추고 있고 또 수사를 통해서 국가 정의, 사회 정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훌륭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보니까 중수청이 본청이 있고요, 6개 지방청이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전청하고 수원청이 지금 임시청사를 마련하고 들어갈 건데, 거기에 인테리어도 하고 입주할 하게 되는데 사정상 대전청과 수원청이 신축·이전하거나 내년 초에 본 청사로 다시 이전한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적당한 입주 건물을 확보하지 못해서 수원청의 경우에는 성남에 청사를 마련할 예정이고요. 성남의 인테리어가 모두 끝날 때까지 잠시 몇 개월 정도 수원에 임시사무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대전청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하기 위해서 신축할 때까지 세종에 청사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 2년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영배 위원 물론 그만큼 긴급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최대한 국민들께 사법서비스, 제대로 된 치안서비스 이것을 제공함으로써 예산 낭비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도록……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산 낭비보다도 치안서비스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시사무소를 얻게 됐습니다.

○김영배 위원 예, 예산의 효율성 이것을 최대한 확보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영배 위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역사적인 통과를 했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영배 위원 예, 그러게요.

그중에 보니까 시도 기본계획은 법정의무인데 시군구 계획에 대해서는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풀뿌리 경제기 때문에 시군구 계획이 중요하지 않을까, 꼭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담뱃세가 지금 일몰되면서 지방교육세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담뱃세분 지방교육세……

○김영배 위원 예, 담뱃세분 지방교육세지요. 그게 일몰된다고 하는데 그게 1조 좀 넘는다고 하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최근에 저도 서울시당위원장 하면서 보니까 청년 주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박근혜정부 때 담뱃세를 대폭 올리면서 지방교육세를 만들었는데 이왕이면 이것을 지방주거복지세 이런 형태로 전환시켜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재원으로 사용하는 게 어떠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담뱃세를 이왕 걷는 것 이것을 일몰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환해서 활용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에서 지방교육세를 지금 말씀하신 지방주거복지세 이런 것으로 전환해서 그 세원을—주로 대도시 지역에 세원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주거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 윤호중 장관님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 달서구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권영진 위원입니다.

장관님, 업무보고 간략하게 한번 여쭙보고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5극 3특이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전략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지방주도성장입니다.

○권영진 위원 그것의 주무부서도 행안부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5극 3특이라는 용어가 한 줄도 안 나와요. 5극 3특 정책이 변경되거나, 포기한 것은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러면 5극 3특으로 가려면…… 결과적으로는 광역행정 통합을 이루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권영진 위원 그런데 지난 2월 달에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 그리고 전남광주행정특별법 3개가 올라갔는데 전남광주행정특별법만 통과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장관님께서 주무장관으로서 나머지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이나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동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기간 동안 관련한 업무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제 새 단체장이 선출되었고,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언제까지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행안부가 5극 3특을 완성하는 목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목표 지점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단체장이 선출되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장분들이 합의를 해서 혹 임기 중에도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지금 대구와 경북은 시장과 도지사가 빨리 통합을 하기로 다시 합의를 했습니다. 선언했기 때문에 장관께서 특히 국회를 잘 설득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리고 장관님, 지금 중수청 출범 준비 잘 되어 가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권영진 위원 지금 제가 볼 때 걱정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이관이 제대로 되겠느냐? 지금 준비시간이 40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관돼야 될 미제사건 그다음에 또 참고인 중지사건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그 사건 숫자는...

○**권영진 위원** 155만 건이나 됩니다. 이거 두 달 만에 가능합니까? 만약에 이관 도중에 사건기록이 분실되거나 압수물이 뒤섞이거나 이렇게 되면 규정 위반 등으로 죄인을 풀어줘야 되는—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이런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것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당연히 10월 2일을 기해서 사건을 이관받아야 하겠습니다만 검찰에서 올해 안에,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수사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권영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수사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 과정을 기록하는 영상녹화 그리고 압수수색 검증 전 과정에서도 영상녹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수청이 이런 것 할 수가 없지요, 당장 출범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거기에 필요한 장비와 이런 것들을.....

○**권영진 위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1년을 유예시켜 놔습니다.

그런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자칫하다 보면 국민 인권의 사각지대, 사법 무법지대에서 국민의 인권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저는 중수청이 너무 서두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수사행정 업무 부담 과중으로 인한 부실수사.

그렇지 않아도 경찰의 부실수사 부분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관련해서 굉장한 걱정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동안 행안부는 보니까 5억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를 통보 대상에서 제외해 주었기 때문에 일선 경찰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경찰에 물어보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보 대상에서 제외 요청했는데 이게 반려되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대한 경찰청의 의견은 지금 입법.....

○**권영진 위원** 그런데 장관님,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 가면 그렇지 않아도 경찰에게 전적으로 수사가 밀릴 텐데 무려 7만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중수청에 서면보고해야 하는, 어찌 보면 서류작업 하다가 경찰이 굉장히..... 이것 경찰들한테 물어보세요. 일선 경찰들한테 제가 들은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장관님이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무래도 키스(KIC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번째, 지금 시행령도 문제입니다. 중수청 내부의 수사권 남용과 정치적 압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사관이 상관의 지휘에 서면으로 항의할 수 있도록 시행령 14조에는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해 놔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밑에 16조에는 수명 의무를 또 뒤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중수청장이나 중수청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결국 상명하복 이거든요. 이것 모순입니다.

이 부분들도 과연 이의제기 절차가 그냥 홍보용이고 시늉이고 결과적으로는 상명하복의 조향을 뒤서 수사를 통제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상명하복 조향에 불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이 조향의 법적 구조는 검찰청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권영진 위원** 장관님, 내가 더 질문할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정성호 장관께서 사직서를 낸 이후에 국회로 돌아가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하게 수정하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보건대는 중수청의 출범이라든지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 부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장관님께서 정성호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개정 형사소송법의 문제점 이 부분들의 시행을 유예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법무부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 제기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찰법의 개정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통해서 부실수사라든가 암장수사 또는 보완수사 해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중수청 출범도 저는 10월 2일 출범하기에 준비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조금 출범을 연기해서라도 준비를 제대로 하고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다시 시행을 연기한다면 오히려 사법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실종된 장미란 씨로 일단 신원이 확인된 거지요? 추정이 되는 건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추정입니다. 지금 공식 부검은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옷과 슬리퍼 그리고 휴대폰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감식을 하고 신원확인언제 최종 확인되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시점은 국과수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찰 보도를 보니까 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는데 아직 정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제주청장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목매사 추정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채현일 위원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런데 보니까 발견 장소가 숙소에서 불과 1km, 걸어서 5분 거리잖아요, 10분 거리. 그러면 최초 실종신고 당시 정상적으로 수색을 했더라면 이런 사망사고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처음에 기지국이 한림항으로 나왔는데, 기지국 위치는 한림항으로 나와서 한림항 주변을 수색했는데 위치가 펜션 숙소에서 한림항으로 가고 있는 중간의 야자나무숲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지국 주변으로 최초에는 수색이 이루어졌고 그 후에 폭넓게 수색을 해서 발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A 경장이, 부 경장이 왜 이렇게 허위로 사건 종결을 했다고 보십니까, 직무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통해서 사유나 이런 부분들, 또 다른 사건이 그렇게 잘못 처리된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밝혀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실종자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매뉴얼에 의하면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체계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변사 처리로 임의적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허위종결을……

이런 경우가 전국 사례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번이 특수한 경우인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지금 실종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담당자가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신속하게 시스템 개선도 하고, 시스템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수기로 해서 팀장, 과장 결재 후에 종결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 사건에 대해서 전수 점검을 지시해서 전수 점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지금 A 경장, 부 경장이 실종수사팀에서 처리했던 사건이 한 200건으로 알려졌더라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제가 보고받기로는 29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중에서 허위로 종결 확인돼 가지고 사망사고로 된 게 2건이잖아요, 장미란 사건하고 60대 사망사건.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다른 한 건이 더 확인됐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 외에도 이렇게 셀프 종결, 그러니까 허위종결 해 가지고 그런 건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심되는 사건이 추가로 몇 건 있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부 경장이 처리한 사건 전체가 298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도 진행하면서 전수 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지금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셀프 종결로 의심되는 게 약 10건이고 그중에 2건이 아까 사망사고고요, 신원이 확인 안 된 게 4건이라고 나옵니다. 그중에 1건은 아까 사망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실종자 등에게 연락이 안 돼 가지고 허위종결 사건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신속하게 그 내용들을 확인……

○채현일 위원 확인을 안 해 보셨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제가 그 부분을 자세하게 보고받지는 못했는데 부 경장 처리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채현일 위원 광주에서 대규모 투자 사기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금액이 한 200억 정도 되고 피해자가 32명인데 현직 교사가 동료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접근해 가지고 돌려막기식 사기사건이었는데 이것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지금 이 사건이 어떤가요? 아까 보이스포싱이니 여러 가지 사기, 특정사기범죄 얘기를 했는데 심각하지 않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래서 광주 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엄정하게 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문제는 특정사기범죄 기소 전 몰수·추정보전 현황이 있는데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사기사건 같은 경우는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신속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더욱더 이게 보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장기 사건이 50%, 과반수가 넘고요.

그런데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청장직무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최근에 사기범죄 같은 경우는 보이스포싱과 같은, 투자리딩방 사기 같은 그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대포통장이라든지 대포폰을 이용하고 또 초국경을 넘나들어서 범죄조직들이 외국과 국내와 서로 역할을 분담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검거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것도 맞고요. 사건 대비 수사 인력이 너무 적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하반기에 자금추적수사팀을 서울, 경기남부, 부산 쪽에 보강을 했잖아요. 광주 같은 경우는 보강을 안 했어요. 내년에는 이제 인천하고 경남, 경기북부만 계획이 있고 그래서 현재 범죄수익 추적인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은 경우도 전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골고루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위원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인력 여건상 전체에 다 한 번에 이렇게 보강하지 못하는데, 순차적으로 또 빠른 시간 내에 전 시도청의 범죄수익 추적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광주 대규모 투자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경찰청장직무대행님, 대행님으로만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행님, 방금 채현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에서 발생했던 이 실종사건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까지 치밀하게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청 감찰을 내려보내서 사건 접수부터 처리, 종결까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또 제도개선해야 될 부분을 명확히 확인을 해서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배 위원님이 부탁하신 대로 진행되는 중간중간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 행안위 위원들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다른 거 좀 질의하겠는데요. 수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하면 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유죄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모으는 작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증거들이 충분히 모여서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있을 단계가 됐으면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는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수집했던 증거들이 현출이 돼서 공개적으로 다뤄지면서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이게 형사절차 맞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런데 이 과정이 위법하게 진행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안 됩니다.

○박주민 위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부정하기도 하고, 고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 직권남용이라든지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래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이후로 무죄판결이 났다 그러면 일단 수사기관이 수사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주민 위원 이걸 가지고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박주민 위원 최근에 노웅래 전 의원 관련된 사건이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 관련돼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이 사건만큼이나 확실한 증거가 많은 사건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1심 판결 그리고 1심 판결에 이어서 2심 판결이 무죄가 나온 이유가 바로 위법

하게 증거가 수집됐다는 이유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기소를 한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증거 자체의 수집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수사를 했던 기관이나 또 그 수사했던 기관을 감독했던 공무원들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지요? 어떻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주민 위원** 특히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1심에서 부정했던 증거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증거까지 포함돼서 봤을 때도 유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기소를 했던 과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짚어 볼 지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수사를 하는 기관들은 열심히 수사를 하되 기소 전에는 기소하는 기관이 그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한번 스크리닝하는 작업을 거쳐야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줄이고 보다 정확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맞지요, 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래서 이런 원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저희가 개정했고 관련된 기관들을 지금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행안부장관님,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원칙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고 또 이런 개정에 이어서 지금 중수청 설치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중수청이 차질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다른 걸 행안부장관님께 좀 여쭙보겠는데요. 24년부터 행안부가 진행하는 사업타당성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국가라든지 공공단체, 지자체 등에서 투자하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비도 포함해서 총 사업비를 산정하게 바뀌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지방정부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분을 포함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중앙투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민간 투자분을 빼고 총 사업비를 해 가지고 투자 관련된 심사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지방재정법 위반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박주민 위원** 맞습니다. 최근에 감사원이 한강버스 관련해서 감사를 한 결과 서울시 재정 투입분만을 총 사업비로 산정해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올 3월에 발표……

○**박주민 위원** 맞습니다. 서울시가 선착장 하부시설 건설비용만을 총 사업비로 산정을 했어요, 212억만. 그런데 실제로 민간사업비까지 포함하면 2024년 12월 기준으로 총 사업비가 1542억입니다. 대략 한 7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투자하는 사업비만을 놓고 타당성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위반했다라고 감사원 결과가 나왔고 서울시는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위법한 절차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님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시거나 고민하시는 바 없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감사원의 지적과 그다음에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기관에 통보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정도의 시정명령을 했을 뿐이지 현재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라는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행안부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미 예산이 모두 집행된 상황이라서, 이를테면 시정명령에 실효가 없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주민 위원** 최근에 보도를 보면 운행에 따른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재정이 투입돼야 된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 맞는지, 제 생각에는 좀 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후에 관련해서 저도 계속 살펴볼 테니까 장관님께서도 관심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추가 예산 투입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예산 투입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행안부장관님, 오랜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남 광주시가 통합이 됐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7월 1일부터 통합돼서 이제 두 달 다 돼 가는데 예상했던 상황하고 통합 상황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은 되고 있고요. 다만 아무래도 오랫동안 나눠어져 있던 지방정부가 하나로 합치는 만큼 조정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통합에 대한 평가는 따로 있을 때보다 통합이 역시 통합하기 잘했다는 평가입니까 아니면 예상한 것보다 문제가 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의미 있는 통합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이제 일부 신문에 보면 지역에서 거창하게 통합하면 당장 뭐가

좋아질 것처럼 해 놓고 별로 변화도 없고 실제적으로 조정할 문제가 많다. 인사부터 시작해서 이런데 현지 상황을 실제로 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하나하나 특히 주사무소 문제를 놓고 지역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문제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던 것을 잘 조율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이 정부의 지금 지방분권정책이 5극 3특 정책 아닙니까? 나머지 지역도 통합을 원하면 통합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실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됐던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셨는데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진행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법사위에서는 뭐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겁니까? 지금 행안부 입장에서 법사위에서 걸려 있는 것이 뭐 때문에 걸려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찾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뭐 때문에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인지, 추미애 위원장의 이야기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서 안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측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민주당이 특정 지역만 편애하고 있어서 안 해 준 것이라면 민주당을 설득하든지 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파악해 보셨는지하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부의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법사위의 심의가 있기 직전에 대구시의회의 반대 성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북도의 북부지역, 북부지역 기초 단체와 기초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이렇게 지역 내에 반발 움직임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주호영 위원** 그것은 정직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대구시의회는 훨씬 더 권한을 달라는 취지로, 그렇다면 반대라고 했다가 그러면 통합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즉시 찬성을 했습니다, 부결 결정이 있기 전에. 그리고 경북은 22개 시군 중에서 안동하고 붙어 있는 영주 쪽하고만 도청 기능이 혹시 다시 대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했는데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언론을 중심으로 지역차별을 한다부터 아니면 통합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리해지는 그 지역 출신 의원이 민주당에 요청해서 하는 것이다, 온갖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인 행안부에서는 법사위 사정을 더 파악해 보시고 지금도 대구시의회가 반대하는지, 지금도 경북, 북부가 반대하는지를 보고 손 놓지 말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열의가 안 보여서 제가 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방정부와 의회가 새로 다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의견을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이제 중수처, 소위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없어지면서 10월 1일부터 중수청 출범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10월 2일부터.

○**주호영 위원** 2일부터 출범하는 거지요. 이미 법은 검찰청법하고 바꿔 놓은 상태에서

관련 법이 몇 개쯤 바뀌어야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조항의 여러 가지 표현을 바뀌야 되는 것들이 한 15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제가 기획단인가요 거기에 확인해 보니까, 저는 법으로 들었는데 조문이 아니라 한 190개 정도라고 하다가 조금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려면 10월 2일 전에 법이 다 통과되고 공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 법 개정 절차에 대해서 국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국회사무처하고 협의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우리 행안위 법일 텐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호영 위원**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 여기 많을 텐데 지금 8월 후반기인데 어느 세월에 가져와서 우리가 다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 법안들이라도 지금 보고를 해라, 행안위에. 그래야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어느 날 딱 들고 와서 ‘내일모레 출범인데 이거 다 해 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일괄 개정……

○**주호영 위원** 아니, 어떤 방식이 되든 일괄 방식의 용어를 이걸로 바꾸려고 하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아닙니까, 150개 조문이든 150개 법률이든. 그것은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 오늘이라도 보고를 하셔야 이 조항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다음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지 그냥 국회를 진짜 통법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당 법률과 조항, 조문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조만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아니, 10월 2일이 지금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조만간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8월 중에는 다……

○**주호영 위원** 더구나 장관께서는 의원도 겸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이든 여러 사람이 보고 의견을 내면 탈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다가 탈이 나면 책임지실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총리실의 검찰개혁추진TF가 만들어져서 정부 내의 의견을 다 취합하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걸린다는……

○**주호영 위원** 지금이라도 어느 조항들이 문제된다 정도는 다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검사, 경찰관, 이래 가지고 컴퓨터로 찾아야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게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주호영 위원** 빨리 보고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호영 위원 혹시 오늘 조선일보 기사 보셨습니까, 보완수사권에 관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주호영 위원 서울대 로스쿨에서 정년퇴직한 형사법 교수인데 ‘너무 혼란스럽고 잘못됐다. 시행 전에 다시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팔이 고장 났다고 하는데 사람 목을 자른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지 않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렇지 않다 소리만 하지 말고. 잼버리 대회 할 때도 다 준비 잘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달리 먹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귀를 열고 뭐가 문제고 어느 것을 다시 보완해야 될지 성의를 가지고 챙기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1기통 엔진 쓰다가 2기통으로 바꾸니까 좀 어색해 하실 수는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당연히 책임져야지요.

○주호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경찰청장대행님이 이쪽으로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의하는 동안 2분 정도. 여기서도 안 보여요.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대행님, 많은 위원님들이 제주 실종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실종지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분을 104일 만에 찾았다, 이게 맞습니까, 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많이 잘못됐습니다.

○윤건영 위원 이 부분을 개인의 일탈로 보십니까, 아니면 시스템의 미비로 보십니까, 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위원 경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서 계속 이런 식의 모습들을 반복해서 보여 준다면 경찰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 1차 신고가 5월 15일에 있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차 신고가 7월 19일에 있었습니다. 맞지요, 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런데 본격 수사 착수한 것은 8월 11일이예요. 2차 신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20여 일이 지나서 수사에 들어갑니다, 생활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등에 따라서. 만약에 2차 신고 즉시 반응을 했더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제가 보고받기로는 2차 신고를 받고 서에 전담팀도 꾸리고 8월 4일 날……

○**윤건영 위원** 그게 다 8월 11일 언저리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2차 신고가 7월 19일이지요? 7월 19일 맞잖아요, 2차 신고가?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7월 19일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8월 11일은……

○**윤건영 위원** 아니, 전담팀 꾸려진 것은 8월 4일이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15일 동안 뭐 했는데요? 실종 사건인데 15일 동안 손 놓고 있었습니까, 보름 동안? 그게 말이 돼요? 할 말이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이 부분은 많이 잘못됐습니다.

○**윤건영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2차 신고까지 들어갔으면 바로 조치를 취하든지 했어야지요. 그때 부 경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조치를 취했으면 7월에 발견됐을 것 아닙니까? 7월 19일 날 2차 신고가 들어갔는데 보름이나 지나서 전담팀 구성하고 본격 수사 착수한 게 8월 11일이예요, 20일 지나서. 이러니 어떻게 불안을 안 느끼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8월……

○**윤건영 위원** 경찰조직을 대표하는 대행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를 정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제주 실종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사 중인데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개인의 일탈과 시스템 점검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들어가시고요.

시간 잠깐 멈춰 주십시오.

다음은 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내란 종합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한남동 관저에 대한 수사 결과도 있습니다. 관저 관련해서 계약의 주체는 행안부가 맞지요, 장관님? 물론 이전 윤석열 정부 행안부에서 벌어졌던 일이라는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을 대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PPT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관저에 대한 예산 전용이 있었을 때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조 모 주무관계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즉 비서실의 압력에 의해서 행안부가 예산을 전용하려고 하니 실무자인 주무관은 ‘안 된다, 전용은 위법이다, 국가재정법에도 위반이고 회계직원책임법의 의무 소홀이고 이렇게 되면 국조나 국감의 대상이다’라고 명백하게 썼어요. 이 자료 보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윤건영 위원** 이랬는데 담당 과장이 이 보고를 받고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장 실장 차관까지 다 올라가서 결재를 받아서 차관이 예산 전용을 허가해 줍니다. 심각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담당 직원이 의견을 냈던 것은 신규 공사를 불요불급하다고 취소하고 그것을 전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전용은 위법이라고 했으면 그 위에 있었던 과장·국장에 대해서 조치가 있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래서……

○**윤건영 위원** 조사를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는 헌법……

○**윤건영 위원** 종합특검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요, 종합특검 수사 이전에 올 초에 헌법 TF를 통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조치가 있었습니까? 이런 실무자의 경고를 무시했던 과장·국장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직접 조치를 하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그 과장은 당시에 신규 사업 예산을 전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전용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비껴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종합특검이 수사 결과도 발표했고 이 부분은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당 과장은 그렇게 자기만의 알리바이를 내세워서 비껴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시간이 충분하면 자세히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장관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 국장이 지금 산하기관 대표로 가 있지 않습니까? 기관장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죄를 지었으면 징값을 받는 게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장관님께서 이 부분은 점검해서 처벌받아야 되면 처벌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하면 장관님 책임하에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장관님, 10월 2일 중수청 출범 준비에 굉장히 바쁘시지요?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까지 일정표에 따라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저는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중수청장을 임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중수청장은 그야말로 검찰개혁의 상징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보도자료 낸 것을 보니까 수사 전문성, 신뢰성,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저는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잘

했다고 세평이 있었던 윤석열·한동훈 어땠습니까? 조작수사·편파수사·기획수사, 그래서 노웅래 전 의원이 그렇게 조작기소로, 조작수사로 그리고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기소되고 무죄 선고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묻은 사람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묻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수사 전문성 있고 그리고 인권의식이 충분한 그런 사람들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의 명운이 걸린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무부장관·민정수석·공소청장 그리고 중수청장까지 다 검사 출신으로 되게 되면 검찰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검찰청과 검사가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해 왔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취지가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인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맞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우리가 상징적인 얘기를 한다면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 원칙이 정확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초대 중수청장은 그런 정신에 철저하게 입각해서 임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중수청에 옮겨 오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력과 예산 확보 문제인데요. 인력은 세간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언론보도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검사들도 100명 이상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 부분인데요. 현재 중수청 관련 예산을 보면 정보화 예산 약 130억 원만 본예산 사업으로 편성됐고 청사 임차 등을 위한 예산은 예비비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가기관을 출범시키면서 핵심적인 조직 운영 예산을 예비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된 기관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올해 4/4분기 예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이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 아직 집행되지 않은 잔액을 공소청과 중수청이 나눠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청사 마련을 위한 비용은 검찰청 예산에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4500억 이상 내년 예산에 편성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면 2027년도 본예산에 정부안이 곧 제출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제출된 예산에 중수청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중요한 조건이 수사 관련된 유무형의 수사자산과 제도적 권한을 중수청으로 제대로 이관하는 일을 행안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요.

PPT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수사준칙인데요, 검경 수사준칙입니다. 제70조(영의 해석 및 개정)를 보면 ‘이 영을 해석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은 협의의 주체인 거고요.

그런데 수사는 수사기관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가면서 공소 업무만 하게 되는데 수사준칙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게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수사준칙은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의 시행령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법무부 소관 법률이기 때문에 그 시행령에 대해서 법무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 간에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협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현재 형사소송법이 공소·수사 모두 섞여 있는 법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수사 업무가 굉장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행령도 분리해서 준비되어야 된다, 저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기본적으로 수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지휘나 수사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법무부와 검사로부터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결국은 강제수사로 전환될 때에는 영장청구를 통해서 검사와 협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무부와 행안부가 협의해서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요.

다음 PPT.

지금 과학수사 아니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정춘생 위원** 지금 수사를 못 하는데 과학수사부가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서요 최종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수청이 과학수사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춘생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2분만 더 주실 수 있습니까? 다음 질의에서 1분 뺄게요.

○**위원장 김영진** 예외로 하면 계속 늘어나니까 그냥 구두로 하세요.

○**정춘생 위원** 어쨌든 저는 과학수사부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수사는 중수청, 다른 수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관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도 대검 산하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 이것을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는데요. 포렌식센터뿐만이 아니라 NDFaaS, 모든 것들이 저는 중수청으로 이관이 되거나 아니면 제3의 독립기관으로 이관이 돼서 수사를 온전히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나 대검에서는 그런 이유로 한다, 공소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증거 수집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는 그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증거 수집 이런 것 조사도 다 수사의 영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이것에 근거해서 증거 수집하게 되면 저는 이것도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간에 철저하게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이관을 하는 방향으로 중수청 출범하기 전에 매듭을 지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국회에 도움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정춘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때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웅 위원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박상웅입니다.

오늘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첫 질의에 들어가면서 먼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조직과 지방행정을 총괄하고 재난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행정의 핵심 컨트롤타워, 경찰을 비롯한 치안행정과 앞으로 새롭게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까지 그 역할과 책임은 매우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을 둘러싼 여러 논란 또 경남 지역의 가뭄과 폭우 같은 잇따른 재난 대응을 지켜보면서 과연 국가행정의 기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호중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8월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375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2376명입니다.

○박상웅 위원 아, 1명 늘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상웅 위원 전체 정원 2874명 중에 82.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숫자만 보면 상당한 인력이 확보된 것처럼 보이는데 행안부는 2376명 가운데 검사가 몇 명인지 검찰수사관이 몇 명인지 직급별로 몇 명이 지원했는지 아직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 7376명 가운데 현직 검사는 총 몇 명이 지원했으며 직급별로 정확히 몇 명인지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죄송합니다만 인사관리와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가 직급별 숫자를 보고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상웅 위원 정부가 마련한 기준을 보면 지검장급은 1급 상당, 차장·부장검사급은 2

급 상당, 그 밖의 검사는 범조경력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런데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실제 현재까지의 검사 지원자 수는 100여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많은 정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현원 총 2063명의 5% 정도가 지원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지원율 82.6%라는 숫자만 홍보를 하고 밝힐 게 아니라 실제 중대범죄수사를 지휘하고 사건을 설계할 검사 출신 전문인력이 얼마나 확보됐는지 국민과 국회에 지금쯤은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면면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단순히 숫자만을 가지고 충분히 확보됐다, 안 돼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상웅 위원** 행안부는 향후 인사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직군별·계급별 지원 인원을 장관님처럼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장급이 적어도 몇 명이나, 부장급이 몇 명이나 이것을 판단해서 개칭을 앞두고 얼마나 준비가 되어 가는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도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인사상의 문제, 개인정보 이렇게 이유로 해 가지고 코 앞으로 다가온 10월 2일 목표 충원을 실제로 몇 명 정도가 필요합니까, 검사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 정원은 267명입니다. 그러니까 4급 이상……

○**박상웅 위원** 그러면 앞으로 167명만 더 들어오면 되네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4급 이상 직책이 267……

○**박상웅 위원** 아니, 4급 밑으로는 검사가 없으니까, 보면 그래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러니까 그 직위에 있는 자리에 모두 다 검사가 임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사장, 부장검사 등 중수청 수사관이 되면 인사·감찰은 누가 합니까? 행안부장관님이 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감찰기구는 중수청 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인사는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인사는 중수청 인사위원회가 행안부에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행안부에, 중수청으로 옮겨 가는 검사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니고 특정직 공무원인데 맞습니까? 특정직 공무원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박상웅 위원** 어제의 동료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고 같이 있던 동료는 공소청 검사로 갈라지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직 검찰에 몸 담았던 분들끼리 서로 어떤 특정 사건을 놓고 사적 접촉을 할 가능성도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장치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통해서 기강을 잡아 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중수청은 연간 예산을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건비, 조직관리비, 기타 특활비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될 텐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제가 한 4500억 정도 이상 편성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래서 중수청장을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검사 출신 수사관 중에서 할 거냐, 기존의 경찰 출신 중에서 할 거냐, 아니면 이 수사하고 관계없는 정무직으로 임명을 할 거냐 저도 예측을 못 하겠는데 어떤 방향으로 인사 결정을 할 계획인지 혹시 방침이 써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원칙적인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수청장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면 대통령은 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청장에 대한 인사방침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직은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런 말씀 밝힌 적이 없어요? 행안부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경찰을 총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경찰이 그동안 이런 부실 수사로 보완수사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의원실에서 그동안 경찰이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어떤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마다 쇄신안을 발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10년간 쇄신안을 몇 번 발표했는가 하니까 경찰에서는 모른다고 합니다. 위낙……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쇄신안을 자주 발표해서, 그래서 이렇게 실무자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데 자꾸 이렇게 쇄신안만 발표할 게 아니라……

제주도 실종사건 오늘 비보로 내용이 다시 밝혀 졌습니다만, 성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광주 사건도 그렇고 여러 곳곳에 일어나는 경찰의 이런 무능하고 안이한 태도 그리고 자기 식구끼리 감싸고 짜고 노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제도개선에 협조를 할지 안 할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기억할 수도 없는 쇄신안만 나온 것처럼 경찰은 계속 미안하다는 말로만 반복된다면 안 되겠지요? 이제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직접 책임을 지고 나서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장관이 되고 처음 발표한 경찰의 수사 혁신 방안입니다. 반드시 실현되도록 할 거고요.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는 2020년까지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엄연히 살아 있을 때의 수사고요 그 이후에 10월 1일까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구에서 온 이광희입니다.

행안부장관님, 내년 6월에 특례시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광희 위원** 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 특례시……

○**이광희 위원** 예, 특례시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 특례시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지금 개정안이 제출돼서……

○**이광희 위원**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광희 위원** 특례시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 보다 더 많은 자치권을 줘서 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광희 위원** 행정수요와 법적 권한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 것 같은데 현재 특례시 기준 인구가 100만 명이에요. 그러면 100만 명이면 이 100만 명의 도시가 다섯 곳인데 수도권에만 네 곳이고요. 심지어는 창원도 올해 4000명이 감소해서 주민등록 인구로만 하면 100만 명이 깨졌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법률로 보면 특례시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럼으로써 수도권만 강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지 않아도 이광희 위원님께서 인구 기준을 좀 완화하는 비수도권의 경우에 100만 기준을 좀 낮춰야 되겠다라는 그런 안을 제출해 주셔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저ն요 이런 특례시 문제가 100만 이상 혹은 광역화된 도시 때문에 나타났다면……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지금 봐 주시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100만 명 이상이거나 혹은 50명이 넘는 도시가 비수도권에 6개밖에 없습니다. 100만은 사실상 1개도 없고요, 창원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특례시제도를 만들었던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맨 위에 보시면 10만 명 이하의 지역은 88개입니다. 거의 다 비수도권이고요. 대부분이 비수도권입니다. 94%가 비수도권인데, 이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것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앞으로 좀 연구하고 검토돼야 될 대목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광희 위원** 지금 문제는 특례시가 자칫 잘못하면 수도권 일극체제를 강화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행안부가 현재 5극 3특 하면

서 인구소멸 대응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런 대원칙에 부합되는 정책을 낸다면 오히려 10만 이하의 88개 지자체에 달하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10만 미만의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경우에 저희 대부분이 지금 인구소멸지구, 그러니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또 특별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인구감소지역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여쭙겠습니다.

이제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하는 게 두 달 정도 후면 다시 재지정하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5년 만에 다시 재지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 기존 지표를 수정해서 새로운 지표를 적용해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제가 지난해에서부터 지정의 기준을 단순히 인구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척도를 가지고 새로 평가를 해야 될 것이라고 해서 지금 거의 그 용역 결과가 다 나왔고요. 이제 심사 직전까지 기준을 손보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문제는 2021년과 2026년에 서로 다른 지표와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실제 여건이 좋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평가기준이 변경돼서 그렇게 되는 건지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 문제들이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잘 손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다는 이유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래서……

○**이광희 위원**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지표를 적용할 경우에 저는 우려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표를 가지고만 평가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인구가 늘어나거나 인구가 감소해서 포함된 지역들에 대한 정책의 효율성, 정책의 적합성의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정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을 손보는 거고요.

○**이광희 위원** 아니, 제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리고 지정하는 방식도 1차 지정할 때는 지난 5년 동안 인구가 감소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을 했는데요. 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정부,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약간 인구가 늘었다고 해서 감소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여서……

○**이광희 위원**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는 갑자기 인구가 조금 증가했다고 해서 지원이 끊기면 어떡하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감소지

역 내에서도 그렇게 증가세로 돌아선 부분을……

○이광희 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인구활력지역 이런 것으로 지정해서 계속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혹시 그 재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련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새롭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지자체에 들면서 그 이전에 지원을 받던 곳에 지원이 끊길 우려가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는 것 같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저는 성과를 낸 지역의 정책 성과는 이어가도록 지원을 하되 또 그 비용을 새롭게 지정된 지역에 부과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기존 지역에 대한 연착륙 지원과 또 신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집중지원이 모두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의하여 9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유재성 청장직무대행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 이미 질의하셔서 같은 내용은 생략하고요. 허위보고 제주 사건 관련한 질의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스템상 보고와 승인 절차가 수사를 시작한 사람에서 종결될 수 있다. 그 보고나 승인 절차 없이 시스템상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현 시스템에는 담당자가……

○김예지 위원 규정도 그렇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현……

○김예지 위원 규정도 보고와 승인 절차가 없습니까? 경찰 규정이 없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매뉴얼은……

○김예지 위원 매뉴얼은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매뉴얼……

○김예지 위원 그런데 왜 매뉴얼 안 지키셨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매뉴얼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예지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빨리 알려 주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김예지 위원 오늘 이것 끝나기 전까지 주시고.

규정상 보고와 승인 절차가 저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당연히……

○김예지 위원 시스템상에는 본인이 시스템 접속만 가능하면 할 수 있었겠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김예지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달이 난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김예지 위원 이것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상부에 보고하고 승인하게 한다,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도 매뉴얼 안 따르셨는데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시스템을……

○김예지 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시스템을 개선해서……

○김예지 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건데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팀장·과장 결제가 이루어진 다음……

○김예지 위원 팀장·과장 이름으로 본인이 하면 어찌할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예지 위원 없도록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건 가능합니다.

○김예지 위원 개선 내용들을 철저히 검토를 하시고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이것은 경찰 자체의 수사와 감찰 결과만을 지켜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허위 종결과 내부 통제 실패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김예지 위원 이제 중대범죄 외에는 경찰이 모든 것을, 수사 권한을 가집니다, 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김예지 위원 더 중요해지겠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김예지 위원 더 신뢰를 주셔야 되는데 계속 신뢰를 떨어트리는 일만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철저한 계획도 아까 행안부장관님께서서는 세우셨다고 하는데 청장직무대행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장관님께 보고를 또 국민께 발표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청 내에 경찰 외부위원을 중심으로 한 경찰개혁위원회가 지금 가동이 돼서 사건 암장을 방지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내부비리를 근절하는 방안,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하고 있고……

○김예지 위원 논의된 내용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현재 진행 중인데 그……

○김예지 위원 다 되면 알려 주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진행되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이어서 계속 질문을 하겠는데, 6월 부산에서 중증발달장애인 두 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 계산하지 않았다고 특수절도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아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김예지 위원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된 점 고려해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에 발달장애인전담경찰을 한 명에게는 아예 배당하지 않았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예지 위원 보고받았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김예지 위원 사실 발달장애인전담조사제도가 생기고 계속 늘었습니다, 인원이. 이게 조사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조사관이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김예지 위원 예를 들어 휴가를 갔다 아니면 갑자기 아파서 어디를 갔다 하더라도, 혹시 주변에 대체인력은 없었습니까? 그런 매뉴얼은 없습니까? 출장이나 연가 갈 수 있지요. 갑자기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백이 있다고 그냥 안 합니까? 여기는 이런 거 매뉴얼에 없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김예지 위원 매뉴얼 확인 좀 잘해 주세요, 아까 거랑 이거랑.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매뉴얼은 그냥 이렇게 보라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키라고 있는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런데 왜 안 지켰을까요?

이런 내용을 저희가 일일이 지적을 안 해도 잘 하셔야 저희가 신뢰를 하겠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예지 위원 부산 사건도 있었고, 사실 제가 세종시도 갔다 왔지만 시설에서 구타 당해 가지고 학대 당해 가지고 장애인 한 분이 거의 전치 12주였는데 조사가 초동수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분은 그대로 거기서 1년 동안 일을 하시고. 그런데 그 장애인 가족들과 또 활동가들이 계속계속 문제 제기하고 저도 다녀오고 그러면서 다시 재수사해서 그분 혐의가 지금 입건됐습니다.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김예지 위원 이게 한두 건도 아니에요. 이것 계속 이러실 겁니까?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다 더……

○**김예지 위원** 그런데 저희가 3년간 발달장애인 사건 가운데 전담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은 사건 수와 그 사유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통계라고 되게 무책임한 답변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청장직무대행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어도 될까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이런 것도 관리책임이 없다, 관리하지 않는 통계다…… 이것 관리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야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실 수 있겠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적극적으로……

○**김예지 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계획을 그냥 노력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면밀히 점검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어쨌든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저는 지적할 예정이니 염두에 두시고 제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윤호중 장관님께 이어서 질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 이미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출범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준비가 순서에 맞게 잘 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김예지 위원** 저는 청사 관련해서 좀 알아봤더니 청사를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쓰시게 됐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예지 위원** 서울시 중구의 빌딩을 서울청과 본청이 같이 사용하게 된다고 하지요,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김예지 위원** 31년 말까지 임차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다른 데로 이사하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마땅한 청사가 있으면……

○**김예지 위원** 중대범죄를 다루는 데가 이렇게 이사 막 다녀도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우선 단독건물이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는……

○**김예지 위원** 임차료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현재 국가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이 민간건물을 임차한 것입니다.

○**김예지 위원** 보통 보니까 임차료 한 달에 21억 5000, 임대료랑 9억 5200만 원 거기다가 10% 부가세까지 고려하면 매월 한 34억 정도 낼 텐데요. 이것을 계속 그렇게 내야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들 계산에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300억 가까이……

○**김예지 위원** 자료가 이렇게 와서 놀랐고, 하여튼 임차료만 매월 수백억 가까이 들 거

예요. 5개 지청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예지 위원 그리고 입주 두 달도 채 남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 계약 체결 안 된 지청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계약 체결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요.

○김예지 위원 예정은 당연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10월 2일인데. 그것 가능할까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가능합니다. 이미 다 절차만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본 청·서울청에 대한 과다 임차료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라든가 주변 시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임차료 수준을 책정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예지 위원 대전시도 세종시에 임시로 한다고 하는데 그 임시도 또 언젠가는 이사를 갈 것이고. 수원청도 마찬가지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또 임시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곳도 임시 이후에는 또 사무실 임대할 하거나 뭔가 마련해야 될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단독 건물이 아니라서 단독 건물을 쓸 수 있는 곳으로 옮길 예정이고요. 또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신축 예정입니다.

○김예지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이전비 그리고 또다시, 임시니까 다시 가면 계속해서 비용이 지출될 텐데 어쨌든 그거야 제가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원청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이나 이런 기술수사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굉장한 기밀을 요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사 막 다녀도 될까 좀 걱정이 되고요. 물론 알아서 잘하시겠지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수사 정보가 유출되거나 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리고 저희가 국감 때 이 점을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관련한 내용을 챙겨 봐야 될 텐데 자료도 잘 안 주고요. 장관님께서 특별히 어쨌든 국회에서는 이것을 검증할 당연한 권한과 의무가 있으니 자료 협조를 잘해 달라고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리고 김예지 위원님, 혹시…… 위원장님, 아까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오전에 김예지 위원님 질의 주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충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진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 주세요. 아까 강명구 간사님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모아서 같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중수청 자료와 관련한 부분은 아니고요. 김예지 위원님 질의 주셨던 것은 행안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못 맞추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신데요. 행

안부는 3.8%보다 높은 4.1%의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산하기관인 청사관리본부가 그 비율을 못 맞추고 있는데 청사관리본부에는 청경 인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정부 청사의 청경을 전부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청경의 업무 특성상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대안이라든가 청경 직렬에서 해결을 할 수 없다면 다른 직렬에서 해결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공무원 채우신 것은 아까 언급을 했어요, 그것 말고. 그러면 청경도 비공무원에 속하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공무원이라서요. 그러니까 일반직공무원은 비율을 맞췄는데요.

○김예지 위원 예, 맞습니다. 그 얘기는 했었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공무원이 청경 인력이 많기 때문에 행안부가 관리하는 공무원직에서는 그 비율을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실제로 모든 부처가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적합한 인력을 장애인에서는 충당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시거든요. 그것은 어느 부처나 하고 계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계 고용이나 그런 방식으로 채우고 있는 부처도 있습니다. 아마 국무회의 때 논의하시면 답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것이 청경이 아닌 다른 직렬의 공무직을 통해서라도 장애인 비율을 맞추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예지 위원 모색하시면 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서명옥 위원님 질의하고 오후 질의가 2시간 넘어서 잠시 정회 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시계 잠시 멈춰 주시고, 대행님 죄송하지만 이쪽으로.

대행님, 지금이 굉장히 경찰로서 중요한 시간인데 장윤기 사건의 파동이 가기도 전에 또 제주 사건이 터져 가지고 저도 굉장히 당혹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개인적인 일탈 플러스 시스템의 불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경장이라는 분이 문제가 많은 분입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상식 위원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가지고 징계 중에 있고. 그렇지만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적발해 내거나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대행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렇게 종결 처리

해도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시스템을 새로 고안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지금 KICS 같은 경우에 고소·고발·진정 같은 경우에는 상급자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상식 위원 그러면 112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거기가 국민들의 어떤 요구가 경찰로 총 모여지는 그런 지점인데요. 112 사건에 대해서는 접수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까, 접수처리 대장 같은 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다 전산화 처리가 됩니다.

○이상식 위원 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개인적인 일탈 문제에 대해서 교육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시스템을 다시 한번 더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께서 부산 절도 사건, 발달장애인들이 1500원짜리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특수절도로 입건해 송치를 했나요, 그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특수절도로 송치가 돼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이상식 위원 대행님, 제가 보기에 우리가 보완수사권 문제로 국민들이,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는 우려가 많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무슨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로 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 경찰관들이 수사 주체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이런 것은 책임지고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지역구에서도 작년인가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거기 전단지 붙어 있는 것 그것을—자기 마음에 좀 안 들었겠지요—뺏다고 해 가지고 재물손괴로 입건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옛날에 중앙경찰서의 직대로 있을 때는 철근 상습절도, 1만 원짜리, 1만 5000원짜리 이런 것을 여러 번 훔치면 상습절도가 되는데 그런 분이 또 교도소에서 나와 가지고 한 번만 더 훔쳐도 또 상습절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길래, 신청하려고 하길래 제가 그것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나중에 검찰이나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고.

지금 우리 경찰이 그동안 수사 지휘권이 있고 해 가지고 수사의 주체성을 발휘할 수 없었을 때는 책임지고 종결하거나 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경찰이 태세를 정비해 가지고 수사 주체로서의 각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런 점에 신경을 써 주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그런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공감받는 법 집행, 상식적인 법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막중해져 가지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중요해졌다 저는 이렇게 늘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것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동의합니다.

○이상식 위원 그래서 경찰에서도 여러 가지 자체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러 가지 지표가 개선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장 발부율이 높아지고 그러면 그게 기각이 낮아지는 거지요, 그런 것. 그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건수도 늘어나고,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창 사건이 늘어가지고 처리 기한이 막 늘어났는데 이것도 최근에 경찰 자구 노력을 해 가지고, 인력도 늘리고 해 가지고 정상화된 그런 부분이 있다 말이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나 저는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강력한 외부의 수사 통제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번에 행안부하고 합동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의 경찰 수사 인권·감찰 기구를 새로 발족한다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준비가 돼 가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 부분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과제가 국정과제로 되어 있고 그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면서 국가경찰위원회 안에 민간인 조사기구를 두도록 설계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제가 영국에서 경찰주재관으로 일했는데 영국 경찰이 굉장히 강력했던 기관이기 때문에, IOPC라는 강력한 외부 통제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핵심은 저는 두 가지라고 늘 말씀드려 왔는데 첫째는 외부성, 그러니까 경찰 내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인사들이 주도할 것.

두 번째는 여기의 기속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분들의 결정에. 그러니까 우리 경찰에 그런 기구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기구의 기속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행안부하고 경찰에서 이렇게 의논해서 만들 때 그런 점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대행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장관님, 경찰의 외부적 통제 방안 중에 저는 생각하는 게 경찰청장 직위 외부 개방형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것도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인데요. 지금까지는 경찰의 계급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경찰 계급 체계 안에 있지 않으면 경찰청장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상식 위원 예, 그런 면이 있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 것도 사실은 경찰이 뭐라 그럴까요 내부의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이제 커졌고 또 어떤 위원님께서도 이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된다 이런 논의, 발의를 해 주신 것도 있는데 이것하고 연결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국가수사본부장, 지금 중수청장 휘하에 수사 인력이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 국가수사본부장은 그 10배 이상이거든요.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한번 질문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여러 가지 함께 논의가 돼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장으로부터도 일상적인 지휘를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혹시 이런 시스템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어떤 분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무직 그러니까 차관급 이상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형식적인 논리고, 제가 보기에 실질적인 지휘가, 이렇게 책임과 권한이 막중한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대행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려 볼 것이 대행님, 수사경찰 지금 가령 수사과에 있는 경정·총경에 대해서도 인사권은 경찰청장이 행사하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상식 위원** 그런데 만약에 총경에서 경무관이나 그 이상의 직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방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가령 경정에서 총경이나 그 이하 계급 정도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 안에 있는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이번에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현재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수본 내의 경정급 인사라든지 그리고 지방의 수사 부서장은 국수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그래서 국수본부장이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만큼 그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옥 위원** 서울 강남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명옥 위원입니다.

지난달 7월 31일 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 하루 만에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님, 우리 대한민국의 수사권은 이제 오롯이 경찰에게만 주어진 독점 구조 형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수사기관은 이제 경찰과 중수청 그리고 공소청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서명옥 위원** 이번 제주 장 모 씨의 실종 사건을 보면요,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한 점이 사건 암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제주도 사건이 경찰들의 사건 암장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보완수사와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서명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고요, 나중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초동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단 3일 만에 본인이 스스로 사건을 삭제하고 허위 종결해 버렸거든요. 저는 이걸 사건 암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늘 오전에 장 모 씨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게 발견되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발견됐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 발견된 장소가 이 실종자의 숙소에서 불과 1km 떨어진, 도보로는 10분 거리에 있는 정말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13만 명의 경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명옥 위원 경찰을 총지휘·감독하는 부분은 행안부장관님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명옥 위원 제주도의 30대 장 모 씨 여성분, 정말 경찰에 신고하고 남자친구, 가족이 두 번, 세 번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103일이 지나 가지고 안타깝게도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안전부장관님께서 고인의 정말 불행한 결말과 그리고 정말 비탄에 빠진 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자리에서 장관님의 위로의 한말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경찰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가장 일선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될 공직자들입니다. 공직자로서 경찰관이……

○서명옥 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보호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을 잃게 됐고 또 그 결과 많은 비탄에 빠져 계실 그 가족분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말……

○서명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추후 다시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명옥 위원 직무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서명옥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 처음 업무보고할 때 경찰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씀 듣고요 정말 공허한 메아리로 들렸습니다. 시중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경찰에 대해서 민중의 지팡이라고 정말 의지하고 믿어 왔습니다. 요즘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경찰은 민중의 곰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그거 듣기 불쾌합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될 경찰 13만 조직이 민중의 곰팡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런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서명옥 위원 저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의 경찰들은 대한민국의 경찰을……

○서명옥 위원 대행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답변은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서명옥 위원 그래서 보면 이 사건의 담당 경찰관이 실종 프로필을 본인이 임의로 허위 삭제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보완책으로 내놓은 게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이중장치를 둔다 했는데 그러면 그 관리자가, 담당자가 ‘내가 실종자에 대해서 통화기록 다 확인하고 CCTV 확인했습니다’ 하고 구두보고하면 그 관리자는 누구를 믿어야 되지요? 관리자도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중장치로 저는 이 문제 걸러지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관리자는 반드시 실종자의 여러 가지 통화했던 기록을 직접 확인한다든지 CCTV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중장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서명옥 위원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강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관리자한테 책임을 떠넘긴다고 허술한 초동수사가 없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관리자도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관리자가 믿고 오케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CCTV라든지 통화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자료를 충분히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이 일인당 사건이 정말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일선에서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력의 문제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경찰에서는 사건문의 금지제도라든지 상피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제도 만들어진다고…… 그리고 이런 제도가 기껏한다는 게요 내부지침이라든지 행동강령에 명시한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가볍게 명시하면 경찰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은 권한이 따르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요, 순환인사제, 상피제, 사건문의 금지제도……

저는 사건문의 금지제도가 없었다는 걸 이번에 알고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경찰조직 정말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건 종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던 제도입니다.

○서명옥 위원 아니, 이게 내부지침으로 돼 있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서명옥 위원 지침은 아니지요. 지침을 어겼을 때는 기껏해야 인사규정의 징계받는 것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 소홀히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저는 이 내부 규정, 매뉴얼을 할 게 아니라요 좀 더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있는 만큼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강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말 신뢰받는 경찰, 우리 국민들의 염려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사권을 독점하는 지금부터는요 경찰 수사의 여러 가지 전문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또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 장윤기 사태, 제주 실종 사태, 정말 지금 국민들은 불안감이 너무너무 높아요. 과연 이제는 각자도생 이렇게 되지 않나, 지금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법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정말 내 가족을 지킨다는 심정으로 해 주시고 그런 내부적인 규정과 지침, 매뉴얼은 저는 입법화하고 법률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보완수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항들이 이번 형사소송법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경찰의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이행의무가 부과가 됐고요. 이행기간도 1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이걸 상급관서에서 수사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경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중수청에 보내서 중수청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그리고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 징계에 대한 그런 요구도 가능하도록 돼 있고 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건관계인의 권익도 많이 보장된 면이 있습니다. 고소인 등에게는 이의제기권이 신설이 됐고 그리고 기록 열람·등사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검사에게 고소인 등이 면담신청권을 할 수 있도록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부여가 됐고요. 그리고……

○서명옥 위원 대행님,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아니, 제가 조금……

○서명옥 위원 아니, 더 이상 말씀 안 해 주셔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렇게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실종사건조차 기본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 본연의 기본 업무를 잘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지금 현재 경찰 수사에 대한 개혁방안을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장관님 주재로 해서 대국민 발표도 해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건 압장을 방지하는 방안 그리고 내부 비리를 근절하는 방안……

○위원장 김영진 경찰청장대행님, 내용 아까 다 보고된 사안이니까요 추가질의 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저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장관님, 2004년도 전공노 총파업 및 공무원노조 대응 관련된 자료 요구인데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때 파업한 공무원들 136명 해직되고 약 4000명 징계했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한 진상 조사와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 아마 알고 계실 건데 이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1월 6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행정자치부지요. 그때 행자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총파업 관련 징계업무 처리 지침이라는 것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원문하고요. 그와 관련된 징계업무 추가 처리 지침을 11월 9일, 11월 10일, 11월 11일 세 차례에 걸쳐서 내렸다는 게 있어요. 그 추가 처리 지침, 뒤에 담당 국장님 기억하셔서……

그다음에 11월 10일 날 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 지시라는 게 내려간 게 있고요. 11월 4일 날 법무부장관, 당시 행자부장관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담화문 원문하고요. 이 담화문이 만들어지기까지 관계 장관·차관, 실무회의 관련 자료 그리고 당시 2004년도 총파업 관련해서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 4000여 명에 달하는 지자체별 공무원 징계 현황 이렇게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임호선 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시작하십시오.

○임호선 위원 자료 요구도 시간 계산합니까?

○위원장 김영진 뻘겁니다.

○임호선 위원 안 뻘는데……

○위원장 김영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시간으로 했습니다.

○임호선 위원 진화위원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 관련해서 진화위에서 진상 조사나 명예 회복, 이 건에 대해서 전혀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송상교 진실 규명된 사안에……

○임호선 위원 아니아니요, 2004년도 공무원 총과업 그리고 2009년도에 ‘노조 아님’ 통보가 노동부에서 나가요. 그래서 이분들이 법내노조로 인정되는 2018년까지의 기간이 지금 전혀, 보상에서 다 빠져 있거든요. 전교조하교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관련 법을 찾아보니까 진화위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한번 관심 가져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송상고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장관님, 지금 농촌에서 가장 관심 되는, 우리 국정과제 추진하는 거에 두 가지가 뭔지 아실 겁니다. 하나는 농촌기본소득이예요. 또 하나가 햇빛소득마을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제가 금년도 목표를 보니까 당초 500개에서 700개 정도로 임기 중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추정하면서 700개로 늘렸습니다.

○임호선 위원 2030년까지 3000개 정도의 마을을 햇빛소득마을로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인데 얼마 전에 단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설명을 들어 보니까 금년에 한 10개 정도, 지금 1차 공모 선정된 86개 마을 중에서 금년 내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게 한 10개 정도로 이렇게 말씀이 계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연내에 완공이 가능한 말씀이신가요?

○임호선 위원 예, 그러면 금년에 700개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모해 가지고 선정하는 것을 말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선정하고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가지적 성과를 빨리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설치하는 기간도 필요……

○임호선 위원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당시 제가 단장님하고 같이 스피커폰으로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마을 관계자시겠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임호선 위원 두 번째가 지금 이 사업을 가장 역점적으로 들여다보고 하고 있는 분들이 사업자들이예요. 아마 아실 겁니다. 레스코(ReSCO)하고 VPP에 대해서 개념 설명은 좀 그렇고요. 이게 가상발전소 사업자들인데 이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뛰고 있어요.

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무래도 태양광 패널……

○임호선 위원 그렇지요. 사업권이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납품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계통을 제공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에너지공단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부정행위 신고 안내문을 4월 달에 냈어요. 왜냐하면 벌써 이런 게 다 예상되고 있고 현장에서, 그런데 두 건밖에 접수는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2건이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되게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 현장에서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계통 문제라든지 이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에너지 관련 기업이에요. 그분들이 임대…… 85% 정부 용자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임호선 위원** 이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금 알선부터 시작해서 휘둘리시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현장에서 이와 관련된,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는 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사실 현장에 계신 분들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적인 기업의 도움이 없더라도 이 사업을 충분히 금융 지원을 받아서 또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으니까……

○**임호선 위원** 그래서 제안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 통합관리 플랫폼이 없어요. 이거 통합관리 플랫폼은 단순히 통합 네트워크 구축보다는 조금 더 한참, 한 단계 높은 걸 제가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궁금해하시면 그리고 실제 접촉하는 데서 제안하는 이런 내용들이 검증될 수 있고 또 경쟁 체계를 갖춰서 그분들이 독점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추진 과정에서도 문제 되지만 나중에 사후에도 크게 문제 될 수 있다. 이게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1MW에 13억, 비교적 평균적으로 잡아서, 85% 정책 용자 나가는 게 11억 500이고요. 그다음에 15%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자체 조달하는 게 약 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자금 조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될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당연합니다.

○**임호선 위원**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봐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사후에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막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저는 이것을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쥐고 갔으면 좋겠다, 공단에 맡기지 말고.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임호선 위원** 장관님,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인구소멸시대에 다행스럽게도 저희 대소면이 대소읍으로 승격됐지 않습니까? 승격시켜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제가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인구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게 기관, 읍 승격할 때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시키는 걸로 내규를 다 바꿔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임호선 위원** 그래 가지고 내국인 2만 924명에서 외국인 6340명을 포함해서 우리 대소면이 2만 7000명의 인구 요건을 갖춰서 읍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국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반조정교부금 아시지 않습니까? 도비지 않습니까? 지방 재원으로 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는 등록 외국인이 포함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에 군 단위치

고는 외국인인, 이게 단순히 지역 민원이 아닙니다. 음성군에만 등록 외국인이 1만 8000명이예요. 그런데 여기 외국인 지원센터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 화합 행사 예산을 제가 나눠 보니까 5억 600만 원이 들어가고요. 5억 중에 도비 1000만 원만 있어요. 국비 지원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충북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만 바꿔 주면 되는 사안인데 한 5000억 정도가 거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등록 외국인을 포함 안 시켜 주니까 이것을 군비에서 5억 원씩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방재정교부금 배분 기준만 바꿔 주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한 8억 정도 이렇게 재원이 마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시행령만 바꿔 주시면 되니까…… 인구 산정에서는 외국인으로 행정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바꾼다라고 하는, 거기다 목적을 써 놓으셨잖아요, 똑같은 목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소요액을 추정하고 부족분이 얼마 정도가 있는가를 산정해서 그것을 조정교부금으로 일정 비율을 채워 주는 이런 제도지 않습니까?

○**임호선 위원** 지방 재원이 아니라 도비거든요. 도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각 시군에 대해서 필요 예산이 얼마인데 부족분이 얼마나 이것을 이렇게 추정을 해서 거기에 채워 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 예산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방법이 있는지……

○**임호선 위원** 장관님, 그 부분은 조금, 뒤에 담당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부족분이 아니고요 인구가 50%예요. 5000억에서, 인구는 50%로 잡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러니까 그게 필요 예산을 산정할 때 인구 50%를 넣고 예산액을 산정합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세수가 얼마 들어오는지, 지방세. 그 사이에 갭이 있으니까 그것을 메워 주는 제도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것을 좀 바꿔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윤호중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검찰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사실 여전히 정부에서 그리고 국회가 책임지고 완수해 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검찰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검찰개혁의 과제가 어떤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라는 다른 이유로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넘겨 주시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 알권리와 이의신청권 강화가 처리가 되었는데요. 여전히 아쉬움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은 불송치 이후에 이의신청의 목적으로만 보장이 되고 심지어는 경찰이 수사 상황을 이유로 불허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장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동탄 교제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피해자가 600장이 넘는 관련 사건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고 감감무소식인 소식을 기다리다가 가해자에 의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성 대상 혹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제가 행안위에서 수차례 이야기했던 것이기는 한데 이런 친밀관계 폭력의 범죄 양상이 매년 비슷합니다. 위험은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그 위험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수사 상황은 공유되지 않고 결국에 피해자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가 가해자에 의해서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지도 사실 피해자는 잘 알 수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수사가 끝난 뒤에야 조건부 열람 등사를 허용하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것 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피해자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핵심 증거가 제대로 확보가 되어서 부실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고 가해자가 재판까지 받게 되었는데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그 사건 과정에 대해서 어떤 고지도 받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재판에 가서 피해자로서 증언을 하려고 하니깐 도대체 내가 이 재판의 쟁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진술해야 나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고 이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를 강화해 주실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현행의 경찰수사규칙이 기간만 정해두고 형식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통지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수사 개시일 이후에 3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는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도 어렵고 신변을 보호할 수도 없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피해자가 부실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처럼 여당에서 전건송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7대 사회적 약자 범죄는 하나같이 다 보복범죄 우려가 굉장히 가장 큰 사안들이고 여기 이 최소한 7대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피의자의 조사 현황과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현황 그리고 핵심 증거 확보 여부 이것을 피해자들에게 상시적으로 통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에서도 수사의 밀행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와 지금의 현황들, 처분의 취지 이런 것들을 알려 줄 것을 권고하기도 했었는데요. 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과 처분의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문제 제기도 하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공감하시

고 추진을 하실 의지를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수사로부터 시작되는 사법절차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국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할 점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달라라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특히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 양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2021년 국가인권위 진정 대상이 됐었던 경찰의 불송치 수사결정통지서 내용인데요.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의자 주장에 부합한다,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

이것이 고소인이 불송치 이유를 파악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보십니까, 장관님?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유를 충분히 알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옹혜인 위원** 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처럼 부실한 수사결과 통지서가 고소인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라고 두 번이나 국가인권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2021년에 한 번, 2022년에 한 번. 헌법 21조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행위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현장에서는 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송치 수사결정통지서를 마주하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과 함께 이런 양식도 좀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검찰에 보내는 불송치결정서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정보들인데 그 정보 정도는 피해자에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와 어떤 증언을 채택했는지, 고소인의 진술을 기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적용을 검토한 죄명과 법리 판단이 무엇인지 수사결과 통지서에 이 정도 내용은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통지 의무 강화부터 양식 보장까지 저는 10월 2일 이전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빠르게 그런 개선들을 처리하겠다는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장관님의 오늘 약속이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우려에 대해서 불식할 수 있는 중요한 답변이자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유재성 직무대행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수사결과 통지서가 왜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되냐를 생각해 보면 누구도 감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 수심위가 불송치 이유 통지서를 심의하고 적정성을 판단해야 되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견들과 주장들 그리고 제안들이 있는데 경찰청이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정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 가지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의 제안이 있기도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절박하게 제안해 왔었던, 요구해 왔었던 내용들이고 장관님과 청장대행님께서 의지만 가지신다면 사실 올해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이전에 반드시 검토하겠다는, 추진하겠다는 대행님께서도 오늘 한번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질의에 앞서서 유재성 직무대행, 제가 안 보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저쪽으로……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윤호중 장관님, 지난주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가 됐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정현 위원 장관님께서도 국회의원 하실 때, 지금도 국회의원이지만 굉장히 노력을 같이하셨던 건데 통과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닙니다.

○박정현 위원 이로써 소위 공동체 3법이라고 얘기하는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사회경제기본법은 통과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법이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유재성 청장님, 청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셔서 금상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뭐가 잘못됐는지 은상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시겠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청장님께서 찾아봤습니다. 내가 금상 감인데 왜 은상을 받았는지 찾아봤더니 이게 성적을 잘못 매겨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 금상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미 상이 나갔기 때문에 못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억울하시겠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억울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금 대전에서 벌어졌어요. 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보고받았습니다.

○박정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 2월에 명예퇴직한 윤 모 경정인데요 녹조근정훈장을 받아야 되는데 근정포장을 받았어요. 이것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본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 실무자가 근무경력을 누락해서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바로잡아야 되겠지요?

-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 박정현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지금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정현 위원 관계부처가 행안부지요?
-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 박정현 위원 행안부가 지금 열심히 같이 협조를 잘하고 있나요?
-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정현 위원 장관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지요?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것은 저희가 그냥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청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박정현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3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역의 민원인과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복무하신 분인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에서 해서 바로 저한테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 박정현 위원 유재성 차장님, 지금 경무관 경찰서가 전국에 20개가 있어요. 그중에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11개가 수도권에 있지요?
-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 박정현 위원 물론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있기 때문에 치안 수요가 그만큼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이라고 치안 수요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무관 서장제 도입 기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 박정현 위원 이 기준에 보니까 특별시·광역시 소재 관할 인구 40만 이상 지자체 중 총 범죄 발생 건수 1만 건 이상인 데를 경무관 서장제를 도입한다는 건데 실제 대전은 유성경찰서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범죄 총 발생 건수가 1만 건이 넘거든요.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안 되고 있는 데가 대전하고 울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지요?
-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이 부분도 하여튼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박정현 위원 협의만 자꾸 하시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40만이라는데 대전은 기초지자체 40만이 넘는 데가 없고요. 지금 PPT에 보시는 것처럼 해운대경찰서, 광산경찰서 보면, 이미 지정이 된 데를 보면 40만이 채 안 돼요, 유성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경무관 경찰서라는 게 치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 빨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하여튼 저희 의지를 가지고……

○박정현 위원 지금 제주도도 없어요. 이번에 제주도에서도 사건이 났는데 제주도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행안부에서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저희가 관계부처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40만이다, 1만 건이다 이런 기준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경무관서를 20개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와 사건 수로 위에서부터 이십 곳까지가 경무관서로 전환이 된 거고 앞으로는 이런 수요에 맞춰서 좀 더 늘려 나갈 계획이니깐요. 그렇다고 무작정 기준을 정해 놓고 그 이상 모두 경무관서로 지정할 수는 없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작년에 20개 규정이 바뀌어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작년에 기준을 20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박정현 위원 올해 운영을 한 거고 그러면 평가를 하셔서 가지고 내년에는 몇 개를 더 늘릴 건지를 확인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울산이나 대전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치안 수요를 평가해서 필요하다면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필요합니다, 장관님. 회피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회피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박정현 위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에 원자력연구원이 있습니다. 발전소가 없어요. 연구원이에요. 그런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을 교부받지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복리에도 쓰고 있는데 지금 방사성폐기물 관련해서 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원자력연구원 주변에 주거단지가 있고 대단히 상시적으로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 세금을 부과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킬로와트시당 1원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폐기물이 무슨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느 기준으로 주민들에 대한 지원예산 규모 또는 세금으로 해결을 한다면 세금의 부과 기준을 잡아야 될지 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논의를 충분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역자원시설세의 대상이 공간이기도 하고 자원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

라서 충분히 답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연말에 지방세법 처리할 때 비발전용 폐기물에 한해서 이것을 부과하는 방식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전문가들과 한번……

○박정현 위원 논의를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논의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윤호중 장관님, 중수청 관련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국회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관련이 있어서 제출을 안 하시는, 우려 말씀하셨는데요. 국회가 자료 요청을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검사의 이름을 요구하는 부분도 아닌데, 국회가 현 정부조직을 대개편하는 데 있어서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정당하게 자료 요청을 하신 거고요. 다만 지금 중수청으로의 인력을 이체받는 과정에 다소 혼란이 초래될까 봐 우려가 돼서 자료제출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종오 위원 수치를 말씀드리는 거지 개인정보는 아니니까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요, 왜냐하면……

○진종오 위원 검사 몇 명이라든지 아니면 수사관 몇 명이라든지,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직급에 따라서……

○진종오 위원 직급을 충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공개를 할 경우에 직급에 따라서 미달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초과된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진종오 위원 제출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하고 논의를 해 봤습니다만 직급의 통계를 제출했을 경우 그 통계를 보고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신청자들의 판단……

○진종오 위원 장관님, 답변을 흐리지 말아 주시고요.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만 여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

○진종오 위원 국회가 점검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러나 사후에는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진종오 위원 자료제출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게요.

8월 5일 날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청 출범 이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검사 수사권 관련해서 법무부랑 행안부랑 이견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께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건 이견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종오 위원** 말씀 좀 드릴게요. 들어 보세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형소법을 안 읽어 봤다고 하였고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되냐는 약간 책임 없는 질문을 하셨어요. 거기서 법무부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면 위법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고 장관 또한 합수본 운영 근거가 사실상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검경 합수본도 형사소송법에 대한 명확한 설치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또 공소청·중수청·경찰청 합동수사본부 이른바 공중경 합수본 형태를 제시하신 것 맞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리고 검사가 직접수사 권한은 없더라도 합수본에서 수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장관님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검사가 수사 방향에 의견을 제시하고 수사기관이 그대로 따른다면 이것은 의견제시입니까 아니면 수사지휘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우선 답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검사는 수사가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그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장관들에게 답변을 요구한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소청법 4조 3항에 ‘검사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의견제시입니까, 수사지휘입니까 이것을 여쭙보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의견제시입니다.

○**진종오 위원** 의견제시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진종오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검사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다음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요.

○**진종오 위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지요, 요구.

○**진종오 위원**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된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진종오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검사가 A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견을 내고 중수청이 그 부분을 실행하면 이것은 의견제시예요 아니면 수사지휘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의견제시입니다.

○**진종오 위원** 의견제시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수사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의견제시인 거지요. 그렇다면 의견제시가 몇 번까지는 의견제

시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계속 이게 반복된다면 그게 수사지휘가 되는 겁니까, 의견제시로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의견제시는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종오 위원**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러니까 지휘가 아닌 거지요.

○**진종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사관이 수사를, 중수청에서 의견을 거부했어요. 거부한 다음에 법원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부실 수사 관련해서 그 부분은 어느 부서가 책임 집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법원의 판정이 어떻게 났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진종오 위원** 부실 부사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둘 중에 한 명이……

○**진종오 위원** 둘 중에 한 명이 책임진다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한 명에게 책임이 있지요.

○**진종오 위원** 책임이 있다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진종오 위원** 행안부 책임은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진종오 위원** 행안부 책임은 아니고요? 행안부가 모든 것을 관리·감독하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수사를 모두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모두 관리·감독하는 건 아니지만 책임은 행안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개별사건에 대해서요?

○**진종오 위원**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개별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한 수사관과 그리고 기소를 결정한 검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수청에서 수사가 약간 불리하게 진행되거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공개할 의향은 있습니까, 법원에서 불리하게 판결됐을 경우 아니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건 이미 공개재판에서 거론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진종오 위원** 그러면 제가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특별한 공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종오 위원** 장관님, 잠시만요. 저도 솔직히 잘 몰라서 공부 좀 하고 왔는데 제가 제안 좀 살짝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진종오 위원** 행안부에서요 수사 단계별 법정 처리 기간이라든지 표준 처리 기간 도입이라든지 3개월에서 6개월 기간 장기 사건에 대한 자동 점검 그리고 통합 처리 기간 공개, 경찰서별 장기 미제 사건 공개 또는 범죄피해자 사건 처리 지연 사유, 향후 계획 의무 통지 또는 수사기관별 사건 이관에 대한 방지 장치 등을 약간 제안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보완수사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대행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개월 안에 보완수사 결과를 회보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으니까요.

○**진종오 위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것에 더해서 부실 수사 또는 장기 미제 사건의 경우에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종오 위원** 제가 제안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방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검토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진종오 위원** 그러면 저는 듣고 싶은 답이 이게 중수청의 투명성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중수청이든 경찰이든.

○**진종오 위원** 이 제안의 수치를 국회에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수치에 대해서 당연히 국정감사 때 보고가 다 되고 있고요, 자료로써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아니요, 제가 제안드린 부분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정기적으로 보고를 원하시면 그건 법률에 정해 주셔야 됩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면 장관님께서 이게 완전체라고 보십니까, 중수청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완결적인 제도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때에서 현재 한 단계 발전한 체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중수청이 출범되게 된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면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공감이 가시도록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종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제안에 관련해서 행안부가 좀 더 투명하게 수치를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우선 내부통제장치 그다음에 외부통제장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입법부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얼마든지 감시하고 들여다보실 수 있는 그런 장치는 항상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종오 위원** 장관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수사 공백이라든지 혼선에 대해서는 대책까지 본 의원실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유재성 대행님, 이쪽으로 좀 와 주시겠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강동울의 이해식입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도 내용을 죽 소개를 해 주셨는데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논의의 필요성 이게 점차 높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사건들을 봐서도 그렇고.

아까 이상식 위원님께서 일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대행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그 방안이 뭐라고 보세요? 중요하게 굵직굵직한 것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지금 국정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해서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통제하는 방안이 가장 크게 할 수 있고요.

○이해식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감사나 감찰을 내부규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제화해서 무게를 싣는 거 또 외부 독립적으로 실시를 한다든지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 강화한다든지 또는 인권보호관을 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구조적으로는 경찰력 자체를 분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자치경찰제를 명실상부한 이원화 제도로 실시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이해식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준비하고 있고……

○이해식 위원 준비하고 있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범정부협의체가 출범이 됐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

○이해식 위원 차제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이것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이번에 장운기 사건도 그렇고 또 장미란 씨 사건도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경찰 관서, 담당경찰서, 예를 들면 광산서라든가 제주서부서, 조금 더 확대하면 제주경찰청 아니면 광주경찰청의 책임이고 그 지역사회, 광주광역시나—이제는 통합됐으니까 전남광주 특별시—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이런 도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경찰이 완전히 중앙집권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 하나가, 그것이 개인의 일탈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는 이 사건 하나가 온통 전국적인 뉴스가 되고 정권에 부담이 되고 이렇게 되는 현상 이걸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해야 되는가? 옳지 않다 말이지요.

그래서 경찰은 이미 경찰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인 정부 때 국가사무

와 자치사무를 나눴습니다. 신분은 국가경찰로 하지만 사무는 자치경찰사무, 국가경찰사무를 나눠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전북특별자치도나 아니면 광주·전남이 통합이 됐으니까 하나를 선택해서 치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 지역 치안은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지지부진하고 되는 게 없어서 너무 답답한데 장관님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매우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광주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좀 더 뼈아픈 것은 제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는 다른 지역보다 자치경찰의 권한이 더 보장이 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과 그다음에 범죄 수사, 소위 말해서 치안 유지 또는 민생 범죄와 같은 것하고 그다음에 형사 사건 수사에 대한, 그러니까 이원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수본 체제의 지휘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치경찰의 지휘권과 국수본의 지휘권이 매우 좀 뭐랄까, 아귀가 제대로 잘 맞아서 돌아가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이해식 위원** 그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검찰 개혁 그리고 특히 최근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 국민들의 불안, 과연 경찰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불안이 아주 큰데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물론 그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지만 사실 좀 구조적으로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는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그리고 또 치안 역량을 유지하고 확충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총 자산을 총동원해서 같이 협력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로 가고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오랜 기간의 군사 독재 정권, 그 이후에 민주화가 됐지만 그 이후의 과정에도 사실은 선진국다운 그런 체제를 정비하지 못한 후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보고 조금 더 선진적인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걸 너, 나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검찰 개혁과 그리고 특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런 것들을 달성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장관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경찰제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써서 그야말로 좋은 모델을 시범실시를 통해서 만들고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우리가 전통적으로 경찰권, 아주 비대한 경찰권을 견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조금 실효성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보다 더 과감한 자치경찰제의 시험무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명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위원 경북 구미시를 출신의 강명구 위원입니다.

유재성 직무대행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미란 씨의 실종 사건 담당관이 긴급체포되었다가 조금 전에 체포적부심 인용해서 석방됐다고 하는데 맞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부 경장의 경우는 소재 파악이 정확하기 때문에 굳이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유가?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소재가 확인이 되고 그래서…… 체포영장을 통해서 체포할 수 있는데 긴급하게 체포했다는, 긴급성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강명구 위원 직무대행님,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참 뭐라 그럴까요, 298건…… 부 경장이라는 분이 실종팀에서 근무하면서 1년 동안 종결시킨 건수가 이 정도라고 하는데 허위 종결 처리된 사건이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아요,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요.

국민들은 우려를 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사람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실종 종결을 한다는 게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경찰들께서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직결된 이 사건을 두고 허위 보고하고 사건 기록 조작하고…… 대국민을 향해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무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부 경장이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국의 다른 그런 사건들까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건 처리 과정의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유족들에게도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유족분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명구 위원 이게 비단 제주경찰청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올 3월 달에 남양주 스토킹 사건도 있었고요. 이 담당 경찰관이 필요한 안전점검을 하지도 않고 조치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고요. 그리고 또 피해자가 사망하니까 관련 기록을 입력하는 정황까지 드러났어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체가 신고·발견 이력과 조치 내용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담당 수사관 개인만의 판단으로 삭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찰청 사건관리 문제가 저는 심각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전수조사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강명구 위원 전수조사 철저히 하셔서 가지고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직무대행님, 더 큰 문제는요 이게 허위보고가 된 게요 경찰 스스로가 허위사실을 찾아낸 게 아니에요. 모두 가족들이 다시 신고하면서 찾아졌거든요. 남양주 사건 역시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야 허위기록 정황이 확인됐고요. 허위로 기록하고 사건을

종결하고 관련 자료까지 사라졌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런 걸러 내는 조치가 없어요. 이 정도면 경찰 내부통제 자체에 심각한 구멍이 있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남양주 사건도 경찰이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관련된 담당자부터 지휘라인까지 엄정하게 감찰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강명구 위원** 직무대행님, 이렇게 경찰의 신뢰가 무너졌는데 이런 경찰에 수사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대부분의 경찰들은 자기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명구 위원** 이런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괜찮은 것 맞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제주 사건과 보완수사권과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명구 위원** 고의든 실수든 어쨌든 일단 경찰이 사건을 덮으면 누가 다시 확인하고 바로잡습니까. 그래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내부통제, 외부건제도 그에 맞게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경찰이 만들고 있는 안이 실효성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더군다나 제주도 실종 사건 같은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 주시고 내부통제 방안을 더욱 확실히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위원장님한테 항의해야 되는데 아까 결산 질의 직전에 중수청 인력 확보 관련 세부 현황자료 업무보고 때까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위원장님, 이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강명구 위원** 아마 자료제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아니면 야당의 간사가,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도 상세히 부탁을 드렸고 했는데 야당 간사가 요구한 자료 요구 가타부타 말도 없고요. 이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한번 해 보시지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아무 얘기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우리 부에서 의원실로 충분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설명을 누구한테 했지요? 장관님, 누구한테 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보좌관에게 아마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보좌관들 얘기 들은 바가 없고 자료제출 받은 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자료제출을 못 했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러면 못 하면 무슨 이유 때문에 못 한다 얘기를 하셔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데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전달받은 게 없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요 이렇습니다, 장관님. 중수청의 기본이 뭐니까? 수사 능력이잖아요. 수사 능력이 되는 수사관, 담당관들이 얼마나 왔고 전체 정원의 몇 퍼센트가 되고 또 그중에 수사실무를 했던 검사들은 몇 퍼센트가 지원을 했고 지원율이 저조하다 그러니까 당장에 중수청이 정말로 개청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데인지 없는 데인지 국회가 검증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것은 인사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검증을 해 주셔도 됩니

다.

○강명구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내 달라는 거예요. 대충이라도 보내 주셔야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끝나고 나야 자료를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인사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강명구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 안 할 거면 못 한다, 이유가 뭐다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인사위원회가 여기서 열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명구 위원 그것 설명도 없이 야당 간사한테 그냥 참고 기다리라고 얘기하면 그게 얘기가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사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강명구 위원 장관님……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부처에서, 기관이 요청한 자료 관련해서 여부를 얘기하고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담당 실무자가 보좌관이나 의원님께 정확하게 설명하는 절차를 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김영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우리 진실·화해위원장님,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7월 달에 출범했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송상고 2월 26일 출범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2월 달입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송상고 예.

○김영배 위원 그런데 진화위에서, 혹시 건국대 사건 아시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송상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2기 진화위 때 80명에 대해서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진실규명 작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송상고 당시에 신청하신 분들이 더 있었는데 저희가 진실 규명했던 분들은 그중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3기 위원회에 새로 지금 신청들이 또 접수되고 있고요. 3기 위원회에서……

○김영배 위원 3기에서는 371명이 지금 신청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송상고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거기다가 보니까 얼마 전에 고법에다가 재심신청을 해 가지고 그중에 한 명이 재심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앞에 진화위에서 판결한 것, 결정문을 대충 보면 이게 전두환 정권에서 1986년도 10월 28일 날 집회가 있는 것을 사전에 정권이 인지를 했고 안기부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관여를 해서 학생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토끼몰이식으로 몰아 가지고 가두고 그러면서 나중에 집단으로 구속을 시켰다. 그게 안기부부터 시작해서 보면 검찰, 경찰 이렇게 죽 이어지는 경로에 따라서 이걸 용공혁명분자인가요, 그렇게 규정하기도

하고 전원 구속 수사하라 이렇게 지침도 내렸다고 하고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이것을 집시법 말고 다른 폭력 관련된 법으로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까지 진화위에서 확인했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송상고 예, 조사보고서에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은 숫자만 조사를 했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송상고 그러니까 당시에 구속된 분들, 그러니까 신청인 중에서는 구속되었고 구속 이후에 수사가 계속 진행이 돼서 처벌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구속된 분들의 경우에는 불법구금이라는 사실을 기록과 저희 조사를 통해 가지고 명확히 확인이 되었고 그 외의 분들은 일부 저희가 자료 확보라든가 개개인의 인권 침해 부분에서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3기 위원회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구조적인 조사와 함께 새로 신청된 분들에 대해서도 전반의, 이걸 중대한 국가폭력, 인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 사건이요 단일사건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단일사건 구속자를 낸 것 아시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송상고 예.

○김영배 위원 그리고 그 뒤로도 이 사건이 그때 공산혁명분자의 난동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규정을 했었잖아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송상고 예.

○김영배 위원 그게 지금도 바로잡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국가가 국가폭력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죄한 적이 없었고 안기부장 그리고 검찰, 경찰, 그 누구의 책임에 대해서도 물은 적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진화위법에 보면 25조 3항에 위원회 의결로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송상고 예.

○김영배 위원 이것 직권조사할 때 된 것 아닌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송상고 저희가 2기 위원회 평가를 하면서 신청주의가 원칙이다 보니까 사각지대, 한계가 많았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건국대 사건도 실제 피해자 중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극히 일부였어요. 그래서 3기 위원회 조사할 때는 이런 중요한, 단체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김영배 위원 사실 공산혁명분자라고 낙인이 찍혀 가지고 사회생활에 취직할 때도 그렇고 살아오면서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를 겪었겠습니까? 그분들이 적극 나서기가 어려웠던 이런 점이 있는데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도 그때 구속됐었던 대상자고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현재 저 혼자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동안 사실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 게 죄송해서라도 끝까지 챙기려고 합니다. 억울한 것은 풀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송상고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앞으로 이 점은 계속 챙겨 가면서 함께 논의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송상고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행안부장관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지정 관련해서 전담기관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걸 민간기관으로 하든가 아니면 출연하든가 해서 사회적금융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어떤 경우도 가능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 지금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걸로 알아서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이견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요. 협의를 해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김영배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향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진**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장관님께 감사인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대덕구의 숙원사업인 대덕세무서 개설과 관련해서 어쨌든 지난 8월에 행안부 정기직제 심의가 통과되면서 물꼬를 열었고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 바로 신설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역의 굉장히 큰 숙원사업이었는데 어쨌든 물꼬를 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선 9기 들어서 지자체 공간을 열어 보니까 텅 빈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교부세가 거의 급감하지 않았습니까? 연 한 4000억 원 정도씩 매년 감소를 했는데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재정운동을 했다고보다는 불필요한 확장재정을 운영해서 실제로 민선 9기 지자체장들한테 굉장히 크게 위협요소이기도 하고 부담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보고받으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부담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채무가 많이 늘어서 채무 부담이 커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수가 감소하면서 교부세의 감액조정을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 제도로 그대로 가면 충분히 예산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대전광역시장 인수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재정을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는데 대전이 보니까 채무 말씀하셨는데 민선 7기 대비해서 채무가 51.3%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간 문을 딱 열어 보니까 하반기에 필요한 재원이 5000억 이상이 필요한 거

예요. 그런데 돈은 지금 없어서, 그래서 지금 대전시에서는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실제로 새로 시장이 취임되면 뭔가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지역화폐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정현 위원 지역화폐도 발행할 수가 없어서 지금 두 달간 스톱한 상태거든요. 9월 추석 전에 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대전만 심각한 게 아니고 PPT 보시는 것처럼 부산은 현금 예산이 86억 원에 불과하답니다. 충남은 채무가 2조 원 이상이 됐고요. 충북도 지방채가 지금 1조 원 이상을 발행한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민선 8기, 특히 광역지자체장들이 굉장히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방만한 재정운동을 견제할 수 있는 뭔가 조치가 필요한데 이게 조치가 잘못되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오히려 옥죄게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난 정부 때 세수가 감소하면서 그 부담을 지방으로 그냥 떠넘겼습니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재정사정이 매우 안 좋아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 봐야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또 정부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방재정이 안정돼야지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지방주도성장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정현 위원 저는 재정분권이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매년 행안부에서 지방재정전략회의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보니까 2024년 연말 기준으로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이 74.7 대 25.3인데요, 지금 7 대 3까지는—그게 국정과제이기도 하고—늘리는 것을 빨리 시동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서 장관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통교부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60조 4000억 원 정도 교부됐는데 실제 2025년 내국세 추정액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준해서 교부세 비율이 1조 5000억 원 정도 결손이 났고 그러면 내년에 더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받아 와야지 되는, 지금 뺏어 내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취약한 지방재정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 상황이 안 오도록 재정 당국을 잘 설득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 좀 해 주시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지방재정을 보강해 줘야 되는데 감액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깎아야 되는 이런 현행 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맞습니다. 지방정부가 내년엔 실제로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응책들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진**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작년 그리고 재작년, 물론 올해도 마찬가지로 혐오 표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거리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었고 걸려 있습니다. 제 앞에 계신 존경하는 김예지 의원님 같은 경우도 발의하셨던 법안에 대해서 완벽한 허위사실을 담은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해서 상당히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장기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걸 허용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요.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 더불어민주당에 혐오 현수막 신고센터를 만들기도 했었고 또 장관님을 직접 찾아뵙고 여러 가지 협조와 도움의 말씀을 요청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작년 하반기에 국무회의에서 이 혐오 현수막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하신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가이드라인을 내리셨고 그 가이드라인의 효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성동구라든지 성북구라든지 이런 구에서 또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혐오적인 표현을 담은 현수막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행안부장관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혐오적인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제거하는 경우에 만약에 경찰도 관련된 사건이 들어온다면, 재물손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면 기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혹시 혐오 현수막 제거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실제로 작년 말서부터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로 보냈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서 혐오 현수막을 정비한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9배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9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래서 지난 5월까지 통계로 보면 한 938건, 한 달에 한 200건 가까이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지역이 다 잘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작년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지금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정

당 현수막을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특정 장소에 제한하는 이런 법안이었는데요 정당 간의 견해차 때문에 통과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현수막을 예외로 해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정당법 개정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박주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정당법 개정안을 저희가 행안위에서 처리해서 법사위로 보내면 두 법을 같이 심사해서 통과시킬 계획이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저희 행안위에서 빨리할 텐데 아무리 그래도 법이 처리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도 이미 내리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이 효력을 발휘하고 현장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주민 위원 마침 제가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로 있는 자유와혁신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었어요, 제가 현수막 떼는 데 관여했다고. 그런데 최근에 이것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있으니까, 가이드라인대로 법을 집행하고 이런 업무들을 추진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는 게 한 사례로 밝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이런 현수막들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현수막의 내용과 관련해서 사법적인 시비가 있을 우려가 있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것을 잠시 유치하도록, 그러니까 지방정부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게시자가 문제 제기를 하면 다시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다른 시비를 낳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은 법을 빨리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주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지 위원 유재성 청장직무대행님,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제가 지적만 하고 끝낼 건 아니었고 좀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부산 사건 제가 말씀드렸고 세종시 사건이나 사실 인천 색동원 사건도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들이 수사에 참여하실 때 의사 지원 조력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거다 보니까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에 대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그걸 보다 보니까 휴가나 출장, 인력 부족 등등 다른 이유가 굉장히 많잖아요,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들이. 제가 최근 3년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요청드렸는데 그 통계자료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을 조금 더 보완하시면 어떨까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하여튼 통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김예지 위원 전담조사가 왜 누락되었는지 이유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전담조사관이 필요한 그 장애인이 피해자일 수도 있고 피의자일 수도 있고요 참고인일 수도 있거든요. 증인일 수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상황은 더 늘어날 거잖아요. 이제 중대범죄 아니면 다 맡으셔야 되잖아요. 이게 더 늘어날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초동수사에서 더 난항을 겪으실 텐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걸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런 통계를 마련하시다 보면 거기서 뭐가 부족했는지 왜 누락됐는지 이유도 조사를 하시고. 개인정보 때문에 이분이 장애인인지 아닌지 알기 어려웠다 이런 것 저희 의원실에 답변이라고 주시면 안 되고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김예지 위원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이게 왜 누락됐는지 어떻게 이분들을 더 잘 도와드릴 수 있는지 보조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지를 살펴 주시고요.

보다 보니까 전담조사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안 돼 있던데 왜 그런가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여러 예산을 신청하고는 있는데……

○김예지 위원 신청하는데 안 해 주시나요, 기재부에서?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하여튼……

○김예지 위원 그러면 이제 국회에 예산처 오잖아요. 제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야당이지만 어떻게 좀 해 보면 안 될까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김예지 위원 여당 위원님들이 웬지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래서 이 현황을 구분해 놓으셔야지 그냥 ‘우리 전담경찰 있어. 해 봤다. 끝’ 하지 마시고 제도가 실제 적용될 수 있게,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휴가 갔다, 없었다 그리고 끝나면 그분 송치되고…… 물론 이제는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아시지요? 없어지고, 어쨌든 경찰에서 사건을 다 종결하셔야 되니까 저는 더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 좀 정리하셔서 저희한테 알려 주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들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예산도 좀 올려 주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리고 장관님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해 5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있었는데 50대 시각장애인이 다른 주민들이 대피하는 가운데 제때 피하지 못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 11일에는 서울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뇌병변장애가 있는 60대 모친과 30대 아들이 같이 숨진 채 발견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정부의 장애인 재난대응지침이 실제 가구 구조와 대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알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현행 지침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김예지 위원 지침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화재……

○김예지 위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재난 발생 시 30분 이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그러면 30분 이내에 지정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에 계단 대피 시 최소 3명이 휠체어를 들어 이동하도록 안내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침이에요. 그런데 3명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어쨌든 보통 1·2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장애인분들 중에는 많고, 제가 지금 사건도 예를 들었지만 사실 장애 유형마다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 형태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주거환경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침 변경은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침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요 지침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침에 따르다 보면 이미 재난에 희생되시기 때문에……

○김예지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사실 가까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지금 산사태라든가 아니면 산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주민대피지원단을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거주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 그 주변의 누군가가 혹시 재난이……

○김예지 위원 혹시가 너무 혹시라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러니까요. 재난이 일어날 경우에 반드시 달려가서 구조를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김예지 위원 아까 경찰도 전담경찰관이 휴가 가서 가지고 못 했잖아요. 그렇듯이 돈 받고 일하셔도 못 하는데 혹시 하고 하시는 분들은 믿기 어렵고요 거기에 우리가 의지할 수 없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그 혹시라는 게 혹시 옆에 있다면이 아니라 혹시 재난이 일어난다면……

○김예지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뭐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 이중·삼중의 체계를 만들어야……

○김예지 위원 매뉴얼도 필요하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예지 위원 그것 관련해서는 사실 장애인이라고 다 똑같이 지침을 마련하시면 안 되고요. 청각장애인이냐 지체장애인이냐 뇌병변장애인이냐 시각장애인이냐, 유형이 열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재난안전대책, 대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숙지하셔서 매뉴얼을 하루빨리 좀 만들어서 이런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재정보기의 경우에도 주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화재가 났다는 것을 알려 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이미 불빛으로 알려 주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김예지 위원** 어쨌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옆방이시잖아요.

○**위원장 김영진** 두 분이 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린 가운데 몇 가지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김영진** 예,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까 윤건영 위원님이 관저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헌법수호TF의 조사 때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2차 종합특검 수사가 올해 2월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 알게 되었고요. 일단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강명구 간사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점심 정회 시에 우리 중수청 개청준비단에서 ‘의원실로 찾아가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저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서 당연히 가서 설명을 드린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설명을 못 드렸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 질의는 윤건영·정춘생·박상웅 위원 세 분 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구로율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소방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쿠광 화재라든지 최근에 물류센터 화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물류센터 화재의 주요 원인이 메자닌 구조라고요 청장님 잘 아실 텐데 소위 말하는 복층 구조입니다.

PPT 보시면 한 층을 여러 개로 층을 뒤편 더 적재를 많이 하는 거지요. 저렇게 되면 화재감지기 감지가 당연히 늦고요, 스프링클러에서 나오는 물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다음에 소방관들이 들어갈 때도 동선이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쿠광 물류 화재라든지 대형 물류 화재사고의 진압이 어려운 게 메자닌 구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청장님?

○소방청장 최용철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런데 앞서 업무보고에 보면, 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스프링클러에 대해서만 기준을 좀 강화하겠다고 하고 메자닌 구조, 복층 구조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서 몇 가지만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소방청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것들이 여러 가지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소방청장 최용철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시기적으로도 2024년 이전에 허가된 건물이라든지 기존 건물을 메자닌 구조로 바꿨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지금 소방청 TF에서 내놓은 안들이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소방청장 최용철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이걸 비용의 문제 등으로 해서 두고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토부 등하고 여러 부처랑 협의해서 대형물류센터 화재에 대한 궁극적인 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청장 최용철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챙겨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도 동의하십니까?

○소방청장 최용철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이 부분은 불이, 화재가 나면 크게 납니다. 저보다 더 잘 알 것 같아서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최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다음은 행안부장관님께 정책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형사소송법이 70년 만에 개정되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정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태까지는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주무부처고 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기금도 있고 경찰에서는 그 기금을 타다 쓰는 구조였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윤건영 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소송법이 70년 만에 바뀌면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원점에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법무부에서 해 오던 것들을 다시 행안부로 다 가져와야 돼’ 이걸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와 보호와 지원 업무가 다 각각 분리돼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특히 중수청이 만들어지고 하면 이 부분은 저는 심각하게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중수청·공소청 조직을 만드실 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것 별도로 논의하지는 않았습시다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경찰에서든 아니면 중수청에서든, 그러니까 수사기관 중에 범죄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책임은 당연히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중수청에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소되고 난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소된 이후에는 법무부가, 법무부와 공소청이 피해자 보호에 나서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된 업무도 지금까지는 주로 검찰에 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경찰·중수청에 자기가 소관하는 사건에 대해서 환수 의무가 있다는 것도 이걸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런데 현행 법령이, 지금 법무부에 이 법이 돼 있고요 위원회도 있고 기금도 있어서 차분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화하는 조직체계에 맞게 기금체계도 바꾸고 지원부서 체계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중수청 출범에 아울러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주무장관이시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지점들 잘 챙겨 봐 주십시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윤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유재성 직무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이륜차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추진하고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정춘생 위원** 저는 국가의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의도하지 않는 피해자를 양산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과의 소통 이거는 누구보다도 국민주권정부에서는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 하는 이유 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배달라이더들이 그전에는 몇 명 안 됐습니다만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2017년도에 그 시장 규모가 2조 7000억, 그런데 2024년에 37조 원에 들어섰습니다. 13배가 증가했거든요. 그만큼 배달라이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을 적용하면 모두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커뮤니티 의견들 들어 보셨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지금 여러 의견들을 듣고……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배달해서 3000원 벌자고 3만 원 벌금 물게 생겼다’ 이런 목소리 현장에서 들어 보셨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지금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있고……

○**정춘생 위원** 그러면 이것 개선대책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 작은 여러……

○**정춘생 위원** 답변을 좀 빨리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이륜차에 대한 민원도 많았고 또 지방정부의 요청도 있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정춘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륜차는 생계

형이에요, 생계형. 그런데 우리나라 주차 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륜차의 주차, 주정차를 합법화시키지 않아요.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정춘생 위원 주차 공간이 없어요. 다 불법화시켜 놓고 과태료 받겠다고 하는 거는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그런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PPT 한번 보시겠어요?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공영주차장에도 이륜차는 다 못 들어오게 경고문을 쓰고 있어요, 공영주차장에서도.

다음 PPT 보실까요?

시장 규모를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만큼 13배 증가했다는 것.

다음 PPT 보여 주세요.

배달라이더 종사자도 지금 36만 명이에요. 이것도 등록된 것 위주로만, 등록된 것만 보여지는 건데 현장에서는 5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고칠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지금 여러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현장의 의견들도 수렴을 하고 또 관계부처의 의견도 듣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인프라가 우선 돼야 됩니다. 이륜차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인프라가 우선 확충이 돼야 되고 또……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선대책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요.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 두지 않고 불법 주정차로 다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이분들에게는 생계 문제거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런 인프라라든지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정춘생 위원 그러면 이것 경찰청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의 협조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정춘생 위원 국토부·행안부 다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요.

이 개선대책 마련에 당사자인 배달라이더 유니온도 있거든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주차 공간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가, 아니면 택배 차량처럼 전국 지자체가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부산이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속 유예를 해 줘요. 그리고 번호판 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륜차는 번호판 식별 없이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번호판을 배달라이더용은 식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입을 검토해 주시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정춘생 위원 주차 공간에 가려고 해도 지금 뒤에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왜냐하면 번호판이 뒤에 있잖아요—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이륜차에게는 다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목소리를 현장에서 정부로 많이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나 봅니다. 하지만 50만이나 되는 생계형 라이더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계를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무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분들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정춘생 위원 그래서 현장의 얘기를 듣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정춘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웅 위원 행안부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감사합니다.

○박상웅 위원 장관님께서 지난 8월 2일경 밀양시 가뭄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농경지도 둘러보시고 지역주민들과 애로사항을 경청도 하셨는데 저도 같이 현장에서 동행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별말씀을요.

○박상웅 위원 그래서 그 덕에 비가 왔는지 몰라도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와서 지금 남해안에는 거제도나 통영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재난지역……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박상웅 위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과정 전반을 놓고 볼 때 조금 아쉬움이 남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가뭄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태풍처럼 몰아닥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비는 계속 오지 않고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반복 진행이 되면 국가가 예의 주시했다가 단계별 검토를 거친 뒤에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 환자로 치면 저 환자가 언제 목숨이 끊어지나 계속 지켜본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저수지가 바닥을 다 드러내고 있고 논밭은 말라서 갈라지고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미 곳곳에서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렇게 경고등이 계속 켜지고 있는데 정부는 국가소방동원령이라든지 이런 긴급조치를 왜 빨리 내리지 못하고 관망하고 시간을 끌었나, 대응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잘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닌가, 아니면 이런 제도가 있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님, 그날 제가 가서 보고 와서요 오히려 재난대응 매뉴얼로 보면 가뭄 지역, 그러니까 심각 단계에 이른 가뭄 지역의 숫자나 이런 걸로 보면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릴 만한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당겨서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박상웅 위원 만약에 그로부터 한 열흘 뒤에 비가 오기는 왔는데 그때까지도 가뭄이 계속되었다면 장관님 방문하신 그때가 재난지역으로 발표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 부분이. 그때까지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방문하신 밀양시는 그보다 더 심각 단계에 이미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강릉시 경우를 아실 텐데 가뭄 당시 정부는 가뭄 대응으로 처음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립니다. 23일 동안 누적 차량 1627대를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뒤에 경남에서 또다시 유사한 가뭄 사태가 발생했는데, 물론 두 번째 국가소방동원령은 내

려졌습니다만 동원령이 내려지고 나흘 동안 장비가 836대, 인원이 1672명이 투입돼서 3만 4000t이 넘는 용수를 공급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주 필요했습니다, 그 이후에 비가 온 문제는 다른 문제고.

그래서 지금 느낄 때 기왕 이런 조치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일주일만이라도 더 당겨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때 필요한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지금 자라나는 농작물, 특히 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살아는 있는데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 쭉정이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농심이 지금 타들어 가고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

○박상웅 위원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이런 재해 대응의 전문가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런 전문가들과 왜 이번에 정부 대응이 늦었다고 이렇게 국회의원이 지적을 하는지, 가뭄 예측부터 용수 확보, 관계기관 대응까지 선제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행안부 중심으로 해서 마련하면 어떨까, 물론 농식품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요. 그래서 정부가 가뜩이나 어려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촌지역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않도록 좀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 몇 마디 하니까 다 지나가네.

그래서 아울러 우리……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박상웅 위원 내가 마이크 끈 상태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최용철 소방청장님, 산불도 늘 걱정입니다, 가뭄만 걱정이 아니고. 그래서 산불피해를……

지금 PPT 하나 띄워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산불피해가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를 시키고 해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산불진화차가 현재 322대가 가동되고 52대는 10년 넘게 운영한 차량이라 노후화되어 있고 소방헬기도 20년 이상 운영한 낡은 기체가 6대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산불 대응 작업을 하다가 소방헬기가 추락하거나 또는 장비의 부실로 인명이 손상되는 그런 비극도 일어나는 만큼 조금 더 그런 면에서는 미리 점검하고 예산도 요구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곧 가을이 닥쳐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산청지역에 산불 진화 때문에 광역소방대원들이 다 투입이 되니까 불은 산청에 났는데 옆에 있는 우리 지역구인 창녕에서 동원한 소방대원 4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대응을 해서 항상 이렇게 사후약방문 식의 그런 접근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미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5분 추가발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별로 질문을 안 하셔서 답변할 기회도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장님, 박상웅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위원장 김영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강릉 가뭄 사태하고 이번에 경남 밀양 등의 가뭄 사태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작년 강릉 가뭄은 식수원댐이 고갈이 돼서 일주일에 이틀, 3일 정도 제한급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훨씬 더 집중적으로 가뭄 대책에 동원할 수단을 다 동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밀양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약 180일 정도의, 그러니까 식수는 그대로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농업용수의 부족이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올라와서, 현장을 보고 와서 바로 재난특교를 보내서 펌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밀양강으로부터 저수지까지 역으로 물을 퍼 올리는 그런 작업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소방동원령을 통해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며칠 안 돼서 비가 왔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급한 상황은 면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미리미리 대응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행안부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소방청장도 박상웅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최용철**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께서 저희 소방력의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소방동원령을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헬기 그다음에 인접 마을의 비상소화장치라든지 산불진화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소교세 이런 부분들을 교부를 해서 노후장비를 해소하고 인력도 올해부터는 많이 뽑고 있습니다. 900여명 이상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장 인력 부족한 데 먼저 저희들이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7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9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소방청장님, 22대 국회 시작돼서 2년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네 번째 청장님이세요. 그렇지요? 두 달 정도 소방청장직무대행도 하셨는데 현재 소방 조직에서 제일 시급한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청장 최용철 그동안 지금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뇌부가 자주 바뀌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이 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이광희 위원 그 사건들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전임 청장님은 내란중요임무중사 혐의로 기소되셨고 전임 청장님은 비위 의혹으로 감찰 받던 중에 취임 3개월 만에 물러나셨고, 일선에서는 광주 소방관 사망 사건을 비롯해서 서울·부산·울산·전북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각종 비위 문제가 소방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소방청장 최용철 예.

○이광희 위원 신임 청장님으로서 현재 소방조직 공직기강과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청장 최용철 예, 당연합니다.

○이광희 위원 정말 심각한 거는 말이지요 조직 내부로부터 외부에서 보기에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바로잡는 자정작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사망사건을 보면요 광산소방서에서 가해자가 감찰 부서의 장이 되고요. 광주 소방안전본부는 5개월 동안 사건을 방치하고 또 소방청 본청도 부실 감찰 당사자들에게 조사반을 편성시켰어요. 맞지요?

○소방청장 최용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자체 조사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그렇게 한 일이니까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고 종결됐던 사건인데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에 온갖 갑질행위가 또 비위가 만연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소방청장 최용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청에서는 매우 무겁고 엄중하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광희 위원 파면 2명 그리고 15명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지요?

○소방청장 최용철 예, 모두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광희 위원 내부에서가 아니라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나온 겁니다.

광주만의 문제가 아닌 것도 들어 드릴게요. 서울에서는 개 잡는 연습을 하자면서 피해자 목에 교수인의 매듭을 들이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인격 모독과 외모 비하를 일삼던 그런 사람에게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검찰 수사 후에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됐지요?

○소방청장 최용철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전북에서는요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징계의결권이 있는 상급자에게 선물 세트까지 보낸 자에게 징직 3개월 처분을 했는데요.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요. 아무리 징계와 형사처벌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 해도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이러면 소방 내부 감찰체계에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방청장 최용철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지금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엇그저께 21일 날 발표에 자체 조직진단 한 거 받아 봤습니다. 부조리를 경험한 직원 10명 중에 7명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금 냈

고요. 신고하면 신분이 노출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는 이런 조직이 됐고요. 그리고 외부 신고 채널을 확대하거나 신고자 보호, 시도 간 교차감찰 등을 포함한 신고·감찰체계의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청장 최용철 100%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간의 여러 가지 추진도 했고요. 종합 쇄신책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이거 말고도요 소방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조직에서 만약에 이랬다면 이게 정상적인 조직문화라고 보십니까? 이게 감찰도 무용지물이고 내부의 자정작용도 없고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 사람도 하나도 없고, 여기 다닐 수 있겠습니까?

○소방청장 최용철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에는 특별감찰단을 구성해서 중앙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저는요 잘못 저지르면 패가망신당한다는 교훈을 이번 기회에 기풍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이거 소방청 정말 위험합니다.

○소방청장 최용철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어차피 다음 달, 이번 8월 달에 낸 걸 가지고 조직문화 쇄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신임 청장님의 첫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국감도 바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제가 좀 더 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쇄신을 임기 초의 핵심 과제로 삼고 직접 챙길 것을 약속을 하실 수 있는지……

○소방청장 최용철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장관님, 중수청 개청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검찰……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이지요, 아직. 검찰에서 얼마나 많은 검사들하고 수사관이 중수청으로 넘어오느냐 이거를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저는 그 반대의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수청으로 넘어오지 않고 검찰, 장래의 공소청에 남아 있게 될 검찰 수사인력…… 지금 대충 검찰 수사관들 규모가 한 7000명, 8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의 그 정도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8000명 정도 됩니다.

○이상식 위원 8000명. 그중에서 지금 이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수사 인력이 한 2000명 정도 넘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최소한 5000에서 최대 6000명 정도의 검찰수사관들이 공소청에 남아 있게 된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상식 위원 이분들이 맨 처음에 입직할 때도 그렇고 수사직렬 그러니까 수사관으로 다 입직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수사관도 있고 일반직도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일반적도 물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은, 한 70% 이상은 수사직렬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상식 위원 그러면 수천 명에 다다른 수사직렬로 입직한 수사관들이 전문 기소기관으로 남게 되는, 공소청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공소 업무에만 전종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 이분들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관님, 왜냐하면……

지금 경찰 한번 보겠습니다.

대행님, 제가 알기로는 이번 정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최근까지 한 1900명 정도의 경찰관들이 수사기능으로 재편이 됐다,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내부 조정을 거쳐서 1900명을 이미……

○이상식 위원 이미 배치를 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배치를 했고 880명 정도를 추가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요. 1900명 중에서 외부 충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158명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찰에서 교육지책으로 업무 조정을 통해서 아낀 인력을 지금 수사 경찰로 배치하고 있고 앞으로 또 기동대 인력을 줄여 가지고 한 800명을 넘게 수사경찰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상식 위원 장관님, 제가 알기로는 이제 권한이 커지고 책임이 커지고 또 업무가 많아지면 당연히 그쪽 기능으로, 제가 경찰 편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중요해졌다고 누차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이재명 정부의 철학이 일하는 조직, 일하는 사람한테 권한을 더 주고 인력을 더 주고 예산을 더 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찰수사에도 투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이상식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인력이 나중에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이상식 위원 공소청에도, 그러니까 중수청으로도 일부 더 가야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수사를 검찰은 평소에 자기들이 잘한다고 주장해 왔으니까 그래서 검찰수사관 인력을, 경찰의 일부 인력도 정년이 임박하거나 이런 분들 또 경찰 퇴직자들이 중수청으로 올 수는 있습니다. 장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수청의 수사인력이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그 조직의 민주성이 증가된다 저도 이렇게 동의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맞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 반대로 검찰 수사인력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상의 전환을 해 가지고 부족한, 지금 경찰이 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뒤에 누가 1인당 사건보유 건수가 대략 몇 건 되는지 알고 계신 분 있습니

까?

수사기획관님, 몇 건 정도 됩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1년에 133건 정도 되고요.

○**이상식 위원** 그러면 수사인력 1인당 보유 건수.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1년에 보유 건수가 133건입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사관 1인당 적정 보유 건수를 훨씬 상회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게 그만큼 경찰이, 수사경찰관들이 국민들의 어떤 권익 증진과 인권 보호에 수사를 좀 더 정밀하게 하고 성실하게 해야 될 그런 인력들인데 이게 지금 부족하다 이 말이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식 위원** 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경찰은 계급제도이지 않습니까. 계급정년제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검찰수사관들이 검찰에 남아 있으면, 공소청에 남아 있으면 정년까지 업무를 계속할 수가 있는데 경찰로 가면 그러니까 어떤 계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계급정년을 적용받게 돼서 전문수사직 같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그런 수사의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충원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식 위원** 장관님 말씀도 일부 제가 동의하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제가 보기에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국민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형사사법제도도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검찰이라는 조직이 해체되는 마당에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을 강제로 어떻게 발령을 내 가지고 경찰로 보내야 한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 전체의 인력과 예산 배분이 일을 하는 데 중점적으로 배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장관님한테도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온 지 거의 2·3년 됐는데 제가 알기로 거기에서 인력이 1명도 넘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지금 안보 조사국이라는, 조사 이런 명칭의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난 내란 때 윤석열이 대공수사권 부활시켜야 준다 그것 때문에 빠져 가지고 일부 내란에 가담하게 하고 한 이런 정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거기 계신 잔류하는 공무원분들의 신분보장에 일부 우리가 충분히 배려해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국가 경제나 여러 가지 여건상 공무원들 몇 천 명을 한꺼번에 순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수사관들의 어떤 수사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것을 국가 전체적으로 적당히 배분하고 할당을 해서 능률을 최대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행안부장관님이나 인사혁신처장님도 한번 이 점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옥 위원 서명옥입니다.

PPT 띄워 주세요.

잠깐 시간 스톱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PPT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0일에 여름 장마를 대비해 가지고 국민 생명 지킬 땐 과잉 대응이 없다고 하고 선제적 대비를 갖다가 강조하셨거든요. 그 당시 17일 날 윤호중 장관께서도 같이 야간 물폭탄이라든지 그런 예보에 대해서 재난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음 PPT 띄워 주세요.

그렇지만 그 당시 7월 달의 수도권의 대비와 8월 달의 경남 거제·통영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그때 65mm의 호우경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중대본에서는 선제적으로 비상단계 1단계를 가동하고 바로 네다섯 시간 지나서 2단계를 바로 가동하셔서 정말 국민 생명 앞에 과잉 대응 이상으로 선제적 대응 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경남 통영을 봐 주십시오. 그 당시에 시간당 124.5mm 정말 어마어마한 재난 수준의 집중호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대 남자 사망자 1명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중대본에서는 비상 1단계 가동만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PPT 자료 주세요.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당시를 좀 더 타임라인별로 보시면 빨간 부분 봐 주세요. 17일 월요일 날 20대 남성의 사망자가 생겼지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중대본에서는 가동조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 전날 보세요. 그 전날 보면 시간당 집중호우 124.5mm,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경남 일대에서는 1972년도 기상청 관측 이래 역대 최고의 집중호우라고 하였습니다.

장관님, 호우경보 기준 몇 mm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호우경보 기준은 50mm 이상부터 호우경보를 하는데요, 중대본 가동 요건은 시도 숫자가 네 곳 이상이어야……

○서명옥 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답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잠깐만요, 제가 먼저 발언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서명옥 위원 호우경보 기준은 3시간 누적당 90mm 이상일 때 호우경보를 내립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전체 누적 강수량보다는 가장 위험한 것은 재난안전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생긴다고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거제에서는 시간당 124.5mm, 정말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중대본에서는 가동하지 않았고요. 사망사고가 있고 난 이후 그다음에 중대본이 1단계를 겨우 늦장으로 가동하였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늦장이 아니고 전날부터 이미 중대본……

○서명옥 위원 어쨌든 이 표가…… 말씀할 수가 있으니까 답변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그러니까요 중대본 가동……

○서명옥 위원 아니요, 장관님, 제가 발언할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답변시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중대본의 발령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또 하나는 그 산사태가 난 지역이 급경사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보면 소방청하고 별도로 소방청이라든지 지역에서 채 관리하지 못한 부분을 행안부에서 더 관리를 잘하라고 2015년에 잠깐 직권으로 지정 권고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행안부,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이라고 돼 있어서 행안부장관님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곳은, 여기는 급경사지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서명옥 위원 나중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역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상이 아닙니다, 사유지였기 때문예요.

○서명옥 위원 일단은 사유지라 그러더라도 급경사지는 저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급경사지 사유지면 정부에서 관리 안 합니까? 그것도 어폐가 있지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장관님께서 좀 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인명 피해 발생 시에는 중대본에서는 비상단계를 의무적으로 상향하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인명 사고가 나고 집중호우가 났는데도 1단계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확한 기준을 다시 한번 마련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는 데에 따라서 저는 국민 생명이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난 앞에서는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역갈등을 그렇게 부추기시면 안 되고요.

○서명옥 위원 아니요, 말씀 나중에 하세요.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약속처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정부가 특정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서명옥 위원 답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특정지역에 대해서 마치 의도적으로 늦장대응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칸을 여러 개 나눠 놔서 그렇지 01시, 02시, 04시, 06시 이렇게 해 가면서 비교를 해서,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명옥 위원 비교를 한 게 아니라 장관님, 경남 통영 지역만 다시 한번 PPT 띄워 줘 보세요. 한번 보시라고요.

2단계에 부합하는 상황인데도 2단계 경보 내리지 않았습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2단계에 부합하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서명옥 위원 제가 2단계 부합하는 상황 불러 드릴까요, 장관님?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2단계 발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대본에.

말씀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중대본 가동은 기본적으로 호우경보의 경우 네 곳 이상의 시도에……

○서명옥 위원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명옥 위원 아니요, 그게요. 그 기준이 네 가지가 있는데 앤드(and)가 아니고 오어(or)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2단계 비상단계 발령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그래서 17일 오전 6시에 중대본 1단계 가동을 한 걸 늦장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01시에 가동을 안 했더라는 말씀이잖아요.

○서명옥 위원 1단계를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요. 2단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해는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데 중대본 1단계 가동을 하고 나서 2단계로 상향하려고 할 때 이미 120mm의 극한 호우는 그쳐 가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서명옥 위원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경남 거제 통영에 이렇게 집중호우와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단계 절대 끝까지 하지 않았습시다. 1단계만 고수했습니다. 자꾸 핑계 대지 마세요, 장관님. 장관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과잉 대응 좋습니다. 저는 수도권에서 하신 대응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와 똑같은 기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집중호우가 내린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앞으로도 재난 대응을 잘해 주십시오하고 부탁드립니다. 자꾸 핑계 대지 마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핑계가 아니라 제가 근거를 의원실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위원장 김영진 서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소방청장님, 청장님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소방병원 가 보셨어요, 국립소방병원?

○소방청장 최용철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언제 가 보셨지요?

○소방청장 최용철 소방병원……

- 임호선 위원 아니, 답변 빨리빨리해 주세요.
- 소방청장 최용철 개원식 하기 전부터 갔었습니다.
- 임호선 위원 개원식에는 못 오셨지요?
- 소방청장 최용철 개원식 때 갔습니다.
- 임호선 위원 오셨습니까? 그러면 대통령님 기념사에 R&D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지요?
- 소방청장 최용철 그렇습니다.
- 임호선 위원 기숙사는 정부 예산안에 담았는데 R&D센터 못 담았지 않습니까?
- 소방청장 최용철 R&D는 그래서……
-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국회에서 한번 같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립니다. 피부 재건 기술이라고 하는 게 고도의 의학기술을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소방청장 최용철 예, 맞습니다.
- 임호선 위원 잠시 시간 멈춰 주시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 임호선 위원 대행으로 지금 며칠째 계시는 거예요?
-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1년 조금 더 됐습니다.
- 임호선 위원 이쯤 되면 사퇴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저는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 임호선 위원 연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본인의 결심을 여쭙습니다, 인사권자의 뜻이 아니고. 경찰이 이 지경이 됐는데 사퇴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직에 연연하지 않고 제 맡은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 임호선 위원 경찰이 지금 이 지경이 됐으면 일선 현장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지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뜻 아니예요? 개인 책임, 무슨 시스템의 문제 반반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육 제대로 갖췄어요? 시스템 갖췄습니까?
- 제가 한번 여쭙볼까요? 수사 베테랑들 지금 경찰에 남아 있는 구조 갖췄다고 생각하세요? 예비수사관, 일반수사관, 전임수사관, 전문수사관, 책임수사관, 말장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각각의 요건을, 어떤 요건을 가지고 명함 나눠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걸맞은 교육, 복지 이런 예산 뒷받침합니까? 안 하잖아요. 10%씩 도망가지 않습니까?
- 저는 걱정돼요. 베테랑 수사관들 장관님이 지금 공수처 그것 준비하시는데 흔들릴 것 같아요. 잡아 둘 수 있어요?
-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저희가 수사경찰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고……
- 임호선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사퇴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 임호선 위원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임호선 위원 22년도에 1인당 사건 접수 건수가 101건이었어요. 4년 채 안 돼서 133.8건으로 증가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1인당 접수 사건 역시 통합수사 204건, 지능 63건에서 88건, 형사 114건에서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115건, 여청 58건에서 72건, 이 정도로 업무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순찰대?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기동순찰대……

○임호선 위원 이것 폐지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기동순찰대가 최초에……

○임호선 위원 폐지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이것 1000명 1051명으로 줄인다고 하는데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가장 비효율적인 겁니다. 형사가 왜 이거 하고 있어야 돼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형사가 하지는 않습니다. 최초 만들어질 때 2600명 정도 규모로 만들어졌는데 제가……

○임호선 위원 이상동기범죄 대응이라면서요. 이상동기범죄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까요?

매일매일 지구대·파출소에서 이상동기범죄로 신고 들어오는 사안 데이터베이스 관리되니까, 안 됩니까? 시스템 갖춰져 있습니까, 안 갖춰져 있습니까? 그날그날…… 안 되어 있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이상동기범죄는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거는 기수범 얘기고요. 신고 나가 가지고 그놈이 실제 범행을 저지르지 안 저지르는 그거는 결과를 두고 하는 얘기고요. 그때 이상동기범죄라는 것이 밝혀지는 문제고요. 이 사람은 이상동기범죄다라고 하는 용의점이 있거나 그런 신고 사안을 접하면 관리가 돼야 됩니다. 시스템 갖춰져야 돼요.

시간 때문에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충질의 안 드리는데 거취 고민하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임호선 위원 그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진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장관님, 오늘 중수청 관련해 가지고 질의가 많았을 텐데요. 확인차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자 중에 한 2400여 명 되는데 그중에 보니까 서울 지역 신청자가 유독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도 그렇게 지역별로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채현일 위원** 아마 서울 근무 때문에 희망 있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향후에 5개 지방청이 있는데 지역별 불균형, 인력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건 고민이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원래 전체 인원의 본청 서울청 근무하는 정원이 한 50% 정도가 됩니다.

○**채현일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의 질의하고 연관된 건데요. 경찰의 베테랑 수사인력의 유출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경위·경감급 수사인력들이 중수청 6급 수사관에 지원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경찰청 단위, 국수본 단위 수사인력 유출에 대한 걱정, 그거에 대한 어떤 처우나 경찰 수사부서의 처우, 승진체계 개선 또는 중수청과 경찰 간의 수사인력 교류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대책 같은 게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직은 거기까지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경찰 국수본의 수사관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막는 제도도 없고 그렇다고 검찰수사관들을 받듯이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채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센터 얘기드릴게요. 데이터센터의 주무부처는 과기부나 다른 부처기는 하지만 재난안전 측면에서 저는 접근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에 데이터센터가 8개나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아파트 밀집지역, 몇만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데, 학교 근처.

그래서 저희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온 동네하고 온 수도권이 난리예요, 이런 집단민원, 소송, 인허가. 그런데 법 규정에는 짓게 못 하게 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짓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채현일 위원** 없지요.

그리고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반도체, AI데이터센터, 퍼지컬 AI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방향은 맞는데 산업 육성과 주민 안전 측면에서 이것에 대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별 지자체, 구청이나 시청, 도 단위에서 민원으로 떠안게 만들 게 아니라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허가를 지원해 주고 소송을 당합니다. 결국 세금으로 메꾸고 또 고발도 당하고요. 결국은 주민들은 원하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이걸 국가, 정부 차원에서 안전, 갈등 관리 의제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소방, 건축, 산업, 전력 판단에 대해서 데이터센터 각 부처별로 소관이 있는데요. 안전 측면에서는 종합적으로 행안부에서 조정을 하고 또 주민에게 설명하고 그런 책임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이걸 재난의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주민의 안전 그리고 여러 가지 각 부처별로 갈등 의제 관리 차원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나 그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게 저희 소관 법률은 아닙니다만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내년 3월 달에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게 내년 3월 달에 시행이 되는데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또는 기준, 절차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절차에 맞춰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저희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장관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규정이 국가·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구체적인 공통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똑같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AI데이터센터에 대한 정부의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특히 수도권, 아파트나 학교나 그런 데밀집지역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 전에 사전 고지하거나 주민 의견 수렴 같은 게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계부처, 국토부나 과기부나 이런 등에 공식적으로 의견도 제출하고 조율하고…… 그런데 이 법 규정으로 해 가지고는 형식적인, 지금 상황에서 변화나 발전적인 측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최근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서울시에 제안했는데 그런데 서울시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결국은 행안부나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이나 해 가지고 향후에 AI데이터센터나 그런 산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 문제, 주민들의 민원 이런 거를 해결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진** 채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청장직무대리님, 질의하겠습니다.

전경예우라고 새로운 특권 시장이 형성되는 것 이미 알고 계시지요, 전경예우?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언론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언론에서만 들으셨어요? 혹시 청에서는 특별조치 한다라는 상황은 없으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청에서 지금 사적접촉 금지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고……

○**진종오 위원** TF팀을 구성했다고는 얘기 들었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TF……

○**진종오 위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2019년부터 퇴직 후 3년 이내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 직무 관련 사적접촉 신고라는 제도 운영하는 것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7년 동안 신고된 접촉이 149건, 그런데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별도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셨는데 후속조치를 안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

○진종오 위원 잘 모르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별도의 후속조치라 함은……

○진종오 위원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거기에 따른 징계나 이런 걸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종오 위원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안 하셨다라는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아서 징계 처리까지는 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만든 이유는 그냥 국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우리 경찰은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 그런 보여 주기식 제도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적접촉 금지 의무가 다른 비위와 함께 사적접촉 금지 위반이 확인돼서 징계 등 한 건수가 30건 정도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경찰이 수사권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문제점이 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퇴직 고위경찰의 예시를 들면—모든 경찰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대형 로펌, 법률사무소 취업 그리고 과거 부하·동료 경찰 접촉, 사건 문의 그리고 수사정보, 진행 상황 접근 가능성 그리고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 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국민이 경찰 출신 고문이나 전직 경찰 간부가 있는 로펌을 찾아가면서 저 사람을 통하면 경찰 수사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찰 수사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렇지 않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진종오 위원 이게 이런 문제가 사법의 불신들이 시작되는 건데 관련해서 윤호중 장관님,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장관님도 전경예우 관련해서 얘기 들으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아직 못 들으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진종오 위원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셨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중수청이 10월 달에 출범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보고 있어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요.

○진종오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장관님께 한번 설명드리시고요. 장관님께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장관님은 본 의원실로 이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주셨으면 좋겠고

요.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경찰관들이 모두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경찰을 공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묵묵하게 성실하게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더 많다고 저는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돈 없고 인맥 없는 평범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경찰청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TF 출범까지 했는데 문제는 중수청이 출범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여쭙보고 싶은 겁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경찰관이……

○진종오 위원 전경예우.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전경예우를 받고 로펌으로 가는 문제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3년간 취업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취업심사가 아주 엄격하게 실시가 돼서 로펌에 이렇게 3년 내에 취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없는 것으로는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 개선이 확실하게 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 부분은 공직자……

○진종오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수청 출범 전에, 10월 2일 전에 모든 게 완료될 수 있는지를 여쭙보는 겁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전체 공무원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적 접촉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다 더 강화를 해서 경찰관 행동강령에 넣고 또 징계기준도 엄정하게 설정을 해서 사적 접촉 금지 제도를 보다 더 내실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종오 위원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검토만 하지 마시고 언제 어떻게까지 하겠다라는 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지금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비리근절 방안 그리고 사건 암장 방지 그다음에 수사 공정성 확보에 대한 부분을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면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관련해서 본 의원실로 언제까지 결론이 나는지 꼭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진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해식 간사님.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위원장님, 인사혁신처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진종오 위원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김영진 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위원장 김영진 처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간략하게, 지금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인사혁신처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게 취업심사를 하는 건데요, 금년 들어서 새 정부 들어서 취업 심사의 기준이 굉장히 강화돼서 경찰이 로펌으로 가는 것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취업 심사 결과 나온 것을 보면 굉장히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그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종오 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변호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으로 계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그것도 취업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진종오 위원 고문으로 있어도 취업심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진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이해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울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 통합과 관련해서 연간 5조 원 그리고 4년간 도합 20조 원의 지원을 하 겠다라고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연도가 내년이고 예산서에 담기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이제 거의 예산안 제출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거의 결 정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나요? 예를 들면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김민 석 총리가 재직 당시에 통합특별교부세 그렇게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고 통합특별시지원 금 이런 방식으로 지원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통합특별시 지원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요 거기에 넣는 방식 으로……

○이해식 위원 지원 계정은 어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전남광주시에 계정을 만들어서 그리로 지원을 합니다.

○이해식 위원 시에 계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앙정부, 정부는 어디서 나오냐는 말이지 요. 교부세로 지원하는 건 아닐 것 아니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교부세는 아닙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재원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일반 예산에서……

○이해식 위원 일반 예산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일반 예산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해식 위원 일반 예산에서 그것 편성을 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편성돼서 그대로……

○이해식 위원 장관님, 전남광주특별시의 지출과 관련해서는 행안부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직 협의는 하지 않았고요. 행안부하고 협의할 내용이라기보다는 행안부 그리고 재정부 또 기획예산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글썄요, 사용 용도를 지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민형배 시장께서 미래먹거리 산업 그리고 청년층 대한 지원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사업하는 데 쓰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거지요. 이게 4년간 지원되는데 거고 한시적으로 지원되는데 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돈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 그렇다면 4년이 끝난 뒤는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항구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거면 살림 규모를 키워 가지고 계속 그거를 지출할 수가 있는 건데, 당해연도 수입을 다 세입으로 하고 또 지출을 다 세출로 하고 그렇게 예산회계의 원칙에 맞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4년 이후에는 돈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미래대응기금 있지 않습니까? 미래대응기금도 반도체 특수로 인해서 내년과 내후년 정도에 세수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서 재정안정화 기능 플러스 미래산업, 미래 먹거리, 미래성장동력 또 교육 또 지방 그런 네 가지 계정인가요? 그걸 둔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이해식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재정안정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수가 갑자기 늘어서 지방교부세도 갑자기 늘 텐데 그러면 2년 정도 늘었다가 그 이후에는 특수가 가라앉고 줄어든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이에 지방정부가 살림을 키웠다가 재정이 또 줄어들면 그 살림을 운영하는 자금이 부족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떼서 미래대응기금으로 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다만 지방 계정을 두고 여기에 넣는 미래대응기금은 결국 원천적으로는 지방정부에 가야 될 돈이기도 한 거니까 지출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와 상의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노력 이런 것을, 저는 기여처 직원들은 그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고 봐요.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만약에 미래대응기금에 지방 계정이 만들어지면 지방 계정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의 입장이 좀 더 강하게 작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기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특별히 각별히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해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지 위원** 혹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강명구 간사님 질의 마치고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전에.

강명구 간사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위원** 경북 구미시을 출신의 강명구 위원입니다.

윤호중 장관님, 아까 말씀을 주서 가지고요. 우리 국회가 자료를 요청하고 정부가 자료를, 답변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께서 도대체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서 가지고 감사하고요. 우리가 준비사항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과연 정말 중수청이 정상적인 출범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고요. 수사공백이 생기거나 흔히 말하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전문 수사역량이 약화되면 그랬을 때 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는다. 그 피해를 받는 국민들의, 우리가 해아려서 출범 전에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 보자라고 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건데 말씀 주서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지금 준비사항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요.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출범이 가능할지 의문이 자꾸 드는 겁니다. 특히나 이 상황을 제가 3무 사태라고 지금 표현하고 싶은데, 일단 사람이 없고요, 검증이 없고요, 견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 왜 이런 생각이 드냐 하면 중수청준비단이 현직 검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리고 전국 검찰청을 돌면서 임용설명회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지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출범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수사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구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고요. 이 상태가 정말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이고요.

둘째는 검증도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 현재 검찰이 보유한 미제사건이 약 14만 건인데, 장관님, 이 14만 건의 사건을 경찰과 중수청으로 이제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건마다 수십 종에 달하는 수사기록과 증거가 꼬리표를 다 달아 가지고 제대로 이관됐는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도대체 이걸 누가 확인하지요? 보증은 누가 합니까? 장관님께서 보증합니까? 제가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관할이 겹치면 누가 사건을 맡는지 사건이 지연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 실제 상황을 가정해 가지고 이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돌려가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80년 가까이 된 형사사법 시스템 체계 자체를 한순간에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 한 번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돌려 보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우려를 그런 자료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검증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장관님은 계속 문제없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그 말만 반복하시는데 실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거를요?

마지막은요 견제장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큰 수사기관인데 이렇게 막강한 수사권을 주면서 제대로 된 견제장치가 없다면 검찰 대신에 또 하나의 거대한 권력기관을 그냥 만들어 내는 겁니다.

중수청은 장관님이 지휘·감독 하도록 돼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러면 장관께서 책임지고 중수청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견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강명구 위원님께서, 간사님께서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지금 이제 시작이고요. 이것이 그냥 새로운 사람을 모집해서 기관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검찰청에서 그 기능을, 수사기능을 하든 검사와 수사관들을 이체받아서 그 토대 위에 또 새로운 전문가들 또는 경찰이나 아니면 다른 수사 경험자들 이런 분들로 나머지를 다 채워서 그래서 업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명구 위원 잠깐만요. 30초밖에 안 담아 가지고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러면 제가 나머지는 조금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초대 중수청장도 정권을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사람으로 제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수청 출범 전에 갖춰야 할 아까 최소한의 조건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범을 1년 유예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출범 1년 유예 방안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출범을 유예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낳을 뿐입니다. 14만 건의 사건을 이첩받고 증거를 넘겨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 곳에 뭉쳐져 있는 사건을 분류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각 고검 단위의 지방중수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검 산하의 지검, 지청이 가지고 있는 사건을 고스란히 받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다.

또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검찰처럼 기소권까지, 영장청구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뿐이지 강제 수사를 위해서는 영장 청구를 해야 되고 영장 청구는 검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검사로부터 항상 상시 직접적으로 사법적 통제를 받고 있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사가 모두 끝나고 난 뒤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기소 여부의 결정은 중수청의 수사관들이 하지 않습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하기 때문에 권한이 남용될 소지는 크지 않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어쨌든 장관님,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녕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제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중수청이 출범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명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예지 위원**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 발생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비공무원, 비공무직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 납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물론 장관님께서 오후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직군상 가능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공무직 직군의 장애인 고용을 어떻게, 비공무직 직군 또한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채용 확대 계획과 적합 직무 발굴 그리고 장애인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담은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책적인 대안 마련을 서면질의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법정 의무를 다하지 못한 주무부처를 질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저녁 정회 시간 직후에 행정안전부 성과관리 담당실에서 저희 보좌 직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장애인 고용 개선 대책 제출요구 질의를 철회해 달라는 취지의 부적절한 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위원장님보다는 적게 의정활동을 했지만 6년간—사실상 야당 위원으로 4년이고요, 여당은 2년밖에 안 해 봤습니다—도대체 처음입니다. 이런 요청은 제가 정말 6년 동안 처음인데 위원장님은 얼마나 받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무엇이 두려워서 이 질의를 지우려 합니까? 잘못된 고용 행태를 개선하라는 국회의 요구가 그렇게도 부담스럽습니까? 국회의 공식 질의는 행정부의 편익에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행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이견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서 표명하면 되고 또 정책에 한계가 있다면 당당히 밝히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제 질의를, 그 자체를 사후에 없었던 것으로 해 달라는 제의를 종용한 것은 명백한 입법부 농락이고 국정 심의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고 훼손입니다. 또한 이는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행정안전부의 비겁한 면피 행정입니다.

저는 이런 일은 정말 처음입니다. 아마 어떤 그 부처도 저의 질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면피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부담금으로 때우면서, 이 부담금 혈세입니다. 그냥 내는 것 아닙니다. 정작 앞으로 어떻게 고용을 늘릴 것인가를 실질적인 개선책 제출 요구하라는 것에 회피하겠다는 의도인데 이는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행정안전부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오늘 행정안전부가 어떤 경위로 이렇게 저에게 처리 요구를 했는지 알아봐 주시고 둘째, 어떤 결재란을 거쳐서 국회의원의 질의를 철회해 달라고 삭제를 시도했는지 명백히 규명해 주십시오. 셋째, 이처럼 오만하고 부적절한 관행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에 요구해 주십시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국회를 검열하려는 행정안전부의 구

태에 대해서 장관의 공식가 저는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행안부장관님이……

○김예지 위원 굉장히 황당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행안부장관님이 이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의 질의가 있으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우선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 말씀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행정안전부의 직원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실을 통해서 어떤 경위로 그와 같은 문자를 보내게 됐는지 파악을 해서 김예지 의원실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부적절한 일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장관께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서 김예지 의원실과 위원장실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옥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의사진행발언? 예.

○서명옥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의 답변 태도에 심각한 저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야당의 간사도 그렇고 김예지 위원도 그렇고 저 또한 중수청의 준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원 자료를 요청하였더니 인사에 관한 것이고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장관님, 저희가 언제 개인정보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요구했는데도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바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행안위가 여기가 무슨 인사위원회냐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장관님, 지금 저는 장관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은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장관님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대한민국의 행정을 총괄하고 있다고요. 뭔가 착각하고 계세요. 지금 국회의원 자격으로 거기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재난 대응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지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응하신다면 거기에서 근거를 댈 수 있는 반박 자료를 내겠다고요? 어느 행정 부처가 그런 오만한 태도를 하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반박 자료를 내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보고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서명옥 위원 제 말씀 먼저 할 테니까 답변 나중에 하세요.

○임호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님한테 하셔야 돼요.

○서명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서명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서명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도요 정확한 자료의 확인도 없이 사유지라서 자기들의, 행안부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 명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장관님께서 행정의 책임자로서 저희 국회의원들의 답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확인한 이후에 팩트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 저는 요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적절하게 잘 조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 3분간 추가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신청하신 위원님대로 진행하기로 해서 정춘생 위원님, 서명옥 위원님, 강명구 간사님 이렇게 세 분이……

○이광희 위원 왜 저는……

○위원장 김영진 이광희 위원님, 이렇게 네 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저는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직무대행께 우선 감사의 말씀과 함께 칭찬을 하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여성·청소년 범죄 그리고 젠더 폭력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도 많이 했었고요. 관련 법률도 많이 났고 국정감사나 현안질의에서 많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생활안전국으로, 산하로 소속으로 돼 있는 여성청소년과를 별도의 국으로 확대 신설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돼서 내년부터는 국 체제로 저는 출범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제가 보완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국 신설은 저는 이재명 정부의 큰 성과로 나중에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출범이 힘 있게 저는 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경찰청 차관, 차장 소속의 국이고요. 여기서 기획조정관은 칸이 부족해서 뺐는데요. 모두 치안감입니다, 국장이. 그런데 여성청소년국만 경무관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행안부장관님,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관련 업무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조정도 해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모두 치안감인데 여성청소년국만 경무관이면 이게 위계질서가 확실한 조직이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또 정책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되고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되는 과정에서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아동·청소년 범죄, 스토킹 범죄 모두 여성·청소년 관련 소관입니다.

그러면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려면 이 관련해서 업무를 여성청소년국에서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그만큼 피해자 보호가 지금 형사사법체계 대전환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됐는데 지금 저는 경무관으로 출범하면 제대로 된 일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

다. 그래서 이왕 신설하면서 치안감급으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도 표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왜 이렇게 됐는가 좀 의아한데요. 확인해 보고 그 원인, 이렇게 경무관급으로 국을 신설하게 된 이유를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면 재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이왕 출범하는 거 힘 있게 출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대로 된 업무를 하고 평가를 받으려면 저는 치안감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3월에 출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청 내에서도 그렇고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개선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말씀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위원장님, 잠시 전에 존경하는 서명옥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급경사지법 제3조에는……

○**서명옥 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질문할 테니까 그때 답변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러세요?

○**위원장 김영진** 그렇게 하시지요. 다다음번 질의시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최영중 전 시의원…… 청주시의원 사건 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광희 위원** 오늘 충격적인 내용이 발표가 돼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미성년자 피해자 2명을 추가 확인해서 총 확인된 피해자만 4명입니다.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타임라인을 좀 보면요 2월 26일 날 피해자 부모님으로부터 사건이 처음 접수가 됐고 그리고 5월 23일에서야 첫 피해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뭐 하셨어요? 그 사이에 3월 달에 국민의힘 김진모 당협위원장으로부터 공천 면접을 받고 공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임합니다. 그동안 경찰 뭐 하셨어요? 왜 대답을 안 하고 계십니까? 저 사건 모르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경찰이 13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뭐 하셨어요? 그 사이에 저자는 청주시의원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뭐 하고 계셨어요? 더군다나 검찰 측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통신영장도 기각시키고 구속영장도 기각시켜요. 이유가 경찰에서 나온 자료가 부실해서, 그렇게 올렸습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반박 한마디 못 하셨어요.

저는 오히려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검찰 측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

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왜 수사하지 않느냐, 이것 분명히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당시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하고 그 사건을 맡았던 검사하고 같은 곳에서 공동의 일을 한 적이 있었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전화해서 이 사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연애한 걸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추가, 오늘 제가 이것 보고서 정말 화가 많이 났는데……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최초에는 다섯 차례 출석요구를 했는데 이 출석요구 과정에서 전화도 잘 받고 이렇게 해서 변호인 선임하고 출석일자 조율하면서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의 압력이 있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하게 그 부분도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광희 위원 수사 중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광희 위원 그러면 오늘 밝혀진 2명까지 총 몇 명입니까, 피해자? 지금 난 언론에 보면 4명이라고 봤는데……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4명입니다. 4명이고 추가로 포렌식도 했기 때문에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광희 위원 만약에 6월 27일 날 영장이 발부가 됐거나 그랬으면 그 당시에 밝혀졌어야 될 일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좀 신속하게……

○이광희 위원 통신영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추가 범죄에 대해서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통신영장과 포렌식을 통해서……

○이광희 위원 이것을 반려키킨 검찰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검찰도 수사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진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옥 위원 장관님, 제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거제 통영의 폭우로 인한 산사태—지금은 산사태가 아니지요, 정확하게 말하면—그 문

제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경남 쪽이라든지 서울의 변두리라든지 전국에 있어서는 워낙 산지가 많다 보니까 산지를 깎아서 아파트 짓는 사례 많지요. 그러다 보면 산은 산림청 관할이고 아래쪽 절개지는 행안부 관리가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태가 난 이 아파트는 아마 1994년도에 준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장관님께서 이거 사유지라서 우리 관할, 관리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계속 같은 의견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급경사지법에 따르면 제3조의 시설물안전법 제2조 1호에 시설물 1·2·3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거제 아파트에 붕괴된 옹벽은 시설물안전법상에 제2종시설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경사지법으로 저희 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물이 아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명옥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장관님께서도 또 그렇게 보신 시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2015년도에 행안부로 하여금 급경사지법 제6조의2에 따라 가지고 지자체가 놓치거나 이런 사각지대를 메꾸라고 해 가지고 행안부장관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근거권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도 국민의 안전, 그리고 법 개정 시에 산지를 깎아서 만든 아파트 많지 않습니까? 그 부근에 사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장관님께서 직접 직권으로 그것을 지정하셔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런 취지의 질문이신 거지요?

○**서명옥 위원**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알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렇지 않다면 급경사지를 가진 아파트 주민들은 사각지대 안전권은 누구한테서 보장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명옥 위원** 그래서 2015년에 그런 법을 만들어 뒀습니다, 장관님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요. 지정을 하셔서 가지고 지자체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사유지라서, 우리 관할이 아니라’,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장관님께서도 조금 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사유지라서가 아니라, 제가 아까 ‘사유지라서’라고 말씀드린 것보다는 ‘시설물안전법상의 2종시설물이라서 그렇다’라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요. 저는 장관님께서 국회의원까지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서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명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위원** 송두환 위원장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 송두환** 예, 여기 있습니다.

다.

○강명구 위원 업무보고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 송두환 예.

○강명구 위원 특별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사업의 경우 올해도 진척된 것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협조가 잘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느 부처의 협조가, 누가 잘 안 해 주는 겁니까?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 송두환 지금까지 진척이 좀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좀 혼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명구 위원 알겠습니다.

진상규명을 애타게 기다리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특조위로는 안 되겠다, 특검을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면 국민도 납득이 안 되고 유가족도 납득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님께서 향후 계획에 구체적으로 성과를 낼 만한 계획이 있다, 말씀 주시고요. 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사업 성과는 뭐고 향후 계획은 뭐고 법안소위 심사 전까지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 송두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유재성 직무대행님,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보좌진 폭행 사건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영상은 따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패가망신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 우리 당 위원님들께서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생겼어요. 여기서 경비부장의 보좌진 촬영을 두고 불법증거 채집이다, 초상권 침해다 운운하면서 보좌진 휴대폰을 뺏고 팔을 강제로 비틀고 했어요.

대행님, 초상권 침해가 대체 얼마나 중요한 법이길래, 범죄길래 경찰이 현장에서 물리력까지 동원해서 일반 시민을 이렇게 제압하려고, 그 법적 근거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 사안은 동의 없는 휴대폰 촬영 과정에서……

○강명구 위원 그러면 지금도 여기 수십 대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 다 수많은 공무원들 촬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초상권 침해입니까? 불법 증거 채집인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이것은 국회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강명구 위원 대행님, 그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엄정하게……

○강명구 위원 직무대행님, 그러면요 또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사건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조사하시고 수사하시고요. 경찰이 내부통제를 강화하

겠다고 한 만큼 한 점 의혹이 없이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부에서 조치계획, 재발방지 대책 이런 것들을 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경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더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직무대행님, 이것 끝까지 제가 지켜볼 겁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법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진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위원회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을 공고히 해서 더 확장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데 중앙선관위, 경찰청, 소방청 등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엄청나게 큰 질타를 받고 있는 기관이 다 모여 있습니다.

경찰청장님,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행안위의 모든 위원들이나 국민들이 그런 사건에 대해서 내부자의 문제, 내부 정보의 유출 또 여러 수사 관련 내용에 대한 유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조치하고 내부 기강을 분명히 잡아서 다시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범죄나 행위가 경찰청 내에서 발생하지 않게끔 한다고 대국민 사과도 하고 여기 행안위 위원들한테도 사과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주 사건도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게 개인의 일탈과 조직 시스템의 붕괴로부터 온 치명적인 사고였습니다.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무거운 책임감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저는 아까 임호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단으로 보여 주고 그래서 그 조직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탄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고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통감하시고 일탈은 일탈대로, 시스템의 개혁은 개혁으로 쇄신의 계획을 가지고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 사건 전체적으로 해서 아직 제주 사건은 진상이 전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장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선관위는 국조특위를 통해서도 확인했고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선관위 관련한 조직의 개편 그리고 선관위 실무조직을 현실화하고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끔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10월 국정감사 시기에 구체적인 계획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되고 또 그것이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의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

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대행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다시 한번 지난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자수 오입력 등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우리 선거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말씀 전합니다.

이번 일을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 왔던 투표 관리와 개표 관리 절차 부분의 문제점으로 제시된 국회와 언론 등 외부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선관위 조직 운영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부족한 점을 개혁할 수 있도록 자체 운영 중인 연구반을 가동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입법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마지막으로 소방청장님, 2년 6개월간 소방청장이 4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에서 발생했던 사건·사고는 사실 구시대적인 유물입니다. 그런 사건과 사고, 내부자의 그런 비리 그런 것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대단히 뛰어넘은 상당히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청장으로 임명되신 지 엇그제였지만 청장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직 점검을 다시 한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시스템의 정비를 1년 동안 했는데 그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서 저는 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소방청장으로서 관련한 모든 직원들과 각 조직들에 대한 점검들 다시 한번 하고 소방청장의 눈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감찰하고 컨설팅도 좀 받고 대안을 한번 마련해서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그 대안을 가지고 감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해 주세요.

○소방청장 최용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무겁고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직문화 전반적인 쇄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국정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것으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박정현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권영진 위원님, 용혜인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 서명옥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박상웅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강명구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직무대리,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이태원특조위 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직무대행, 소방청장을 비롯한 정부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질의서를 준비해 주신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5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법안심사제1(9인)	◎이해식 임호선 양부남 이광희 채현일	더불어민주당(5)
	권영진 박상웅 서명옥	국민의힘(3)
	정춘생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법안심사제2(9인)	박주민 김영배 박정현 윤건영 이상식	더불어민주당(5)
	◎강명구 주호영 김예지	국민의힘(3)
	용혜인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예산·결산기금심사(7인)	◎박주민 이광희 이상식 채현일	더불어민주당(4)
	박상웅 서명옥 진종오	국민의힘(3)
청원심사(3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1)
	◎박덕흠	국민의힘(1)
	정춘생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9인)

강명구 권영진 김영배 김영진 김예지 박상웅 박정현 박주민 서명옥 용혜인

윤건영 이광희 이상식 이해식 임호선 정춘생 주호영 진종오 채현일

○출장 위원(1인)

박덕흠

○청가 위원(1인)

박홍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인공지능정부실장 황규철

참여혁신조직실장 노홍석

자치혁신실장 진명기

지방재정경제실장 송경주

안전예방정책실장 박형배

자연재난실장 김용균

사회재난실장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 김중열

민방위심의관 장한

기획재정담당관 김동현

법무담당관 이명구

경북·경남·울산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재건지원단장직무대리 박정호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기획조정관 유승조

인재채용국장 손무조

인사관리국장 오영렬

윤리복무국장 천지윤

인재정보기획관 이은영

재해보상정책관 김정연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범죄예방대응국장 이승협

경비국장 김병기

기획조정관직무대리 이영철

수사국장직무대리 박우현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최인규
재정담당관 이광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백민욱

소방청

소방청장 최용철
기획조정관 김재홍
장비기술국장 김상현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인중
구급의료팀장 박용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
상임위원 김귀옥
기획운영관 김준희
조사1국장 박은성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사무처장 박진
안전사회국장 우필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직무대리 강동완
감사관 임정수
대변인 최관용
미래조직기획단장 유혜원
기획국장 김인수
정보관리국장 유훈욱
법제국장 박세진
조사국장 조봉기